

2018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2018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성과관리 시행계획, 2018. 5.

방송통신위원회 의안 · 정책관리팀 (02-2110-1457)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511호

## 목 차

<b>I .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18년도 정책 추진방향</b>	<b>1</b>
1. 그간의 정책성과	3
2. 2018년도 정책 추진방향	10
<b>II .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b>	<b>17</b>
1. 방송통신위원회 일반현황	19
2.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개요	21
<b>III . 세부 추진계획</b>	<b>25</b>
전략목표 I	27
전략목표 II	60
전략목표 III	95
전략목표 IV	130
<b>IV . 기관대표 성과지표</b>	<b>155</b>
1.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률	157
2. 통신·인터넷 이용자보호 제고율	159
3. 미디어시장 상생발전율	161
<b>V . 환류 등 관련계획</b>	<b>163</b>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165
2. 평가결과 환류체계	167
3. 변화관리 계획	171
4. 현장의견의 정책반영 계획	176
<b>【붙임】</b>	
1. 성과지표 현황	181
2.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 현황	187



# I

##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18년도 정책 추진방향

1. 그간의 정책성과
2. 2018년도 정책 추진방향



## 1. 그간의 정책성과

### □ 방송의 독립성과 제작·편성 자율성 확보

-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방송미래발전위원회’ 운영과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제작·편성 자율성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방통위에 정책제안서 제출 예정(‘18년 중)

< 방송미래발전위원회 정책 과제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제작·편성 자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회 구성절차 개선</li> <li>▪ 사장 선임절차 개선</li> <li>▪ 공영방송 운영·평가체계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작·편성 법제도 개선</li> <li>▪ 편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li> <li>▪ 편성규약 개선 방향</li> </ul>

### □ 방송콘텐츠 경쟁력 기반 확충

- 방통위·문체부 등 관련부처 공동 ‘외주제작 제도개선 협의체’를 운영(‘17.9월~)하여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개선 종합 대책」을 발표(‘17.12월)하였습니다.
- 글로벌 콘텐츠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외 피칭포럼\* 개최, 제작 역량강화 워크숍, 완성형 콘텐츠의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였습니다.

\* 부산콘텐츠마켓(5월, 한국), 셰필드다큐영화제(6월, 영국), 암스테르담다큐영화제(11월, 네덜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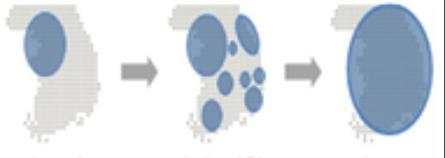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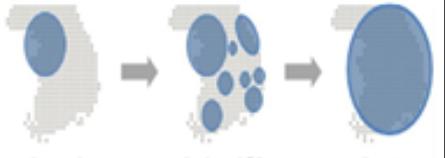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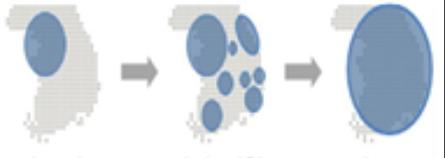


- 해외 방송영상 박람회에 국내 방송콘텐츠 홍보관 운영 및 중소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콘텐츠의 비즈매칭·판매를 지원하였습니다.

## □ 지상파 UHD방송 확산

- 무료·보편 서비스인 지상파에서 UHD방송을 조기에 도입하고, 광역시권 및 평창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산시킴으로써 고품질의 UHD 콘텐츠 제공을 통해 시청자의 볼거리와 보편적 접근권을 확대하였습니다.

< 지상파 UHD방송 도입 일정 >

1단계	'17.5.31. 수도권 본방송 개시(완료)	
2단계	'17.12월. 광역시 및 강원권으로 확대(완료)	
3단계	~'21년. 기타 시·군 지역, 전국망 구축	

## □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관리체계 강화

- 경주 지진('16.9.12.), 포항 지진('17.11.15.) 등에 대응하여 긴급 재난상황 발생시 방송사의 중간 확인과정 배제, 국민 인지를 제고를 위한 경보음 송출 등 관련 고시(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를 개정('17.12월)하였습니다.

- 긴급재난(민방위 경보, 지진규모 5.0이상) 발생시 ①중간 확인과정 배제, ②기존 자막과 다른 형식 활용, ③경보음 송출, ④외국인을 위한 영어자막 포함

- 도로, 철도, 도시철도의 재난방송 수신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국 터널 내 재난방송 음영지역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 전 국민 미디어교육을 통한 참여와 소통 확대

- 지역미디어센터를 통해 어린이·청소년·노인·주부·장애인 등 대상 미디어교육 및 방송제작 체험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수 : '16년 47.1만명 → '17년 52.9만명(12.3% 증가)



- 미디어교육을 통해 청소년, 노인, 주부, 장애인 등이 새로운 꿈과 희망을 찾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 관련 언론보도 : 아버지가 보낸 생애 첫 문자 '뭉클'(노컷뉴스, '17.6.27.), 주민끼리 방송 만드는 재미 쓸쓸해요(울산매일, '17.8.3), 백발에 든 카메라 앵글은 따뜻했다(연합뉴스, '17.9.3) 등

## □ 공익·장애인채널 제도개선 추진

- 공익채널을 추가 선정(심사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하여 신규 사업자를 확대하였습니다.

### < 최근 5년간 공익채널 선정현황 >

분야	2014	2015	2016	2017	2018
사회복지 분야	한국직업방송	한국직업방송	한국직업방송	한국직업방송	한국직업방송
	소상공인방송	소상공인방송	소상공인방송	소상공인방송	소상공인방송
	육아방송	육아방송	육아방송	육아방송	육아방송
					RTV

※ 기타 방송분야(과학·문화진흥, 교육지원)는 최근 5년간 선정된 공익채널 변동 없음

- 공익 방송분야 고시를 개정하여 새로운 분야(교육지원 분야 → 교육 및 지역 분야)의 채널 진입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익채널 선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 지역·중소방송 활성화를 지원하여 콘텐츠 경쟁력 강화

- 지역·중소방송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지역방송 내실화에 힘썼으며,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였습니다.

< 지역방송 지원사업 성과(2014~2017년) >

구 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시청자 만족도	평균 82.8점	평균 85점	평균 85.6점	평균 86.1점
프로그램 판매	4개 프로그램 4.46억원	9개 프로그램 2.18억원	14개 프로그램 4.63억원	37개 프로그램 7.07억원
제작 지원 프로그램 수상	9개 프로그램 (TV 7개, R 2개) 한국방송대상 등	10개 프로그램 (TV 6개, R 4개) 한국방송대상 등	11개 프로그램 (TV 7개, R 4개) 한국방송대상 등	13개 프로그램 (TV 8개, R 5개) 한국방송대상 등

-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실시간 재난방송으로 지역사업자로서의 신속한 지역정보 전달 등 공공성·지역성 구현에 앞장섰습니다.
  - 강릉 산불(5월), 포항 지진(11월) 등 재난발생시 SO 지역채널이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한 재난정보 전달·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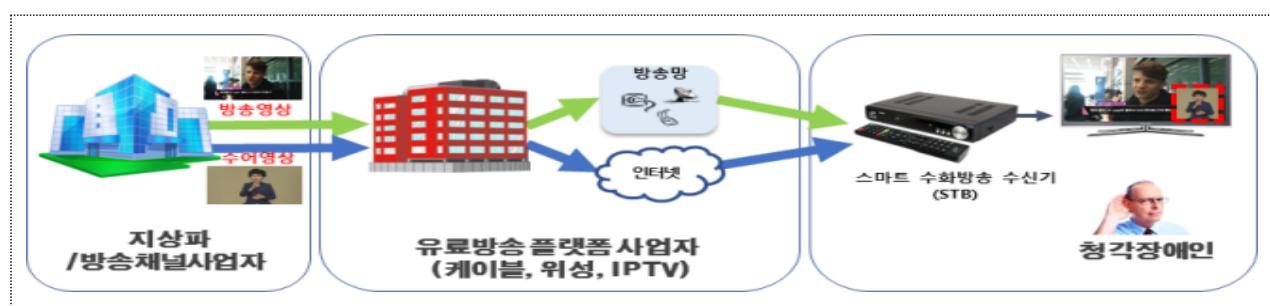
## □ 지상파 다채널방송(MMS) 도입기반 마련

- MMS 시범서비스(EBS 2TV) 실시로 시청자의 프로그램 및 채널 선택권을 넓히고 사교육비 경감 등 국민 교육복지 확대하였습니다.
  - ※ 초·중교 학습(약 450억원), 외국어 교육(약 1,300억원), 연간 1,750여억원 사교육비 절감효과 추정(미디어미래연구소, '15.8월)
- EBS 2TV의 신규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50억원)하여 융합형 과학프로그램 등 공익적 콘텐츠 편성비율을 확대('16년 4.8%→'17년 약 12%)하였습니다.
  - ※ EBS 2TV 프로그램 제작지원 규모 : '16년 20억원→ '17년 50억원(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 EBS 2TV 채널 인지도('16년 74%→ '17년 76.2%)와 시청자의 프로그램 만족도('16년 69%→'17년 76%) 동시 제고

## □ 소외계층 등 이용자의 방송접근 기회 확대

-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와 업무 협약을 확대('16년 12개→'17년 17개)하고 저소득층 대상 맞춤형 홍보와 장애인용 TV를 보급(12,014대)하였습니다.
  - 시청자 스스로 수어영상의 크기와 위치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스마트 수어방송 시범방송\* 실시
- \* KT스카이라이프, SK브로드밴드, CJ헬로비전, KBS, YTN, JTBC, TV조선 등 7개사 참여

<시범 방송 구성도>



## □ 안전하고 공정한 방송·통신시장 질서 확립

- 방송·통신시장 분야별 불공정행위 조사 및 엄정 제재를 통해 이용자 보호와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 홈쇼핑사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시정명령('17.9월), 외국인 영업 특혜제공 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17.3월, 과징금 총 21.24억) 및 통신서비스 해지 거부·제한 행위('17.12월, 과징금 총 9.4억) 등

## □ 개인·위치정보 안전한 활용 환경조성

- 개인·위치정보의 안전한 활용환경 조성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관련 국제기구 'APEC CBPR' 가입('17.6월), 위치정보 우수 모델 사업화 지원 확대 및 사업자허가 주기 단축(3개월→2개월),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확인 수단 확대('17.12월) 등

## □ 온라인상 안전한 개인(위치)정보 보호 및 활용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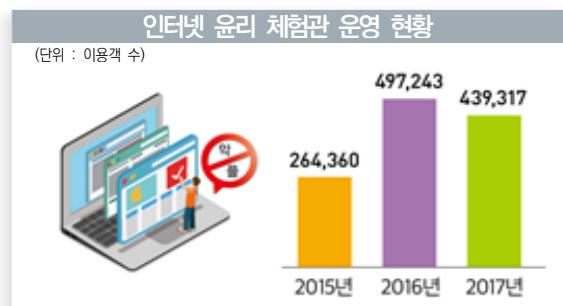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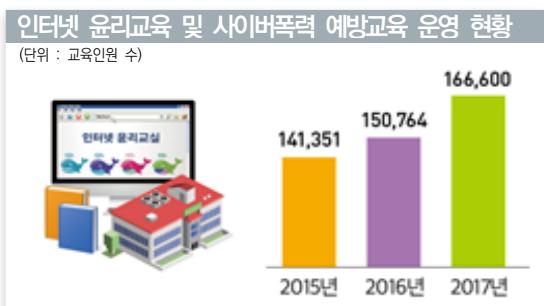
-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신용카드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업 증가('16년 46건→'17년 59건), 개인정보 보호 인식제고('16년 38.7%→'17년 47.4%) 및 위치정보 활용 긴급구조지원 증가('16년 259천건→'17년 1,499천건) 등 가시적인 성과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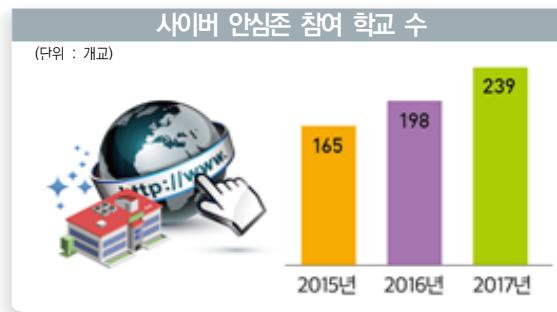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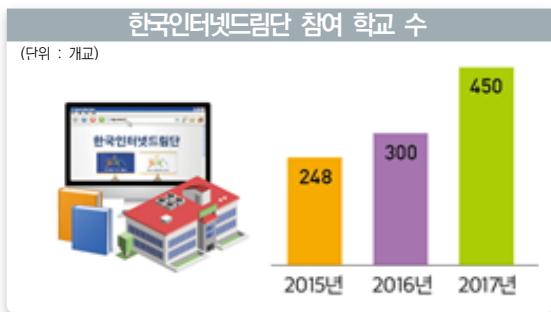
## □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환경조성

- 신속하고 효율적인 통신분쟁 조정제도와 통신단말장치 수거 관련근거 마련('17.9월) 등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피해구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 사업자와 이용자간 통신분쟁 해결을 위해 재정제도를 활성화('16년 20건 → '17년 62건, 210%증가)하여 이용자 피해 최소화

## □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환경조성

- 올바른 인터넷문화 조성을 위해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이버 안심존 참여 학교를 확대·운영하였습니다.
- 인터넷 윤리교육과 '한국인터넷드림단'을 운영하는 등 인터넷 윤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 □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 및 이용자 인격권 보호

- '임시조치 제도개선 연구반' 논의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10~11월)하여 의견수렴 및 토론회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자율규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12월) 하였습니다.

### < 2017 인터넷문화정책자문위원회 관련자료 >



#### 이효성 방통위원장 "인터넷 역기능 최소화, 표현의 자유 최대화 해법 찾자"

허준 기자 | 입력 : 2017.09.13 10:30 | 수정 : 2017.09.13 10:30

| 인터넷문화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확산 위해 머리 맞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물카와 같은 인권침해 영상물 등 인터넷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13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17 인터넷문화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건전한 인터넷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문화 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 2013년부터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확산과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해 학계·법조계·언론계·민간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해 운영 중인 자문위원회다.

2017 인터넷문화정책자문위원회  
(파이낸셜, 9.13.)

## 2. 2018년도 정책 추진방향

### □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제고

- 미래지향적 공영방송 구현을 위해 자문기구(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운영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지상파·종편·보도채널 등의 재허가·재승인 시 부여한 공적책무 조건 등에 대해 철저하게 이행 점검을 하겠습니다.
- 변화된 방송환경 속에서 방송평가 영역·항목·배점의 유의미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사업자간 변별력 제고와 방송의 공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재난예방 및 피해 최소화, 원활한 피해복구가 중요해 짐에 따라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오보·막말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과 법정제재를 강화하고, 종편PP 재승인 시 부가한 오보·막말·편파방송 심의제재 감소 조건의 이행 실적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 □ 미디어의 다양성 증진

- 고정형 TV와 스마트폰·PC를 모두 포괄하는 통합시청점유율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미디어다양성통계 및 연구결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 통계정보시스템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 AM 라디오방송 청취율 및 전시·재난매체 역할, 표준 FM 활성화 추세 및 해외 디지털 라디오방송 전환상황 등을 고려한 지상파 라디오 방송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 지역·중소방송 활성화

- SNS·포털 등 신규매체에 서비스 가능한 전용 콘텐츠 제작 지원 및 해외 판매용 프로그램 재제작 지원 등으로 해외 판매·유통을 촉진하겠습니다.
- 지상파 사업자 재허가를 통해 지역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화를 위한 지역방송사 지배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 대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아닌 독립적 사외이사 위촉, 감사제도 강화 등을 포함한 재허가 조건부가 및 이행실적 점검 실시
- 지역 민영방송사 경영악화 등 방송제작의 환경변화를 고려한 자체 편성 의무비율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신장 및 역기능 대응 강화

- 포털 등의 일방적인 '임시조치'에 대해 정보 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 등 반론기회를 제공하고,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장의 균형 유지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인터넷방송 사업자 등에 음란물 유통 사실 인지시, 삭제·접속차단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인터넷 개인방송의 선정·폭력성 등 폐해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를 통해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사이버 안심존', 청소년 스마트폰 상 사이버 폭력 의심문자를 부모에게 알려주는 '스마트안심 드림서비스'를 개선·확대하겠습니다.
-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2022' 종합계획에 따라 유아·청소년·성인 등 다양한 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맞춤형 인터넷 윤리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 □ 이용자의 미디어 역량 강화 및 참여 확대

- 시청자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작지원 예산을 늘리고 ('18년 약 12억원), 편성 사업자를 확대하겠습니다.
  - 시청자 밀착형 참여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지역지상파방송, 공동체 라디오방송에 대한 예산지원 비중 확대
- 시청각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방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를 개발·보급하겠습니다.
  - 스마트 수어방송서비스 상용화('19년 목표)시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성능개선 및 스마트 '수어방송 시범방송' 확대

#### □ 지능정보사회의 이용자 보호 강화

- 지능정보기술로 인한 이용자 불편·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능정보 기술 인식도, 이용행태 등을 조사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이용자보호업무 평가를 '기간통신사업자' 위주에서 '앱마켓사업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 통신서비스 이용관련 분쟁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알선·재정 제도 활성화, 「분쟁조정제도」 도입, 단말장치 리콜시 이용자 보호조치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 결합상품 해지 시 기존사업자의 과도한 해지방어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신규상품 가입 시 자동으로 기존 상품이 해지되는 원스톱 해지절차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프리미엄 단말기의 국·내외 출고가 비교를 통해 이용자의 합리적 소비와 사업자의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 □ 불공정한 갑을관계 청산 및 상생환경 조성

- '17.12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발표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 방송사-외주사간 제작비 산정·지급, 저작권과 수익배분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 방송사-외주사 간 저작권 양도 강요, 계약서 작성 거부 등 불공정 거래 제재를 위한 방송법 개정 지원
-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무,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해소 등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과 공정경쟁을 위한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체'를 구성·운영(2월~)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포털·SNS 등 플랫폼 시장 급성장으로 증대된 플랫폼사업자와 중소CP 간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겠습니다.
- 이동통신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 간 도매대가 산정 및 협정체결 등에서 특수관계인(자회사)에 비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실태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 □ 방송환경 확산을 위한 고품질 콘텐츠 제작기반 마련

- 매체균형발전 및 시청권 보호 등을 고려하여 방송광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방송광고·협찬고지 규제완화에 따른 시청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법규위반에 대한 엄격한 사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 한한령 등으로 중단되었던 중국과의 공동제작 협정 체결을 위한 고위급 협의를 재개하겠습니다.
- 베트남(MIC)·태국(NBTC) 등 동남아 주요국 및 캐나다(MCH)와 공동 제작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겠습니다.
-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 개최 및 국제 방송콘텐츠 마켓 참가·지원 등을 통해 한류 방송콘텐츠에 대한 국제적 관심제고 및 방송 교류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 매체간 규제 불균형 개선

- 해외기업의 개인정보 침해, 음란물 유통 등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경찰청과 협력하여 국제공조수사를 추진하고, 국제조약 가입 및 해외 정부와의 공동 대응체계 구축
  - 해외 사이트에 노출된 국민의 개인정보 삭제 및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중국, 미국 등 현지 인터넷 유관기관 협력 추진
- 해외 콘텐츠사업자(CP)의 불공정 거래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해 국내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조사·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제 집행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종합편성방송사가 매출, 시청률 등에서 안정적 성장세에 진입한 만큼 타 매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비대칭 규제를 재검토하겠습니다.

## □ 신규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제도 정비

- UHD방송 의무편성 비율('18년 10%)과 콘텐츠 투자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을 지속 점검하겠습니다.
- ATSC 3.0 표준으로 개발되는 IP기반 양방향 서비스 등 UHD 부가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 지상파 다채널방송의 도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MMS 본방송 관련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이동형 방송 도입 등 지상파 UHD 방송정책과의 연계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MMS 시범서비스를 실시하는 EBS 2TV가 혁신적 콘텐츠로 시청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다채널방송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신규 프로그램 제작재원을 지원('18년 50억원)하겠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정책의 조화

- 계약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사전동의 예외로 하고, 동의 획득 방법으로 모바일 앱·SNS 등을 추가하여 이용자와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 이용자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정보열람·제공 요구, 이용내역 통지, 동의철회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비식별 조치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비식별 조치의 명시적인 근거 마련을 위한 법제화를 지원하겠습니다.

-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하여 사생활 침해우려가 적은 '사물위치정보 사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 사업진입 규제완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 정부규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사업자의 자율점검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등 법·제도를 개선(6월)하고, 자율규제 시행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운영(2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Ⅱ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1. 방송통신위원회 일반현황
2.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개요



## 1. 방송통신위원회 일반현황

(1) 조직 : 1처 3국 1관 19과



(2) 인원 ('18. 5. 현재)

총 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228명	5명	222명	1명

(3) 소관 법률

분야	법률명
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li> <li>○ 방송통신 발전 기본법 (일부)</li> <li>○ 방송법 (일부)</li> <li>○ 한국교육방송공사법</li> <li>○ 방송문화진흥회법</li> <li>○ 지역방송 발전 지원 특별법</li> <li>○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li> <li>○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li> </ul>
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통신사업법 (일부)</li> <li>○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li> <li>○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li> <li>○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li> <li>○ 전파법 (일부)</li> </ul>

#### (4) 재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8	'19	'20	'21	'22
□ 재정사업 합계					
○ 총지출	2,377	2,312	2,317	2,327	2,342
(전년대비증가율, %)		(△2.7)	(0.2)	(0.4)	(0.6)
□ 총지출 구분					
○ 인건비	185	198	212	226	242
(전년대비증가율, %)		(7.0)	(7.1)	(6.6)	(7.1)
○ 기본경비	39	40	41	43	44
(전년대비증가율, %)		(2.6)	(2.5)	(4.9)	(2.3)
○ 주요사업비	2,153	2,074	2,064	2,058	2,056
(전년대비증가율, %)		(△3.7)	(△0.5)	(△0.3)	(△0.1)
□ 예산					
○ (총)지출	554	566	582	601	620
(전년대비증가율, %)		(2.2)	(2.8)	(3.3)	(3.2)
【일반회계】					
○ (총)지출	554	566	582	601	620
(전년대비증가율, %)		(2.2)	(2.8)	(3.3)	(3.2)
□ 기금					
○ 총지출	1,823	1,746	1,735	1,726	1,722
(전년대비증가율, %)		(△4.2)	(△0.6)	(△0.5)	(△0.2)
【방송통신 발전기금】					
○ (총)지출	1,823	1,746	1,735	1,726	1,722
(전년대비증가율, %)		(△4.2)	(△0.6)	(△0.5)	(△0.2)

※ '18년은 예산 기준, '19년부터는 중기사업계획('18~'22년) 검토 기준

## 2.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개요

### (1) 시행계획의 주요특성

-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공적 책임을 강화하여 공정하고 자유롭고 신뢰받는 방송통신 환경 조성
- 인터넷·모바일 중심의 미디어 이용행태 및 인구학적 특성 등 다양한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미디어 다양성을 증진하고, 매체 간 경쟁심화로 위상이 하락된 지역방송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미디어의 지역성을 증진
- 모든 국민이 소외되지 않고 미디어를 향유할 수 있도록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미디어의 비판적 이해와 활용이 가능하도록 이용자의 미디어 역량을 강화
- 사업자 간 불공정 거래, 약탈적 경쟁행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甲乙 관계의 엄격한 사후규제 및 제도개선을 통해 지속 성장이 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를 구축
- 불합리한 방송광고 규제정비, 광고판매 및 협찬제도 합리화 등 제도 전반을 개선하여 고품질 방송콘텐츠의 제작 기반을 마련하고, 특정국가에 집중된 방송한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류의 패러다임을 전환
- UHD, MMS(다채널방송) 등 신규 방송서비스 제도개선을 통해 채널 선택권 확대와 선명한 화질 제공 등 시청자의 편의 증진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방송통신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대국민·대언론 정책소통을 강화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상 제고

## (2) 2018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목표체계

임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한다.

비전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

전략 목표 및 성과 목표

I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신장하고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한다.

①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 한다.

- 방송의 독립성과 제작·편성 자율성 확보
- 전 국민 대상 미디어교육 강화
- 지역방송 및 중소방송 활성화
-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관리체계 강화
-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

② 신규 방송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한다.

- 지상파 UHD방송 확산
- 지상파 다채널방송 기반 마련

II 방송통신 이용자의 주권을  
강화한다.

①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한다.

-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환경조성
- 통신시장의 공정경쟁환경 조성
- 이동통신 유통질서 확립
- 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②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조성한다.

- 온라인상 안전한 개인(위치)정보 보호 및 활용지원
- 온라인상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강화
- 자유롭고 깨끗한 인터넷 이용환경 구축

III 방송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  
하고 미디어복지를 제고한다.

① 방송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시청자  
복지를 제고한다.

-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향상
-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확대
- 방송시장 공정경쟁환경 조성

②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 방송콘텐츠 경쟁력 기반 확충
-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 통합 시청점유율 조사 기반구축

IV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정책성과를 극대화한다.

① 신뢰받는 방송통신 행정을 구현한다.

- 원활한 정책수행을 위한 행정효율성 증대
- 사이버안전 및 비상대비 관리체계 강화
- 규제개혁 적극 추진
- 일 잘하는 공직환경 조성

②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기관 신뢰도를  
제고한다.

- 대국민·대언론 정책소통 강화
-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 (3)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단위 : 개)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4	8	8	26	36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I.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신장하고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한다.		
1.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한다.		
① 방송의 독립성과 제작·편성 자율성 확보	국정 4-1, 4-2 업무 1-1	
② 전 국민 대상 미디어교육 강화	국정 70-1 업무 2-4	
③ 지역방송 및 중소방송 활성화	국정 70-2 업무 1-2	
④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관리체계 강화	국정 70-1 업무 1-1	
⑤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	국정 4-2 업무 1-1	
2. 신규 방송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한다.		
① 지상파 UHD 방송 확산	국정 70-1 업무 4-9	
② 지상파 다채널방송 기반 마련	업무 4-9	
II. 방송통신 이용자의 주권을 강화한다		
1.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권익증진에 기여한다.		
①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환경조성	국정 33-9 업무 2-5	
②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국정 31-6 업무 3-6	
③ 이동통신 유통질서 확립	국정 31-6 업무 2-5	
④ 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국정 33-9 업무 2-5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2.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조성한다.		
① 온라인상 안전한 개인(위치)정보 보호 및 활용지원	국정 33-9 업무 4-10	
② 온라인상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강화	국정 33-9 업무 4-10	
③ 자유롭고 깨끗한 인터넷 이용환경 구축	국정 4-3 국정 70-5 업무 1-3	
<b>III. 방송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 복지를 제고한다</b>		
1. 방송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시청자 복지를 제고한다.		
①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향상	업무 1-1	
②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확대	국정 70-1 업무 2-4	
③ 방송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업무 3-6	
2.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① 방송콘텐츠 경쟁력 기반 확충	국정 70-4 업무 3-7	
②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③ 통합시청점유율 조사기반 구축	업무 1-2	
<b>IV.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정책성과를 극대화한다</b>		
1. 신뢰받는 방송통신 행정을 구현한다.		
① 원활한 정책 수행을 위한 행정효율성 증대		
② 사이버 안전 및 비상대비 관리체계 강화		
③ 규제개혁 적극 추진		
④ 일 잘하는 공직환경 조성		
2.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기관 신뢰도를 제고한다.		
① 대국민·대언론 정책소통 강화		
②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 III 세부 추진계획

- 전략목표 I.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신장하고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한다.
- 전략목표 II. 방송통신 이용자의 주권을 강화한다.
- 전략목표 III. 방송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 복지를 제고한다.
- 전략목표 IV.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정책성과를 극대화 한다.



## 전략목표 I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신장하고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한다

## 기 본 방 향

##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방송 독립성)**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보장이 미흡하다는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제작·편성의 자유와 독립 및 제작자의 자율성 보장 요구 증대
- **(미디어교육)** 지능정보사회에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미디어 역량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반면, 세대간, 계층간 미디어 격차는 심화되고 있어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 필요
- **(지역방송)** 신규 미디어의 등장으로 방송 매체 간 경쟁 심화, 광고 매출 하락 등 재정 악화로 존립 기반이 약화됨에 따라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기반 마련 필요
- **(재난방송)** 지진 등 긴급 재난발생시 일반 국민에게 재난상황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자막과 경보음을 동시에 방송하도록 재난방송 관련 고시 및 종합매뉴얼 표준안 개정 필요
- **(재허가·재승인 제도)**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의 실효성 제고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체계 마련 필요
- **(UHD)** 방송기술의 진화로 UHD 방송환경이 도래하여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700MHz 주파수 일부가 방송용으로 배정됨에 따라 세계 최초 지상파 UHD방송이 도입되어 조기 활성화 필요
- **(MMS)** 디지털 영상 압축기술의 발달에 따라 1개 텔레비전 주파수 대역 내에서 2개 이상의 HD, SD 채널을 송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지상파 다채널방송 활성화 필요

## ◇ 그 간의 성과

- **(방송 독립성)** 다양한 사회적 의견수렴을 통해 방송 공공성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기반 마련
- **(미디어교육)** 시청자의 미디어 접근 및 참여능력 향상을 위한 미디어 교육, 미디어 체험·제작활동 및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 지원
- **(지역방송)** 프로그램 제작·유통 지원, 교육 및 인력 양성 지원을 통해 각종 대외 시장에서 수상('16년→11개 '17년 13개), 시청자 만족도 향상('16년 85.6점 →'17년 86.1점) 및 국내외에서 판매 수익 증가('16년 4.63억→'17년 7.07억) 창출
- **(재난방송)** 중요방송시설 안전점검 실시, 정책연구를 통한 재난방송 경보음 개발, 터널·지하공간의 재난방송 수신환경 실태조사 등을 완료하여 방송재난 및 재난방송 강화 방안 마련
- **(재허가·재승인 제도)** 주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시 제작·편성의 자율성과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를 위한 조건 부과
- **(UHD)** '17.5월 수도권에서 지상파 UHD 본방송이 개시된 후 '17.12월 광역시권 및 평창·강릉지역까지 확대되었으며, 지상파방송 3사는 OBS와 평창동계올림픽 주요 종목을 UHD방송으로 제작·중계
- **(MMS)** '15.2월 EBS MMS 시범서비스(2TV) 개시 이후, EBS 2TV 프로그램 제작 재원 지원('17년 50억원)을 통해 채널 만족도 76% 달성

## ◇ 중점 추진내용

- **(방송 독립성)**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시 부가한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조건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사회적 의견수렴을 통해 방송 독립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
- **(미디어교육)** 노인·장애인·소외계층 주민 등 전 국민이 미디어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 운영 및 지역주민 간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마을미디어교육 추진
- **(지역방송)** 유통 가능성이 높은 우수 프로그램을 집중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성과 제고, 국내·외에서 활발히 유통되도록 유통 인프라 조성 적극 추진, 전문교육 확대를 통한 인적 자원의 전문화 추진

- **(재난방송)** 재난방송 관련 고시 및 종합매뉴얼 표준안을 개정하여 방송사 자체 매뉴얼에 반영되도록 점검하고, 터널·지하공간의 재난방송 음영지역 해소 추진 및 중요방송시설 안전점검 확대 등 중단 없는 재난방송 체계 확립
- **(재허가·재승인 제도)** 재허가·재승인 심사의 실효성 확보, 매체별·소유구조별 심사기준 마련 등을 통해 심사의 효율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 추진
- **(UHD)** 지상파 이동형 방송의 정책방향을 연구하고, 방송사별 UHD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준수 여부 및 UHD 수신환경 개선실적을 철저히 점검하여 지상파 UHD방송의 본격적 확산 견인
- **(MMS)** 지상파 다채널방송 본방송 실시를 위한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시범서비스중인 EBS 2TV 채널의 질적 향상 지원

#### ◇ 전략목표와 임무 간의 상관성

- **(방송 독립성)** 방송의 독립성 및 편성·제작의 자율성 회복을 통해 민주적 여론 수렴과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 신뢰 증진
- **(미디어교육)** 보편적 미디어교육을 통하여 전 국민의 미디어 역량을 강화하고 미디어 접근권을 제고함으로써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도모
- **(지역방송)** 지역방송의 프로그램 제작역량 강화 및 자립기반 조성을 통해 방송의 공공성·다양성 구현, 지역 시청자 권익보호 등에 기여
- **(재난방송)** 재난방송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
- **(재허가·재승인 제도)** 방송사업자에 대한 합리적인 재허가·재승인 심사체계를 마련하여 방송의 공익성·공공성 강화 및 시청자 복지 증진
- **(UHD)** 양질의 시청자 불거리를 확대함으로써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 및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
- **(MMS)** 다채널방송의 성공적인 안착으로 시청자의 프로그램 및 채널 선택권을 강화하고 지상파 방송을 통한 무료 보편적 서비스 확대

##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성과지표체계 >

(단위 : 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2	2	7	10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I -1.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한다		① 방송의 공공성 제고율
	① 방송의 독립성과 제작·편성 자율성 확보	①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률
	② 전 국민 대상 미디어교육 강화	①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수 ②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만족도
	③ 지역방송 및 중소방송 활성화	① 지역·중소방송 제작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② 지역방송 교육 이수율 ③ 지역방송 교육과정 만족도
	④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관리체계 강화	① 방송재난 대비 중요 방송 시설 안전 점검율
	⑤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	①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 추진율
I -2. 신규 방송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한다		① 신규 방송서비스 활성화율
	① 지상파 UHD 방송 확산	① 지상파 UHD 방송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 이행도
	② 지상파 다채널방송 기반 마련	① EBS 2TV 프로그램 만족도 및 채널 인지도

## (1) 주요 내용

 방송의 독립성과 제작·편성 자율성 확보

-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시 부가한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조건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방송의 독립성과 제작·편성의 자율성 제고

 전 국민 대상 미디어교육 강화

- 시청자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지역·세대·계층별 미디어 교육 및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 운영, 마을미디어교육 등 추진

 지역방송 및 중소방송 활성화

- 지역·중소방송이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통해 지역민에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발전기반 조성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관리체계 강화

- 신속·정확한 재난방송을 위해 재난방송 등 종합매뉴얼 표준안을 개정하는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

-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의 실효성 제고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체계 정립을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

##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16 '17 '18	'18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5	'16				
방송의 공공성 제고율(%)	-	-	-	100	방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주요 과제의 목표 달성을 결과 측정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률 목표 달성도) × 0.2] +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만족도 목표달성도) × 0.2] + [(지역·중소방송 제작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목표달성도) × 0.2] + [(방송재난 대비 중요 방송시설 안전 점검율 목표달성도) × 0.2] +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 추진율) × 0.2]	실적자료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방송 독립성)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보장이 미흡하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비판 제기
  - KBS·EBS·방문진 이사회 구성방식 및 사장 선임절차 등의 합리성, 투명성, 민주성 제고를 위한 개선 요구
- (미디어교육) 지능정보사회에서 소통·지식습득 등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미디어 역량의 중요성이 높아졌으며,
  - 스마트미디어의 확산 등으로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필요 하나 지역·계층·세대 간 미디어 격차는 더욱 심화
- (지역방송) 유료방송 및 모바일 등 콘텐츠 소비행태의 변화에 따라 방송권역의 제한을 받는 지역 지상파방송의 위상과 기능 약화
  -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지역방송이 존폐위기에 놓이게 되어 지역방송의 핵심가치인 공공성·다양성 훼손 우려
- (재난방송)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이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재난 유형에 효율적 대응을 위한 재난방송 관리체계가 미흡

- (재허가·재승인 제도)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엄격하게 실시하여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공익성을 강화하라는 여론 증가

## □ 갈등요인

- (방송 독립성) 공영방송 지배구조 및 방송제작 환경 개선 관련 방송관계법 개정은 여·야 정당 간, 공영방송의 사측·종사자측 간 입장차이가 큰 사안임
- (미디어교육) 지역·계층·세대 간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균형 있는 미디어교육이 필요하나,
  - 노인, 장애인, 농·산·어촌 학생 등 미디어 소외지역 주민들은 시청자미디어센터 방문이 어려워 교육의 수혜를 받기 어려움
- (지역방송) 지역방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제작 투자 확대 등이 필요하나 사업자는 경영여건 악화로 인해 투자에 소극적
  - 지역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존립 기반 구축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기대하나 정부의 예산상 지원에는 한계가 있어 대규모 지원은 곤란
- (재난방송) 재난방송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시설관리자가 터널·지하공간에 재난방송 수신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규정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14.6월에 개정되었으나 투자에 소극적
  - 시설 관리 주체의 관심부족으로 자체적 예산확보가 미흡하고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나, 정부의 예산상 지원에는 한계가 있어 터널이나 지하공간에 재난방송 수신 불량률이 높음
- (재허가·재승인 제도) 심사항목·배점, 심사위원회 구성 등 재허가·재승인 제도는 향후 방송사업 구도를 좌우하는 방송 사업자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사안

## □ 갈등관리계획

- (방송 독립성) 국회 내 방송 개혁입법 논의 시 적극 지원하고, 방통위에서도 ‘방송미래발전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사회적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 방안 모색
- (미디어교육) 방송제작·상영 시설을 탑재한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를 활용하여 소외계층 대상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의 관심사를 함께 나누며 소통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마을미디어교육 지원
- (지역방송) 지역방송에 대해 예산 및 정책 지원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중소방송사의 경쟁력 제고 및 자립기반 조성
  - 해외유통 및 뉴미디어 교육지원 등을 통해 지역방송사의 광고 외 수익창출 등 수입 다각화를 도모하여 발전기반 조성
- (재난방송)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정보 전달과 안정적인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부처와 방송사업자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재난상황에 대한 신속한 정보전달 및 중단 없는 방송서비스 제공
- (재허가·재승인 제도) 제도개선안 마련 과정에서 방송사업자와 시청자단체에 대한 충실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이해관계자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모두 제도에 반영할 예정임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① 방송의 독립성과 제작·편성 자율성 확보( I -1-①)

#### □ 추진배경

- KBS·EBS·방문진 이사회 구성방식 및 사장 선임절차 등의 합리성, 투명성, 민주성 제고를 위한 개선 요구
- 또한, 방송법 개정을 통한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를 중심으로 지속적 제기
- '17년 주요 지상파방송사의 재허가와 종편PP 재승인시 심사 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 관련 조건\*\*을 부가함으로써 이에 대한 철저한 이행점검 필요

#### \* 주요 지적사항

- 지상파방송 : 방송의 공정성 논란이 지속되고, 제작·편성 자율성 침해, 부당 노동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제작·편성의 자율성 확보 방안 마련, 지역민방 및 MBC 계열사의 경영의 독립성 보장 필요
- 종편PP : 공적책임 및 공정성 · 공익성 확보가 미비하여 출연자의 정치적 편향성, 막말 방송이 계속되고 있어 방송의 품격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 \*\* 주요 조건

- 지상파방송 : 경영의 독립성, 편성위원회 운영 활성화, 직원 징계제도 개선 등
- 종편PP : 방송의 품격제고 계획 준수, 오보·막말·편파 사유 방송심의위 법정 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 심의제재 방지를 위한 검증기구 운영, 법정제재시 출연정지 조치 등

○ 추진근거

- 방송법 제4조, 제9조, 제10조, 제17조, 제18조, 제46조 내지 제48조, 제50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9조 내지 제11조, 제13조,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제9조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법령 개정 지원) 공영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 내 방송 개혁입법 추진 시 방통위도 적극 지원
- (사회적 의견수렴) 다양한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방통위 산하 자문기구 ‘방송미래발전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사회적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 방안 모색
- (조건 이행점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시 부가된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조건에 대한 철저한 이행실적 점검을 통해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 추진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연중	국회 발의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의 여야 논의 지원	1~12월	
1/4분기	종편PP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	1~6월	
	방송미래발전위원회 워크숍 개최	2월	
	전문가, 방송사업자, 시민단체 등 대상 방송미래발전위원회 토론회 개최	3월	
	지상파 재허가 조건 이행실적 점검(1차)	3월	
2/4분기	종편PP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 관련 외부자문반 회의	4월	
	종편PP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 관련 외부자문반 회의	5월	
	종편PP 방송사 현장실사	5월	
	지상파 재허가 조건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1차)	6월	
	종편PP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6월	
	지상파 재허가 조건 이행실적 점검(2차)	6월	
	방송미래발전위원회 정책제안서 방통위 제출 및 방통위 논의	6월	
4/4분기	지상파 재허가 조건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2차)	12월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자

### ○ 수혜자

- (전국민) 방송의 독립성 및 편성·제작의 자율성 제고를 통해 방송에 대한 국민신뢰 증진과 민주적 여론수렴 환경조성

### ○ 이해관계집단

- (공영방송사) 공영방송 지배구조 및 방송제작 환경 관련 제도개선은 방송사 사측·종사자측 간 입장차이가 큰 사안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필요
- (종합편성방송사) 방송사에 부가된 조건에 대해 단순한 실적 확인 차원의 점검이 아니라 사업자가 주요정책을 이행토록 적극 유도할 필요

## □ 기대효과

- 공영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확보하고 지역방송사의 경영상 독립성 보장
- 사회적 의견수렴을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 지역민방·MBC 계열사에 부가된 재허가 조건 이행 점검을 통해 전문 경영인의 독립적 경영 보장
- 방송보도·제작·편성종사자가 자유롭고 민주적인 방송 제작 환경 조성
- 지상파에 부가된 재허가 조건 이행점검을 통해 편성위원회 구성·운영 강화 및 직원 징계제도 개선 기대

○ 방송의 공공성·공정성·공적 책임을 제고

- 종편PP에 부가된 재승인 조건 이행점검을 통해 오보·막말·편파 심의제재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법정제재를 받은 출연자의 출연정지 등 방송의 품격향상 기대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16 '17 '18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5	'16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률(%)	-	-	신규 75	<p>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엄격한 재허가·재승인 조건을 부가한 점 고려</p> <p>* '17년에는 관련 조건 부가 여부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실적 측정</p>	<p>[(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지상파 재허가 조건 이행 건수 /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지상파 재허가 조건* 수) × 0.5] +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종편PP 재승인 조건 이행 건수 /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종편PP 재승인 조건** 수) × 0.5]</p> <p>* 경영의 독립성, 편성위원회 운영 활성화, 직원 정계제도 개선 등</p> <p>** 방송의 품격제고 계획 준수, 오보·막말·편파 사유 방송심의위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 심의제재 방지를 위한 검증기구 운영, 법정제재 시 출연정지 조치 등</p>	실적 점검 결과

## ② 전 국민 미디어교육 강화(I-1-②)

### □ 추진배경

- 지능정보사회에서 소통·지식습득 등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미디어 역량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지역·계층·세대 간 미디어격차 해소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미디어 교육 추진 필요
- 추진근거
  - 방송법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및 방송법 시행령 제65조의2(시청자미디어센터)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청소년·노인·주부·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미디어의 이해·활용 및 제작 등을 위한 미디어교육 실시
- 방송제작·상영 시설을 탑재한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를 운영하여 미디어 소외계층 대상 체험교육 실시
-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의 관심사를 함께 나누는 생활미디어를 직접 제작·운영할 수 있도록 마을미디어교육 추진
-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 동아리미디어교육, 대학 연계교육 등 학교미디어교육 실시

##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학교미디어교육 사업설명회 개최	3월	
	자유학기제 등 학교미디어교육 지원	3~12월	
2/4분기	미디어교육 단체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4~12월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 운영 및 교육 실시	4~12월	
	마을미디어교육 컨설팅 및 교육 실시	5~12월	
3/4분기	센터별 스마트미디어 교육 실시	9~12월	
	미디어윤리교육 실시(학부모·교사 대상)	9월	
	지역 센터별 시청자 참여행사 개최	9~12월	
4/4분기	미디어교육 컨퍼런스 개최	12월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	12월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자

#### ○ 수혜자

- (전 국민) 다양한 미디어 이해·활용 교육을 통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능동적·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 제고

#### ○ 이해관계자

- (지역자치단체) 시청자미디어센터는 각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어 시청자 행사 등 추진 시 지자체의 원활한 협조 필요
- (타 기관 미디어센터) 타 기관 소규모미디어센터를 대상으로 시설·장비 등 인프라 및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교육 시너지 효과를 기대

## □ 기대효과

- 시청자미디어재단 및 각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미디어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체계적인 교육 인프라 구축
- 전국적인 미디어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다양한 미디어교육·체험활동을 추진하고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여 전 국민의 균형 있는 미디어 역량제고 및 미디어격차 해소에 기여
- 마을미디어교육 등 추진으로 주민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와 자신의 이야기를 미디어를 통해 표현하게 함으로써 주민 간 소통문화 확대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7	'18
시청자 권리보호 및 참여 활성화(Ⅱ-2-일반재정③)		
① 시청자 권리보호 및 참여 활성화(3133)		
■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303)	방송통신 발전기금	141 (163) 141 26
- 시청자권익증진 사업		171 (179) 171 27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5	'16	'17	'18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수(만명)	43.8	47.1	52.9	54	전년도 실적 대비 2%P 상승한 54만명을 목표치로 설정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만족도(점)	-	-	91.3	91.8	전년도 실적 대비 0.5점 상승한 91.8점을 목표치로 설정

### ③ 지역방송 및 중소방송 활성화( I -1-③)

#### □ 추진배경

- 급변하는 방송환경 속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지상파 방송의 공적기능 제고 및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 필요 증대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의거하여 '제2차 지역방송발전 지원계획'이 수립('17.12월)됨에 따라 지역방송의 건전한 지역 문화 창달 실현을 위한 지원 강화 필요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및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에 의거하여 지역방송의 공적책임 제고를 위한 '기금지원심사' 실시
- 지역 · 중소방송의 프로그램 제작역량 강화 및 고품질 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지역 · 중소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추진
- 지역방송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내 · 외 콘텐츠 마켓 참가 지원 및 지역방송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제작지원 프로그램 공모 · 심사(기금지원심사 포함) 및 지원작 선정	3월	
	해외 피칭포럼 참가 대상 모집 및 교육	3~12월	
	지역방송사 부산콘텐츠마켓(BCM) 참가 콘텐츠 선정 및 재제작	4~5월	
2/4분기	지역방송사 부산콘텐츠마켓(BCM) 참가 지원	5월	
	지역방송 맞춤형 교육 및 멘토링 운영	4~12월	
3/4분기	프로그램 제작지원 방송사 현장점검	8~9월	
	지역방송사 아시아텔레비전 포럼(ATF) 참가 콘텐츠 선정 및 재제작	9~11월	
4/4분기	지역방송사 해외 피칭포럼 참가	12월	
	지역방송사 아시아텔레비전 포럼(ATF) 참가 지원	12월	
	제작지원 프로그램 시청자만족도 조사 실시	12~'19.1월	
연중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연6회 개최	격월 1회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자

### ○ 수혜자

- (지역 · 중소방송 시청자) 우수한 지역 · 중소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함으로써 시청자에게 다양한 고품질 방송서비스 제공
- (지역 · 중소방송사) 프로그램 제작 · 유통 및 제작인력 교육을 통해 지역 · 중소방송사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수익기반 창출

### ○ 이해관계자

- (중앙지상파방송사) 지역 · 중소방송 지원 정책이 중앙지상파 방송사와 이해관계 상충 시 양측의 의견조정 및 협조 필요

## □ 기대효과

- 지역·중소방송의 우수 프로그램 제작, 콘텐츠 유통 및 종사자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방송 인적자원의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건전한 자립기반 조성
- 지역성을 반영한 고품격 프로그램의 제작·방영을 통해 지역 시청자의 프로그램 만족도 향상 및 지역 문화창달 등에 기여

##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7	'18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 조성(Ⅱ-2-일반재정①)			
① 방송인프라 지원(3131)	방송통신 발전기금	44.6 (829)	41 (812)
■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308)		44.6	41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5	'16					
지역·중소방송 제작지원 프로그램 만족도(점)	85	85.6	86.1	86.3	전년도('17년도) 만족도 조사결과를 감안하되, 만족도 조사는 주관적인 평가로서 예측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목표치 산정	라커트 척도를 이용한 시청자만족도 조사 (100점 만점 환산)	시청·청취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지역방송 교육 이수율 (%)	-	-	88	90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이수율 측정, 전년도 이수율(88%)을 감안하여 상향 목표치 설정	교육 이수인원/ 교육 등록인원×100 (80% 이상 교육 시간 참석 시 이수 인정)	교육 참석자 출석 증명서
지역방송 교육과정 만족도(점)	-	-	-	90	전년도('17년도) 만족도 조사 결과 (89.5점)를 감안하되, 만족도 조사는 주관적인 평가로서 예측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목표치 산정	(정규 맞춤교육 만족도×42%)+ (방문특강 만족도 ×42%)+(멘토링 만족도×16%) * 교육과정별 사업 예산 바울 고려	교육과정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 ④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관리체계 강화

### □ 추진배경

- 지진 등 재난상황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재난경보방송을 위한 재난방송 관련 고시·종합매뉴얼 표준안 개정 및 터널·지하 공간에 재난방송이 잘 될 수 있도록 음영지역 해소 필요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이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재난유형에 효율적 대응을 위한 방송재난 관리체계 확립 및 재난방송 강화 필요
-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제40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28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제35조,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 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고시) 등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방송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방송으로 효율적인 방송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재난방송 실시 체계 확립
- 지진, 태풍 등 대규모 재난으로부터 사전에 방송시설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방송재난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터널,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음영지역에 라디오, DMB 수신 환경조사를 통해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방송의 원활한 수신을 가능하도록 하여 재난피해 예방
-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재난 예방·대비·대응 활동 전개, 신속한 피해상황 접수 및 전파 등 위기대응체계 구축

- 지진 등 긴급 재난발생시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에게 재난상황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자막과 경보음을 동시에 방송하도록 재난방송 관련 고시 및 종합매뉴얼 표준안 개정

###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 실시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	1월	
	해빙기 대비 중요 방송시설 안전점검	3월	
	재난방송 등 종합매뉴얼 표준안 개정	3월	
2/4분기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5월	
	'17년 2~4분기 재난방송 실시 결과 점검	5월	
	하절기 대비 중요 방송시설 안전점검	6월	
3/4분기	2019년도 방송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9월	
4/4분기	동절기 대비 중요방송시설 안전점검	11~12월	
	방송재난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	11~12월	
	터널 및 지하공간내 재난방송 수신기준 마련	12월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자

#### ○ 수혜자

- (국민(방송서비스 이용자 포함)) 지진 등 긴급 재난발생 시 자막방송 외 재난경보음을 동시에 방송하도록 하는 기준 마련으로 재난상황에 대한 신속한 정보전달 및 중단 없는 방송서비스 제공

#### ○ 이해관계자

- (정부부처(행정안전부, 기상청 등), 방송사업자(지상파·종편·보도PP 등))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정보 전달과 안정적인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부처와 방송사업자의 유기적인 협력 필요

## □ 기대효과

- 종합적인 방송재난관리를 통해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방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재난방송 관련 고시 및 종합매뉴얼 표준안 개정을 통한 신속한 재난방송 실시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
- 중요 방송시설에 대한 취약요인 개선, 안전점검 등을 통해 방송 재난체계 강화 및 중단 없는 방송서비스 실시

##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7	'18
방송통신운영지원(Ⅱ-2-일반재정⑤)		
① 방송재난관리(7131-307)	일반회계	13.36
■ 방송재난관리 강화	1.50	1.70
■ 방송재난관리 활동지원	0.21	0.21
■ 비상대비 및 보안업무 활동지원	0.35	0.35
■ KBS 지역(총)국 재난재해 자막속보시스템 개선	-	6.50
■ 중계시설 연구용역	-	4.60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5	'16	'17	'18		
방송재난 대비 중요 방송 시설 안전 점검율(%)	38.8	58.2	77.6	80	중요 방송시설 취약위협 요인을 사전 발굴 개선하여 중단없는 방송 서비스 실시를 위해 설정 [‘18년도 안전점 검 시설수 / 안전 점검 대상 총 시 설수(104개소)] × 100	내부자료

## ⑤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I-1-⑤)

### □ 추진배경

-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방송사업자 허가·승인 심사의 실효성 제고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체계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안 검토
  - 국회\* 및 시민단체\*\* 등은 “엄격한 재허가·재승인을 통해 방송의 공익성·공공성을 제고하고 방송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평가
- \* 종편사업자의 특혜를 해소하고 재승인 심사를 원칙대로 실시해야 함('17년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질의, '17.10.31)
- \*\* 엄격한 종편 재승인 심사 실시 요청(민주언론시민연합 논평, '17.2.18)
- 추진근거 : 방송법 제17조, 방송법 시행령 제16조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방송평가 비율이 40%를 차지하고 방송평가 점수의 사업자별 변별력도 낮아 재허가 심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평가 비중을 줄이고 방송평가의 변별력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
- 매체별(지상파, 종편), 소유별(공영·민영 등), 재무구조별(대형방송사·국악방송 등 군소방송) 심사목적에 맞는 심사 및 배점기준을 명확하게 마련
- 현재 우편, Fax, E-mail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시청자 의견 수렴 방식을 대표성 있는 표본집단 대상 설문조사로 대체하는 등 시청자 의견의 대표성 제고 필요
- 방송의 공적책임(보도·제작 자율성, 편성위원회 기능활성화, 부당 해직 방지, 공영방송 이사회 운영 투명성 등) 관련 심사 강화 방안 마련

##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기존 재허가·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개선 필요사항 검토	2월	
	재허가·재승인 소관 부서의 제도 개선 검토 회의	3월	
2/4분기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 관련 정책연구 수행	4~11월	
3/4분기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안) 초안 마련	8월	
	방송사 및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9~11월	
4/4분기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안) 보완	11월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안) 위원회 의결	12월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자

#### ○ 수혜자

- (전 국민)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 제도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심사체계를 마련하고 시청자의 의견이 합리적으로 반영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제고하여 시청자 복지가 효율적으로 구현
- (방송사업자) 제도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심사의 효율성과 합리적인 심사체계가 마련되면 예측가능성과 사업효율 제고 가능

#### ○ 이해관계자

- (방송사업자)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제도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한 사전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심사제도 변경에 대한 대응능력이 향후 사업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 기대효과

- 매체별, 소유구조별, 기업규모별 심사의 차별화를 통해 매체규모에 걸맞는 공익성과 공공성을 갖출 수 있게 하고, 군소 방송사의 심사부담 경감 가능
- 방송평가제도와 재허가·재승인 심사의 중복을 방지하고 사업자간 변별력 제고를 통해 방송의 공익성 및 공공성 강화

##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 없음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5	'16	'17	'18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 추진율(%)	-	-	신규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기본 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기본계획(안)이 확정되는 전과정을 포함하면서 개선내용에 대한 이해 관계자의 만족도를 반영</li><li>-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강화를 위한 심사제도 개선에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요구사항 발생이 예상되나, 모든 요구 사항을 개선안에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만족도 목표치(65점) 설정</li></ul>	(재허가·재승인 기본계획 초안 마련×0.3) + (재허가·재승인 기본계획 의결 ×0.4) + (재허가·재승인 기본계획 이해 관계자 만족도 (65점) 달성을 × 0.3)	실적 자료

## 성과목표 I -2

## 신규 방송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한다

### (1) 주요 내용

#### □ 지상파 UHD방송 확산

- 지상파 UHD방송 도입으로 이동형 HD 방송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상파 DMB를 포함한 서비스 성격 및 주요 과제 논의를 위한 지상파 이동형 방송정책 방향 연구
- 지상파 UHD방송의 본격적인 확산을 위해 방송사에 허가 조건으로 부가한 UHD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준수여부 점검
- 수도권 지역 지상파 UHD방송 수신환경 개선을 위해 방송사별 UHD 수신환경 개선계획 및 이행실적을 철저히 점검

#### □ 지상파 다채널방송(MMS) 기반 마련

- 지상파 MMS 시범서비스(EBS 2TV, '15.2~) 이후 본방송 개시 준비
  - MMS 본방송 근거를 규정한 「방송법」 개정안(16.11월 제출) 입법 지원
  - 이동형 HD방송 등 지상파 UHD 환경에서의 부가채널 또는 부가 서비스 제공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연구반 참여
- 시범사업자인 EBS가 MMS를 통해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제작재원 지원('18년 50억원)

###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18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5	'16	'17			
신규 방송서비스 활성화율(%)	-	-	100	100	새로운 시장창출 및 제도정비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지상파 UHD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이행도</li><li>- EBS 2TV 프로그램 만족도 및 채널 인지도 목표달성을 성률</li></ul>	[(지상파 UHD 방송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 이행도) X 0.5 + (EBS 2TV 프로그램 만족도 및 채널 인지도 목표달성을 성률 X 0.5] X 100

###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 외부환경

- (UHD) 해외 주요국가들은 UHD방송의 성장가능성에 주목하여 표준화·실험방송 및 업계 간 제휴·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 UHD 산업 태동기에 국내에서 선제적으로 지상파 UHD방송을 확대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
- (MMS) 주요 선진국(미국 '98년, 영국 '03년, 프랑스 '05년)에서 이미 지상파다채널방송이 실시되었고 국내 시청자 및 시민단체의 무료 보편적 방송서비스의 확대 수요 증가
  - '15.2월 EBS 2TV 다채널방송 시범서비스를 허용한 이후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조속히 본방송을 개시할 것을 요구 중
  - 관련 시민단체는 EBS 2TV의 신규콘텐츠 편성비율을 높여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

#### □ 갈등요인

- (UHD) 수도권 지상파 UHD 본방송이 당초 '17.2월 개시 예정 이었으나, KBS의 EBS UHD 송신장비 지원 거부로 EBS에 대한 UHD 방송국 허가가 보류된 상태
  - 방송법 제54조의 '송신지원'에 대한 해석이 명확치 않아 KBS는 'EBS의 수도권 UHD 송신설비 구축비용의 일부'를 부담, EBS는 '구축비용 전부를 KBS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

- (MMS) “MMS 도입대상을 지상파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시민단체, 지상파)과 “방송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도입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유료방송, 종편·보도PP)이 대립
 

< 부가채널 의무재송신 지정 관련 송희경 의원 발의법안('16.11.11.) >

방송법 제78조(재송신)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항 신설

⑤ 제2항에 따라 동시재송신하여야 하는 지상파방송 채널에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파법」 제3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은 방송국에 지정된 주파수의 범위에서 추가로 운용하는 채널(이하 “부가채널”이라 한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가채널도 동시재송신하여야 하고, 부가채널은 지상파방송 채널에 연이어 편성하여야 한다.

- “EBS 2TV를 유료방송에 의무적으로 재송신하여 시청가능 기구 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EBS)과 “유료방송사의 부담을 고려해 사업자간 자율협의 영역으로 둬야한다.”는 입장(종편·보도PP 등)이 대립

## □ 갈등관리계획

- (UHD) KBS·EBS간 자율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 노력을 기울이고, 방송법 제54조를 개정하여 KBS의 업무인 ‘EBS에 대한 송신지원’의 개념을 명확화 하는 방안을 검토
  - (MMS) 방송법령 개정으로 지상파 다채널방송 도입근거를 명시하고 방송시장 환경을 고려하여 타 지상파방송의 MMS 도입 가능성에 대해 지속 검토
    - 국회의 방송법 개정 논의 시 EBS 2TV에 한정<sup>\*</sup>하여 유료방송사가 의무재송신하고 채널번호 편성은 사업자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 사업자들과 협의 추진
- \* 사교육비 절감 등 부가채널 도입의 공익성이 크고, 상업광고를 편성하지 않아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점을 고려

##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① 지상파 UHD방송 확산( I -2-①)

#### □ 추진배경

- 방송기술의 진화로 보다 선명하고 실감나는 UHD 환경이 도래하여 차세대방송서비스에 대한 시청자의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15.7월 700MHz 주파수를 방송용으로 배정
  - 「지상파 UHD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15.12월)」에 따라 '17.5.31일 수도권에서 지상파 UHD 본방송을 개시하였으며, '17.12월 광역시 및 평창·강릉 지역으로 확대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지상파 UHD방송 도입으로 ATSC 3.0 방송표준을 활용한 이동형 HD방송 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 이동형 HD방송 및 지상파 DMB 방송을 포함한 지상파 이동형 방송의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연구반 운영
- 지상파 UHD방송의 본격적인 확산을 위해 방송사에 허가조건으로 부가한 UHD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준수여부를 매년 점검
  - ※ (의무편성비율) 2018년 10%, 2019년 15%, 2020년 25% 이상
- 수도권 지역 지상파 UHD방송 수신환경 개선을 위해 지상파방송 3사가 제출한 UHD 수신환경 개선계획 및 이행실적 점검
  - ※ UHD 수신불량 지역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 및 이행하도록 허가조건 부가

##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지상파 이동방송 연구반 운영	1월~	
2/4분기	부가서비스 도입 계획 협의	6월~	
3/4분기	수도권 지상파 UHD 방송 수신환경 개선 계획 점검	8월	
4/4분기	지상파 이동방송 정책연구 결과 제출	12월	
	지상파 UHD 방송 프로그램 편성비율 점검	12월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자

- (수혜자) 시청자

- 지상파 UHD방송의 확산으로 선명한 UHD 초고화질 방송 서비스를 국민 누구나 무료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됨으로써 시청자들의 미디어 복지 제고

- (이해관계자) 지상파방송사업자

- 정부의 지상파 UHD방송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규제개선 방안이 지상파 UHD 방송서비스의 수행주체인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이해관계와 상충할 경우 양측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

### □ 기대효과

- 지상파 UHD방송의 본격적인 확산으로 고품질의 방송콘텐츠 수출을 통한 한류 확산, UHD TV·디스플레이 및 장비산업 등 연관 고부가가치 산업 활성화
- 무료 보편적 지상파 UHD방송 서비스가 수도권에 이어 광역시 권까지 확대되었으며, 양질의 UHD 방송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시청자의 미디어 복지 제고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5	'16	'17			
지상파 UHD 방송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 이행도(%)	-	-	100	90  ‘16년 수도권 및 ’17년 광역시 및 평창·강릉 지역 지상파 UHD 방 송국 허가조건인 UHD 방송프로 그램 의무편성비율 목표인 10% 대비 이행도를 목표로 설정  지상파 UHD 도입 초기의 방송 사여건을 고려하여 ’17년도에는 5% 이상 UHD프로그램을 편성 하도록 하였으며, 매년 5% 이 상 늘려가도록 허가조건을 부가 하였음  ※ 2018년 10% 이상, 2019년 15% 이상, 2020년 25% 이상	(‘18년 UHD 프로 그램 편성실적 /‘18년 UHD 프로 그램 편성목표) x 100	지상파방송사 (수도권 3개사, 광역시 및 평창·강릉 지역 14개사) UHD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실적 자료

## ② 지상파 다채널방송 기반 마련(I-2-②)

### □ 추진배경

- 방송 압축기술 등의 발달로 既 지정된 주파수 대역을 통하여 2개 이상의 채널을 송출하는 지상파다채널서비스 가능



- 국민의 채널 선택권 및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초·중학, 영어교육 콘텐츠 중심의 EBS 2TV 시범서비스 송출 개시('15.2.11)
- MMS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 방송법령 개정 지원 ▲ 시범서비스 (EBS 2TV) 채널 질 제고 ▲ 지상파 UHD정책과의 연계방안 검토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법령 개정) MMS 본방송 도입을 위하여 국회에 제출('16.11월)한 「방송법」 개정안 입법 지원
  - 「방송법」 개정안 국회 의결 시 부가채널 승인 심사절차 및 편성 기준 등의 구체적 규정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시범서비스 제작 지원) EBS MMS가 혁신적 콘텐츠로 시청자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프로그램 제작지원 지원('18년 50억원 집행 예정)

- (UHD정책 연계) 이동형 HD방송 등 지상파 UHD 환경에서의 부가채널 또는 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연구반 참여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지상파 이동방송 연구반 참여	1월	
	유료방송 재송신 관련 사업자간 협의 추진	3월	
2/4분기	EBS 2TV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개선 협의	5월	
	EBS 2TV 신규프로그램 확대 계획 협의	6월	
3/4분기	「방송법」 개정안 국회 입법 지원	8월 ~	연중
	EBS 2TV 프로그램 만족도 및 채널인지도 조사 시행	9월	
4/4분기	지상파 이동방송 정책연구 결과 제출	12월	

수혜자 및 이해관계자

- (수혜자) 시청자

- 무료 보편 서비스인 지상파에 다채널방송 서비스를 도입하여 시청자의 채널 및 프로그램 선택권 확대
- EBS 2TV 시범서비스는 주 시청층인 초·중등생과 영어학습자에게 교육콘텐츠\* 제공 중

\* '15.2월부터 초중학 학습 및 영어교육 콘텐츠를 매일 19시간(06:00~의일 01:00) 방송 중

- 이해관계자

- (지상파방송) 무료지상파채널 확대를 통하여 디지털 방송전환 혜택을 시청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업광고 허용 등 프로그램 제작 재원마련 대책과 함께 MMS 도입대상의 확대가 필요
- (유료방송) MMS 도입이 지상파방송에 대한 특혜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송 및 광고시장을 고려한 정책 추진 필요
- (시민단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MMS 도입 전면 확대를 통한 보편적 방송서비스 강화가 필요

## □ 기대효과

- (시청자복지 제고) 지상파 다채널 방송 본격 실시로 시청자에 제공되는 지상파방송 채널과 콘텐츠 확대 기대
  - EBS 2TV 시범서비스를 통해 초·중등 대상 교육콘텐츠와 및 영어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 제공되어 국민 사교육비 부담 완화\*
- \* EBS 2TV 시범서비스가 제공하는 초중학 교과목 학습 및 외국어 교육콘텐츠의 연간사교육비 절감효과는 약 1,750억원으로 추정(미디어미래연구소, '15.8월)

##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7	'18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 조성(Ⅱ-2-일반재정①)		
① 방송인프라 지원(3131)		
■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301)	방송통신 발전기금	50 (282)
- EBS 2TV 프로그램 제작지원	50	50 (282) 50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5	'16	'17	'18	
EBS 2TV 프로그램 만족도 및 채널 인지도(%)	신규 신규 신규	76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신규 프로그램 제작 재원 동일<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방통통신발전기금을 통한 '18년 신규제작 재원 지원금이 '17년과 동일(50억원)</li></ul></li><li>○ 신규 지표 추가<ul style="list-style-type: none"><li>- EBS 2TV 프로그램 만족도 이외에 신규지표인 EBS 2TV 채널 인지도가 추가</li><li>→ 지원 재원이 전년 수준 동일하며 신규지표가 추가 되었으므로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목표치 설정</li><li>→ 향후 신규 제작 재원이 확대되고 본방송이 개시된다면 목표치를 상향할 필요가 있음</li></ul></li></ul>	(EBS 2TV 시범서비스 프로그램 만족도×0.5) + (EBS 2TV 채널 인지도×0.5)	외부 전문기관의 시청자 만족도 및 인지도 조사 결과 자료

## 기 본 방 향

##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기반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엄격한 대응 및 이용자역량강화 활동을 통해 이용자 권익을 증진
-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지원, 인터넷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홍보 강화, 불법스팸 유통 차단을 통해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 ◇ 그간의 성과

- 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 고가요금제 강요 여부, 서비스 해지제한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해 제재
- 단말기유통법 시행에 따라 불법지원금 등 과다경쟁을 완화시키고, 투명한 요금경쟁 유도를 통하여 가계통신비를 절감에 기여
- 정보취약계층 및 일반인 대상 계층별 피해예방교육, 대국민 피해예방 문자메시지 발송, 이용자전용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한 이용자 역량 강화
-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하여 개인정보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면서도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사전동의 규제 합리화, 국외이전 중단명령권 신설, 개인정보 유상판매 고지 강화 등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제출
- 빠르게 변화하는 ICT 이용 환경에 부응하여 온라인 맞춤형 광고, 바이오정보, 앱 접근권한 등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내서 마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 노력 및 사고발생 시 신속 대응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

- 체험형 인터넷윤리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인터넷윤리의식이 개선과, 창작동요제, 교수 학습지도안공모전 등 대국민 참여형 콘텐츠를 발굴하여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의 필요성을 전파
- 음성스팸 실시간 차단시스템 구축, 무작위 음성광고 발송사업자 단속 강화 등을 통해 음성스팸 수신량 감소에 기여

## ◇ 중점 추진내용

- 이용자보호 종합계획 마련,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통한 정책방안 마련 등 지능정보화사회에 적합한 이용자 보호체계 구축
- 결합상품 관련 불공정행위, 별정·부가통신 서비스 시장에서 발생하는 신유형 금지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율적 법규준수 환경 조성
-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확대 등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대상 확대, 무선인터넷 과금 검증 운영을 통한 사업자의 적극적 이용자 보호업무 개선 유도
- 이용자 개인·위치정보 보호와 빅데이터·사물인터넷 등 신규 ICT 산업 활성화 간에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 개인정보 활용서비스에 대한 실태점검·모니터링 등을 통해 취약분야를 점검하고, 사업자 자율규제를 지원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
- 사이버폭력 예방 및 인터넷 윤리교육 실시, 범국민 캠페인 전개 등 인터넷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불법유해정보 및 불법스팸을 차단하여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

## ◇ 전략목표와 임무간의 상관성

-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빅데이터 및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분야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지원과 인터넷 윤리교육·캠페인 등을 통해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조성하여 방송통신이용자 주권 강화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

##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성과지표체계 >

(단위 : 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2	2	7	9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b>II-1.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및 권익증진에 기여한다</b>		
	①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환경 조성	① 이용자정책 제도개선 건수
	②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① 유선시장 현장 모니터링 준수율
	③ 이동통신 유통질서 확립	① 단말기 유통시장 개선율
	④ 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① 취약계층 통신서비스 피해 예방 교육 역량 향상율
<b>II-2.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조성한다</b>		
	① 온라인상 안전한 개인(위치)정보 보호 및 활용지원	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위반 사항 시정조치 건수 ②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만족도
	② 온라인상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강화	①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탐지 삭제율
	③ 자유롭고 깨끗한 인터넷 이용환경 구축	① 인터넷윤리교육 만족도 ② 휴대전화·이메일 스팸 수신량

## (1) 주요 내용

- 이용자보호 중장기 계획 마련 및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 할 수 있는 이용자보호환경 조성
- 결합상품 및 별정부가서비스 증가 등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실태점검 강화
-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통해 불법 지원금 등 과다경쟁을 완화시키고, 투명한 요금경쟁 유도로 통신비 절감 추진
-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정보제공과 보호활동을 통해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16 '17 '18	'18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통신시장 불공정행위 개선 건수	신규	7	8	유·무선 통신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태점검 및 시정조치는 통신시장의 건전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므로 통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	실태점검 및 시정조치를 통한 개선 실적	내부자료, 제재조치 관련 상정안건, 실태점검 보고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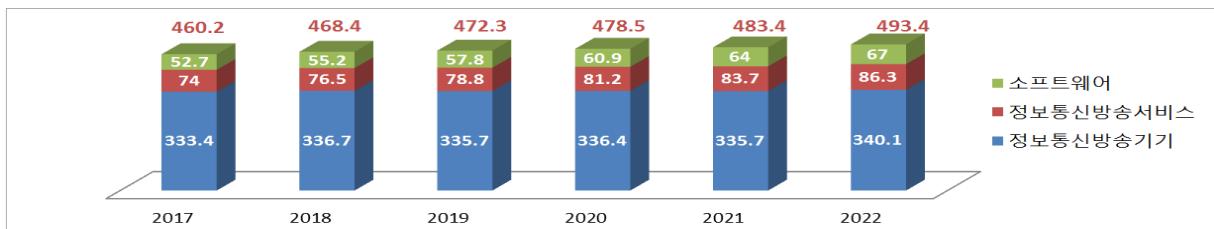
##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외부환경

- (4차 산업혁명 본격화) AI, IoT, Cloud, Big data 등의 기술로 혁신된 새로운 생태계의 도래로 ICT 기반의 新산업 서비스 활성화

※ ‘18년 ICT 산업은 정보서비스와 소프트웨어의 안정적 성장으로 전년대비 1.8% 증가한 약 468.4조 원으로 전망

< ICT 산업의 중장기 전망(단위:조원) >



※ 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7)

- (탈 국경 · 서비스 양상) 자율주행차, 원격의료 등 지능정보 서비스가 글로벌 사업자·서비스 간, 네트워크·제조·서비스사 간 제휴형태로 제공되면서 새로운 경쟁관계 형성
- ※ 글로벌 제조·IT 기업 간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을 위한 글로벌 동맹을 맺고 있으며, 원격의료·챗봇 등 서비스의 융합화에 따른 서비스 범위 정립 어려움
- (新 서비스 이용자 보호) AI · IoT · O2O 등 복잡 · 다양해진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으로 이용자 불편 및 피해도 복합적으로 진화될 전망
- (플랫폼사업자 규제 필요성) 인터넷플랫폼의 영향력 증대로 부가통신사업자의 불공정·이용자이익저해 행위로 인한 생태계 전반의 경쟁 저해를 대비하여 구체적 금지행위 유형 마련 등 규제방향 정립 요구
- (이용자 피해구제 기준) 최근 네트워크 오류 및 데이터 폭주에 따른 잇따른 통신장애로 이용자 피해보상 방법 및 기준에 대한 관심 증대
- ※ ‘17.9월(LGU+), ‘17.7월(LGU+), ‘14.3월 ~ ‘18.3월(SKT)
- (사후규제 강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전담조직 설립 및 인력충원 등을 통한 시장조사 체계 강화 추세
-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집단조사 업무 강화를 위한 ‘기업집단국’을 출범 ('16.9월)하고, 금감원은 사후감독 기능의 ‘금융소비자보호처’ 조직 · 인력을 2배 이상 대폭 확충('16.2월)

## □ 갈등요인

-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방송통신 생태계가 기간통신 위주에서 부가 통신으로 중심축이 이동하는 등 급속히 변화
  - 특히 모바일, IoT 등 융합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지만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재, 이용자 피해구제제도는 아직 미흡하여 규제체계 정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반면,
  - 해외사업자에 대한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규제 강화는 국내외 기업의 역차별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고, 과도한 규제로 새로운 서비스 성장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
- 사업자의 위법행위 역시 복잡·다양해지고 있어 정부의 일방적인 기준설정·제재보다는 각 분야에 적합하도록 자율적인 상생방안 마련이 필요
-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화되고 있으나, 통신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른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요구 지속
- ICT 생태계에서 인터넷플랫폼사업자의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로 인해 생태계 전반의 경쟁과 혁신이 저해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
- ICT 산업의 역동성으로 인해 사업자 행위에 대한 예측이 매우 제한적일 뿐 아니라 특정 행위에 대한 효과 분석은 사후적으로 가능한데 이에 대한 축적된 사례분석이 거의 없다는 한계가 존재

## □ 갈등관리계획

-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제재는 강화하되, 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을 유도
-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조화로운 이용자 보호정책과 공정경쟁정책을 추진
- 이용자 피해예방과 구제를 위한 이용자 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를 통해 능동적·적극적 이용자가 될 수 있는 기회 제공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①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환경 조성(II-1-①)

#### □ 추진배경 (목적)

- 모바일 중심의 생활변화, 지능정보社会의 본격화와 방송통신 시장의 경쟁심화로 복잡하고 새로운 양상의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가 증가하고,
- SNS 및 1인방송 확산에 따라 방송통신이용자는 단순 소비자에서 능동적 참여자로 진화하고 있어 환경변화에 따른 이용자 권리 보호의 정책기조 전환이 필요
- 포털 등 인터넷사업자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사회적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해외사업자를 규율하지 못하는 규제 신설은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을 심화시킨다는 반론도 존재
- 각 산업별 이용자 피해 효율적으로 중재하고 구제하기 위하여 전담조직 설립 및 인력 충원 등 사후 규제 강화를 통한 시장 조사체계 강화 추세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이용자 정책방향 재정립, 시장환경을 반영한 규제체계 개선, 피해구제 강화 등을 추진
- 방송통신융합, 글로벌 서비스 확대 등으로 인한 이용자 보호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참여자로서의 이용자 역량을 강화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를 적극적으로 대비

-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무강화,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해소 등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과 공정경쟁, 이용자보호 방안 마련을 위하여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운영
  - 각 주제에 대해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가 제출한 정책 제안서를 정책에 반영하거나 입법을 추진
- 통신서비스 이용 관련 분쟁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알선·재정 제도를 활성화하고, 단말장치 리콜시 이용자 보호조치 법적근거 마련을 지속 추진
- 통신분야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업무체계 개선, 조사관 역량 강화 교육, 조사지원 기능을 확충하여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엄격하게 대응
  - 과징금 산정기준 명확화 등을 통해 투명한 조사체계를 정립하여 공정경쟁을 통한 이용자보호 환경조성에 기여
- 결합판매를 통한 불공정 경쟁 방지 및 이용자 편의 확대를 위해 결합시장 경쟁상황을 평가하여 정책수립에 반영
  - 방송통신 결합판매와 개별 상품시장의 연관성 분석을 통한 경쟁상황 평가 실시

###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구성 1·2소위원회 운영	2~12월	
	재정사건 접수 및 처리	연중	
2/4분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위원회 의결	5월	
	재정 관련 통신사업자 상반기 간담회 개최	6월	
	결합시장 경쟁상황 평가 관련 정책연구 및 평가 실시	5~12월	
3/4분기	방송통신금지행위 업무처리 규정 개정안 마련	9월	
4/4분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	12월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정책제안서 마련	12월	
	이용자보호 종합 정책방안 마련	12월	
	재정 관련 통신사업자 하반기 간담회 개최	12월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자

### ○ 수혜자

- (통신서비스 이용자) 모바일·플랫폼 중심의 체계적인 이용자 보호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이용자 권리 향상
- (통신사업자) 공정하고 투명하게 규제 집행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피규제자인 통신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공정경쟁 환경 및 자율적 이용자보호 환경 조성에 기여

### ○ (이해관계자) 통신사업자

-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무강화 및 국내외 기업 역차별 해소는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분야로, 규제체계 개편으로 인한 통신사업자의 반발 예상
- 국내외 인터넷기업, 통신사, 콘텐츠 제공업체, 소비자 관련단체, 학계·법률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상생 생태계 조성에 합의안을 마련할 계획

## □ 기대효과

-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사업자 자율규제 체계 개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도 개선방향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수용 가능성이 높은 이용자 보호정책을 도출하고 추진
- 이동통신단말장치 리콜의 법적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통신관련 분쟁의 공정하고 신속한 해결을 통해 이용자 권리를 구제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5	'16	'17	'18	
이용자정책 제도개선건수	신규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시로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가 발생하는 현재 방송통신 환경에서 「이용자보호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현안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개선 추진이 필수적이므로 성과지표로 선정하고,</li> <li>- '17년 이용자정책총괄과 제도 개선 실적(2건)에서 150% 상승 시킨 3건을 목표로 설정</li> <li>○ 단년도 주요 추진 과제를 성과지표로 삼아왔으나, 매년 성과지표가 변경*되어 보호환경 개선 정도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측정하기 어려웠으므로 제도개선 건수로 성과지표를 변경</li> </ul> <p>* 15년 결합상품 관련 제도 정비 및 불공정행위 개선 16년 통신시장 자율규제 제도 도입 기업수 17년 분쟁조정제도 마련</p>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친 제도 개선 건의 외부 공표 결과물로 실적 산정	제도 개선 관련 법령 개정안, 보도자료 등

## ②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Ⅱ-1-②)

### □ 추진배경 (목적)

- 통신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이의 저해행위에 대한 조사·제재 등을 통해 공정경쟁 질서 확립 및 이용자 권리보호 강화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가입·이용·해지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및 불공정 관행과 함께,
  - 별정·부가통신 서비스시장에서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신유형의 금지행위(부당한 조건·제한부과 행위 등)에 대한 실태점검 강화
-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해 신유형에 대한 통신시장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한편, 법·제도개선을 통한 자율적 법규준수 환경 조성
- 통신업계 고객센터 상생환경 개선 등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통신업계 고객센터 상담원 업무환경 개선방안 마련·시행	2~4월	
	인터넷플랫폼 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3월	
2/4분기	전기통신서비스 해지 관련 시정명령 이행점검	4월	
	인터넷플랫폼 시장 현황조사 등 주요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5~12월	
	결합상품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사실조사	5월	
3/4분기	동등결합판매 불공정행위 실태점검	7월	
	전기통신사업자 경제적 이익 제공기준(고시) 제정	7~8월	
	사회적 약자 대상 전기통신서비스 저가요금제 가입 관련 실태점검	9월	
	통신요금 미환급금 감소방안 마련	10월	
4/4분기	이통사-알뜰폰 사업자간 불공정행위 실태점검	11월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 자율심의제(안) 마련	11월	
	전기통신서비스 해지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12월	
	유선분야 판매점 사전승낙제 방안 마련	12월	
연중	초고속인터넷 및 결합상품 시장 모니터링	1~12월	
	인터넷플랫폼 공정경쟁 환경조성 연구반 운영	1~12월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자

- (방송통신이용자)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혜택 수혜
  - 통신 소외계층, 통신서비스 가입·이용·해지 신청자 등
- (방송통신사업자)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대한 혜택 수혜
  - 통신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인터넷플랫폼사업자 등

## □ 기대효과

- 신유형의 통신시장 모니터링을 강화 등 사후 규제체계를 정비하고, 법·제도 개선을 통한 사업자들의 법 집행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 경쟁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금지를 통해 열위 사업자 등의 부당한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

##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7	'18	
공정경쟁환경조성(I-1-일반재정①)			
① 공정경쟁환경조성(2141)	일반회계	0.81 (40.10)	2.81 (42.00)
■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302)		16.91	18.81
- 방송통신시장 상시 조사분석체계 운영		0.81	0.81
- 인터넷플랫폼 시장 공정경쟁 환경조성	-	-	2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16 '17 '18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5	'16				
유선시장 현장 모니터링 준수율(%)	59.8	91.9	82	82	유선시장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결과와 시장현황을 고려하여, 결합상품과 허위·과장 광고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	(유선시장 경품 가이드 현장 모니터링 준수율+ 허위과장 광고 가이드 현장 모니터링 준수율)/2

### ③ 이동통신 유통질서 확립(Ⅱ-1-③)

#### □ 추진배경 (목적)

- 단말기유통법 시행('14.10월) 후 통신비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 및 더욱 지능화되고 다양해진 법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필요

< 가계통신비 추이 >

(단위 : 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통신장비 (단말기, a)	6,743	9,456	23,766	22,676	19,224
통신서비스 (통신사요금, b)	145,374	143,098	126,297	124,741	124,496
우편(c)	242	238	287	308	281
통신비(d=a+b+c)	152,359	152,792	150,350	147,725	144,001
가계지출비(e)	3,216,894	3,261,590	3,355,512	3,373,302	3,361,396
통신비 비중(f=d/e)	4.74%	4.68%	4.48%	4.38%	4.28%

※ 출처 : 통계청, 전국 2인 이상 명목 기준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국정과제 이행) 핵심 국정과제\* 이행을 통한 지속적인 가계 통신비 경감 대책 추진

\* 31번 교통·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경감(분리공시제 도입,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 비교 공시 등)

- OECD 주요국 대상으로 단말기의 국내 및 국외 출고가를 비교하여 단말기 가격 인하 유도('18.5월~)
- 단말기 출고가 인하 유도를 위해 이통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을 공시할 때 제조업자의 장려금과 이통사의 지원금을 분리하여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도입(~'18.12월)

- (시장 안정화 추진) 지원금 상한제 폐지('17.10.1) 이후에도 공시 위반 유인이 상존하고 있고, 위반행위가 더욱 지능화되고 다양해져 이에 적극 대응(연중)
  - 온라인·야간·지방에서의 게릴라식 과열·혼탁상황에 대한 온라인 상황반 운영,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 마련 등 단속 강화
  - 단말기 출시 관련 시장 안정화를 위해 방통위 종합상황반을 중심으로 전국 5개권역 지역상황반(수도권, 충청권, 경북권, 경남권, 호남권) 및 온·오프라인 동향수집반 등 점검반 운영
  - 이통사 유통점의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강요행위 등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단속 강화
- (새로운 규제수요 대응) 이통사, 제조사, 알뜰폰사, 유통점, 소비자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단말기 유통시장 개선에 대한 규제 수요에 상시 대응(연중)
  - 이통사의 USIM 유통과 관련한 금지행위 규정이 신설('18.5.22. 시행)됨에 따라 이동통신 시장의 USIM 유통구조 점검 및 법 준수를 위한 행정지도 실시
  - 이동통신 분야는 이용자 피해관련 민원이 많아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수요에 상시 대응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조사 제재	1월	
	시정명령 이행점검	3월	
2/4분기	신분증 스캐너 이용 실태점검	4월	
	이동통신 시장의 USIM 유통 관련 금지행위 규정 신설에 따라 시행령·고시 개정 및 USIM 유통 구조 개선	5월	
	단말기 출고가 국내·외 비교 공시	5월	
4/4분기	분리공시제 도입(입법지원, 하위 고시개정안 마련)	12월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 마련	12월	
연중	단말기유통법 준수 취약지역 실태점검	1~12월	
	온라인 채널별(일반사이트, 웹카페 등) 모니터링 실시	1~12월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자

### ○ 수혜자

-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단말기 불법 지원금 등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 해소, 단말기 출고가 인하 유도 등 통신비 경감으로 이용자 편의 제고
- (이동통신사업자) 사업자간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기업 이미지 제고

### ○ 이해관계자

- 단말기유통법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이동통신사업자, 제조사, 유통점 등

## □ 기대효과

-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
- 소모적인 지원금 경쟁을 서비스와 요금에 기반한 경쟁으로 유도하고, 단말기 출고가 인하 유도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에 기여

##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7	'18	
공정경쟁환경 조성( I -1-일반재정①)			
① 공정경쟁 환경조성(2141)	일반회계	16.1 (40.10)	16.0 (42.00)
■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302)		16.91	18.81
- 서비스분야별 시장모니터링 실시		16.1	14.34
- 이동통신 단말기 국제비교		-	1.66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5	'16				
단말기 유통시장 개선율(%)	-	-	신규 98	가계통신비 경감, 이용자 차별 금지 및 이동통신 단말기유통 시장의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 해 제도 개선 실적, 단말기유 통법 세부항목별 평균 준수율을 단말기 유통시장 불공정 행위 개선 결과로 보아 성과지표로 선정	[제도개선 실적/제도개선 계획(목표 : 2건)×0.5] + [단말기유통법 세부항목별 평균 준수율(%))×0.5]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 내부자료, 보도자료 등

## ④ 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Ⅱ-1-④)

### □ 추진배경 (목적)

- 정보취약계층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방송통신서비스 활용방법 및 피해예방·구제방안 등의 교육을 통해 이용자 역량강화 및 안전한 통신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 각 사업자가 시행하고 있는 이용자 보호 노력을 평가하고 결과공표를 통해 자발적인 이용자 보호업무 개선 유도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장노년층, 장애인, 농어민, 다문화가정 등 정보취약계층 및 일반인 대상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 정보취약계층 관련 기관과 교육협력 체계 구축, 계층별 교육 콘텐츠 제작·보급(유튜브 등), 전문 강사단(대학생 등) 육성을 통한 전국적 교육 실시
-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앱마켓 사업자까지 확대 실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평가결과 공개
- 인터넷개인방송 유료아이템 결제 피해방지를 위해 결제한도를 하향조정하고 미성년자 이용 관련 피해예방 및 보호대책 마련
- 취약계층(장애인, 고령자)의 무분별한 모바일 콘텐츠 이용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정보이용료 알리미서비스 도입
- 사업자 약관 및 민원처리지침 등을 기반으로 통신서비스 분야별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 마련

- 유선전화 카드결제서비스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이동전화 서비스 계약 시 중요사항 고지여부, 플로팅광고 삭제 제한 금지행위 준수여부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점검

###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기관 협의	3월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사업자 설명회	3월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	3월	
2/4분기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강사단 발대식	4월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계획 수립	5월	
	이동전화서비스 계약 시 중요사항 고지여부 점검	5월	
3/4분기	인터넷개인방송 유료아이템 결제한도 하향조정	7월	
	유선전화 카드결제서비스 관련 중요사항 고지여부 점검	8월	
	방송통신 피해예방 강사단 보수 교육 및 간담회	9월	
4/4분기	플로팅광고 삭제 제한 금지행위 준수여부 점검	10월	
	방송통신 이용자주간 행사 실시	11월	
	미성년자 인터넷개인방송 이용 관련 보호대책 마련	12월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 공개	12월	
	통신서비스 분야별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 마련	12월	
연중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실시	7~11월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실시	연중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자

- (수혜자)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 장·노년층, 장애인 등 계층별 맞춤형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정보제공, 피해구제 기준 제공 등을 통해 이용자 역량강화 및 이용자 편의 증진

- (이해관계자) 통신사업자

-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업무평가 확대, 이용자 피해구제 기준 공유 등을 통해 사업자의 적극적인 이용자 권익보고 기반 마련

## □ 기대효과

- 정보취약계층 및 모든 국민의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확대를 통해 이용자 역량제고 및 통신서비스 선택권 보장
- 통신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업무에 대한 관심제고 및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이용자 권리 증진 및 만족도 제고
- 과다한 인터넷개인방송의 결제 피해방지 및 미성년자 보호대책 마련 등으로 이용자 권리보호 및 건전한 이용환경 조성

##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7	'18
공정경쟁환경 조성( I -1-일반재정①)		
① 공정경쟁 환경 조성(2141)	일반회계 18.99 (40.1)	18.59 (42.0)
▪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환경조성(301) -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 모바일 앱결제 피해예방 및 이용자보호	13.50	13.50
	5.49	5.09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5	'16	'17	'18	
취약계층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교육 역량 향상율(%)	- 신규 14.7	15.0	'17년도 실적(14.7%) 대비 2% 상향한 15%로 설정	[(계층별 교육 후 역량 향상 점수 - 교육 전 역량 점수)/교육 전 역량점수] x 100	교육전·후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집계

## 성과목표 II-2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조성한다.

### (1) 주요 내용

#### □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

-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드론 등 신규 ICT 분야에서 개인·위치정보가 보호되는 동시에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개선 추진
- 자율규제 체계 도입,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활성화, 개인정보 보호 교육·홍보 등을 통해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환경 조성 촉진
- EU 적정성 평가 조기 승인 추진, APEC CBPR 국내 인증기관 지정 등 국제인증제 도입을 통한 국가간 협력체계 강화
- 유출사고 빈발 분야, 민원 다발 분야 등에 개인정보 취약분야에 대해 보호조치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인정보 유출 예방
- 계층별 맞춤형 인터넷 윤리교육 실시, 대국민 캠페인 전개, 불법유해정보 차단 강화 등을 통해 선진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
- 무작위 음성광고 발송사업자 현장점검 실시, 빅데이터 기반 스팸탐지 등 분석모델 개발 등 불법스팸 대응체계 기반 강화

###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18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5	'16	'17	'18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위반 사항 시정조치 건수	59	80	73	74	최근 3년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위반 사항의 평균 시정조치 건수인 70건을 기준으로 5% 상승한 74건을 목표치로 설정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사항의 시정조치 건수	시정조치 안건

###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 외부환경

- 사이버공간 확장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경로가 다양화되고 지속적으로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드론 등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한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유노출에 대한 우려 증가
- 스마트기기 이용 확산과 새로운 ICT신기술 발달에 따라 유언비어 유포, 사이버폭력 및 불법유해정보 확산 등 사회문제 대두
- 이미지 스팸 등 기존의 스팸차단시스템을 우회하는 불법스팸 증가  
※ 휴대전화 문자스팸('16년 하반기 326만건 → '17년 하반기 538만건)
-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의 보급 증가로 생활양식과 소통방식의 변화와 더불어 사이버 역기능 이슈 발생에 따른 인터넷윤리교육 확대 필요

#### □ 갈등요인

- 중소·영세 사업자의 경우, 개인·위치정보 보호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법제도를 미준수하는 사례 발생
- 지나치게 엄격한 개인·위치정보 규제는 사업자의 부담을 초래하고 서비스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 존재
- 스패머의 통신서비스 이용이 통신사업자의 수익과 연결되는 만큼 통신사업자의 적극적인 스팸대응 노력 강화 필요
-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사회구성원의 자발적 참여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교육·홍보방안 마련 필요

## □ 갈등관리계획

- 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 보호에 대한 필요성과 법적 의무 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홍보 실시
- 개인·위치정보 활용 서비스분야에서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 정비
- 비식별 조치 등을 통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위해 4차위, 국회(4차특위) 등을 통해 시민단체 및 산업계와 협의
- 실시간 스팸 모니터링 체계 강화 및 불법스팸 전송자 집중단속과 동시에 사업자와 이용자 대상 스팸방지 인식제고 설명회 등 개최
- 교육의 접점(교사, 학부모)을 활용하여 교육대상자 저변을 확대하고,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여 참여기반의 인터넷윤리 콘텐츠 확산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① 온라인상 안전한 개인(위치)정보 보호 및 활용지원(II-2-①)

#### □ 추진배경 (목적)

- 개인·위치정보 관련 법제도 개선, 인식제고 등을 통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 조성
-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인·위치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사생활 보호와 산업 발전의 균형 도모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 개인정보 정책 》

- (제도 개선) 문자 메시지, 모바일 앱, SNS 등 ICT 서비스 발전에 따라 다양해지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획득 방법에 대한 규정 정비
  - IoT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기준 제시 등 보호 수칙 마련
  - 현행 정보통신망법상의 이용자 권리보호 제도의 실질화를 위한 방안모색 및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 개정
  - 신뢰성 있는 본인확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 관련제도 개선
- (비식별 지원) 개인정보의 비식별조치 관련 사회적 합의 도출 및 법제화 추진 지원, 비식별조치 활용 지원을 위한 교육·컨설팅 등
- (자율환경 조성) ISMS와 PIMS 인증제도의 중복운영에 따른 기업 부담 해소를 위해 제도간 통합 및 통합인증제도 기반마련 추진

- 대국민 캠페인 등 홍보활동 추진 및 사업자·이용자 대상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전면 개편 등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노력
  - (국제협력 강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의 글로벌 인증체계인 APEC CBPR 세부 운영 체계 마련 및 제도 홍보
- 유럽진출 국내 기업의 EU 개인정보 규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정성 결정(방법 분야) 등 기업 지원

### 《 위치정보 정책 》

- (제도 개선) 글로벌 사업자의 허가·신고 법인 불일치·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도입, 허가·신고 관련서식 개정 등 추진
- 위치정보 정의 재정립,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진입규제 완화 등 단계적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위치정보법 및 시행령 개정안 마련
-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공모전을 실시하여 우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특허출원·창업교육 등을 지원하여 사업화 연계 유도
- 스타트업 및 중소 위치정보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컨설팅 실시 및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한 기술적 보호조치 지원
- (긴급구조 강화)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LBSP) 운영을 통해 피구조자의 위치정보를 긴급구조기관에 신속히 제공
- 위치정보 전달 체계상 유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증시험을 실시 하되, 기존 대비 품질측정 대상지역 및 평가지표(정확도, 지연시간 등) 등을 확대하여 이통사의 위치정보 품질제고 유도

##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해커톤 참석 등 비식별 조치 관련 사회적 합의 도출	2~6월	
	신용카드 등 신규 본인확인서비스 운영	3~12월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제도(PIMS) 운영	1~12월	
	ISMS-PIMS 통합인증제도 고시 제·개정 등 기반 마련	1~12월	
	비식별조치 교육·컨설팅	1~12월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운영	1~12월	
2/4분기	GDPR 세미나 개최	4월	
	우리기업을 위한 GDPR 가이드북 개발	5월	
	위치정보·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신청서식 등 관련 고시 개정	6월	
	위치정보 산업 관련 동향 및 실태조사	4~12월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 비즈니스모델 공모전	5~7월	
	이용자 및 사업자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5~12월	
	사업자·이용자 대상 개인·위치정보 보호 교육 실시	5~12월	
	긴급구조 위치측위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실증시험	5~12월	
	중소·영세 위치정보 사업자를 위한 온 오프라인 컨설팅	5~12월	
	기술적 보호조치 지원을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	5~12월	
3/4분기	2018 인터넷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 추진	7~11월	
	우수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 지원	7~12월	
	민간아이핀 보완 조치 관련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7월	
	동의 획득 방법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7월	
	IoT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수칙 마련	9월	
4/4분기	CBPR 기업 간담회 실시	10월	
	CBPR 세부 운영 체계 구축	11월	
	이용자 권리보호제도 실질화를 위한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	12월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위치정보법 및 시행령 개정안 마련	12월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자

#### ○ 수혜자

-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개인·위치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통해 이용자가 온라인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글로벌 인증체계 가입 추진을 통한 해외진출 용이성 제고 및 개인정보 법규준수 비용절감 등 국내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국제경쟁력 강화
- (예비·스타트업 위치정보사업자) 공모전을 통한 우수 비즈니스 모델의 사업화를 지원하여 신규 위치기반 서비스 발굴
- (중소·영세 위치정보사업자) 위치정보를 활용한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컨설팅 및 산업관련 동향정보 제공
- (일반국민(긴급구조 신청자)) : 긴급구조시 요구자 위치정보의 정확도를 향상하여 긴급구조기관의 신속한 구조 지원

#### ○ 이해관계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관련제도 개선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활용 가능
-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업 및 연구단체)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분야 투자확대로 관련 보안기술 업체와 연구기관의 전문성 향상
- (위치정보/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보호 조치 강화를 통해 개인·위치정보 침해사고 등 근본적 예방

#### □ 기대효과

- 제도개선을 통해 개인·위치정보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면서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개인·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
- 비식별 데이터 활용 지원을 통한 국내 신산업 발전 촉진
- 개인정보의 자율관리 환경 기반 조성을 통해 국민의 사생활 보호 및 이용환경의 안전성 강화

-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경쟁력 강화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및 국가별로 상이한 개인정보 법규준수 비용 절감
- Wi-Fi를 활용한 위치측위 긴급구조 실효성 제고를 통한 국가 안전망 제고 효과 제고
- 중소·영세 위치정보 사업 경쟁력 제고 및 신규사업 활성화 지원으로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위치정보 산업의 창조적 선순환 체계 마련

##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7	'18
안전한 정보이용 환경조성( I -1-정보화①)			
① 안전한 인터넷 정보 활용 기반 구축(2151)	일반회계	97.34 (126.97)	100.16 (131.09)
▪ 개인정보보호 강화(302)		92.09	94.91
▪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301)		5.25	5.25
② 안전한 정보이용환경 조성(3251)	방송통신 발전기금	27.78 (87.49)	27.78 (99.90)
▪ 위치정보 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304)		15.08	15.08
▪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기반 구축(311)		12.70	12.70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18 목표치 '15 '16 '17 '18	'18 목표치 산출근거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5	'16			
개인정보 관련 제도개선 건수	-	-	신규 4	기존 제도로써 ICT 이용환경의 빠른 변화를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여 관련 제도의 신속한 개선 필요하며, 주요 제도 개선 과제의 시급성 및 달성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목표 설정	외부로 공표된 개인정보 관련 제도 개선 결과물 건수를 실적으로 산정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만족도(점)	신규 82.4	82.5	신규 비즈니스모델의 사업화 연계 난이도와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으로부터 제공받은 위치정보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고려하여 목표 설정	(우수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 지원 만족도 × 0.5) +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수요자 (경찰청 국민안전체) 만족도 × 0.5)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

## ② 온라인상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강화(II-2-②)

### □ 추진배경 (목적)

-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O2O 등 개인정보 활용서비스 증가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실태점검·모니터링 등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 조성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 유출 및 기획점검 》

- 유출사고 발생 분야 및 신규 개인정보 활용 서비스 등의 개인정보 관리 취약분야의 보호조치 집중 점검
-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이용자의 2차 피해방지 및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

#### 《 모니터링 》

- 개인정보 유출 등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스마트폰 앱·웹사이트를 모니터링 후 개선필요 사항에 대한 안내 및 개선조치 실시
- 국내외 주요 검색엔진 등 웹사이트 상에서 개인정보 노출 등에 대한 탐지·삭제를 통해 보이스 피싱 등 2차 피해 사전예방

#### 《 자율규제 및 관련법령 》

- 정부의 규제만으로는 온라인 상 개인정보보호에 한계가 있어, 기업의 보호수준 제고 및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자율규제를 시행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업자 인식 제고 및 자율규제 참여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법제도 마련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업자 책임성 강화 및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진행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과징금 상향 등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2월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기본계획 수립	3월	
2/4분기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관 교육	4월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시행	5월	
3/4분기	자율규제 관련 법령 개정 대비 시행령 및 고시(안) 마련	7~9월	
4/4분기	'17~'18년 시정명령 이행점검	10~12월	
	정보통신망법 개정 완료(단, 국회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12월	
연중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1~12월	
	검경통보, 민원신고 등 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	1~12월	
	개인정보 취약분야 실태점검	1~12월	
	국내·외 개인정보 노출, 불법유통 게시물 탐지 및 삭제	1~12월	
	스마트폰 앱·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 실태 모니터링	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자**

- 수혜자
  -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실태점검 및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이용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 구축
- 이해관계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부의 실태점검 및 사업자의 자율적인 사전 보호조치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업 및 연구단체)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분야 투자확대로 관련 보안기술 업체와 연구기관의 전문성 향상
  - (위치정보/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보호 조치 강화를 통해 개인·위치정보 침해사고 등 근본적 예방

## □ 기대효과

-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법규 강화 및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역량 제고를 통해 개인정보의 보호수준 향상 도모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강화를 통해 사업자들이 사전·사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취해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
- 해킹 및 관리 부주의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이용자 2차 피해를 예방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자의 보호수준 향상 및 2, 3차 유출피해 사전예방
-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성화를 통해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제고 및 사각지대 최소화

##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7	'18
안전한 정보이용 환경조성(I-1-정보화①)		
① 안전한 정보이용환경조성(2151)	일반회계 97.34 (126.97)	100.16 131.09
▪ 개인정보보호 강화(302)	92.09	94.91
▪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301)	5.25	5.25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18 목표치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5	'16				
개인정보(8종) 노출·불법유통 탐지 삭제율(%)	86	95	90	최근 3년간 개인정보(8종) 노출·불법유통 게시물 삭제율 90%를 목표로 설정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게시물 삭제건수 / 탐지 건수)×100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게시물 삭제건수 / 탐지 건수)×100

### ③ 자유롭고 깨끗한 인터넷 이용환경 구축(II-2-③)

#### □ 추진배경 (목적)

- 계층별 맞춤형 인터넷윤리교육\*, 인터넷윤리체험관 개소, 생활 밀착형 콘텐츠 발굴 등 인터넷윤리 인식제고를 위한 활동 전개  
\* 국정과제의 실천과제(70·5,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로 100만 인터넷윤리교육 실시
-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운영 확대를 통해 불법스팸 유통을 최소화하고 스팸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 해소 추진
-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등 불법정보 유통 차단 및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 S/W 보급 확대 등을 통한 인터넷 상 역기능 대응
-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관련 제도개선 추진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전 국민 대상 맞춤형 인터넷 윤리교육 추진
  - 유·아동, 청소년, 성인(장노년층·학부모 포함) 등 전 국민 대상의 계층별 교육 및 4차 산업혁명 추세에 맞춰 토론하고 협업하는 실천형·체감형 교육확대 추진  
※ 인형극 및 뮤지컬 공연교육, 게임형 교구활용 교육, 한국인터넷드림단, 토의·토론 및 앱활용 교육
  - 장애청소년, 지역아동센터 소속 청소년 등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체험형 인터넷윤리 교육프로그램 추진
- 국민 참여형·공감형 인터넷 윤리문화 확산
  - 동요제, 음악제, 창작콘텐츠 공모전 등 정책수혜자들이 생산하는 콘텐츠 발굴하여 확산하고, 인터넷윤리체험관 활성화 도모  
※ 국립광주과학관 내 인터넷윤리체험관 개소

- 공공시설, SNS 등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홍보 추진
  - 공공시설 및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아파트 내 디지털 사이니지 등)을 홍보 허브로 설정하여 국민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가고 대학생 드림단을 선발하여 자율 캠페인 전개
- 웹팩스로 수신한 팩스스팸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간편 신고 서비스 확대를 위한 간담회 개최 및 관련 사업자 대상 협의를 통한 단계적 확대 추진(12월)  
※ 기간통신 3사(SKB, KT, LGU+) → 모든 웹팩스 사업자
- 전화권유판매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법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 및 사업자 스팸방지 인식 제고를 위한 설명회 개최(연중)
- 스팸신고 등으로 수집된 대용량 스팸 데이터에 대한 업무처리 신속성 및 정확성 향상을 위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모델 및 알고리즘 개발(12월)
- 청소년의 유해정보 접근 차단을 위한 유해정보 차단 S/W 및 스마트폰 중독예방을 위한 사이버안심존 보급 확대
-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등 불법 유해정보 인터넷 상 유통차단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 사업자 등) 기술적 점검
- 임시조치 개선안, 자율규제 지원근거 마련 등 정보통신망법 개정 국회 입법지원

##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인터넷윤리,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운영기관 모집 및 선정	1월	
	사이버안심존 참여학교 운영 확대	3~12월	
	정보통신망법(임시조치, 자율규제) 개정 국회 입법 지원	3~12월	
	'17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분석 및 공개	3월	
	'18년 스팸 관련 망법 준수여부 현장점검 계획 마련 및 추진	3월	
	한국인터넷드림단 발대식	3월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기술적 조치 실태점검	3월	
2/4분기	인터넷윤리 및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추진	4~12월	
	'18년 상반기 휴대전화 및 이메일 스팸 수신량 조사	5월	
	인터넷윤리체험관 개소	5월	
	대학생 한국인터넷드림단 발대식	5월	
	웹팩스 및 MVNO 사업자 대상 스팸대응 강화 설명회 개최	6월	
3/4분기	인터넷윤리 교육 콘텐츠 개발	7~12월	
	불법스팸 방지 인식제고 설명회 개최	7월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캠페인 개최	9월	
	'18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분석 및 공개	9월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기술적 조치 실태점검	9월	
4/4분기	인터넷윤리 생활밀착형 홍보	10~12월	
	인터넷드림 창작음악제 개최	10월	
	인터넷윤리대전(창작콘텐츠 공모전, 교수학습지도안 공모전) 개최	11월	
	웹팩스 사업자 대상 웹팩스 스팸 간편신고 기능 탑재 확대	12월	
	'18년 하반기 휴대전화 및 이메일 스팸 수신량 조사	11월	
	빅데이터 기반 스팸탐지 등 분석모델 마련	12월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자

- (수혜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
- 이해관계자
  - 17개 시·도 교육청, 유아·초등, 청소년, 학부모 등 전 국민
  - 통신사업자 및 포털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 기대효과

- 계층별 맞춤형 인터넷윤리교육, 범국민 인터넷윤리 문화 확산 등을 통해 전 국민의 올바른 인터넷 윤리의식 획기적 제고
- 불법스팸 차단 대응 강화로 도박·불법대출 등의 스팸 유통 방지, 불필요한 정신적 피해 예방 등 이용자의 불편 해소에 기여
- 청소년의 올바른 스마트폰 이용환경 조성, 웹하드 사이트 상 건전하고 적법한 콘텐츠 유통 및 이용환경 구축
- 인터넷상 자유로운 소통문화 확산을 통해 민주적 여론 형성 및 디지털 민주주의 구현에 기여

##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7	'18
안전한 정보이용 환경조성( I -1-정보화①)		
① 안전한 정보이용환경조성(2151)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2151-304)	일반회계 29.63 (126.97)	30.93 (131.09)
② 안전한 정보이용환경조성(3251)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307)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306)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314)	방송통신 59.71 (87.49)	66.62 (99.90)
	발전기금 42.43 9.63 7.65	46.43 11.43 8.76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18 목표치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5	'16				
인터넷윤리교육 만족도(점)	신규	87.1	87.2	17년도 목표치인 86.9점에서 '18년 신규사업인 취약계층(장애청소년, 지역아동센터) 대상 인터넷윤리교육 과정 만족도 예측치를 반영하여 87.2점을 목표로 설정	교육 종료 후 만족도 조사 (100점 만점)	설문지를 이용한 서베이(Survey) 결과
휴대전화·이메일 스팸수신량 (하향지표) (통)	신규	20	'18년도 성과목표는 최근 3년 간 연평균 증감율 및 정책효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20통으로 목표를 설정함	휴대전화·이메일 이용자 각각 1,500명 대상 1인 월 평균 수신량 측정	휴대전화·이메일 스팸 수신량 조 사결과	

### 전략목표 III

방송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 복지를 제고한다

#### 기 본 방 향

#####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방송의 공적책임은 방송서비스의 본질적 가치로 미디어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확보되어야 하며,
  - 다매체·다채널의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는 상업적 시청률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방송의 품격과 공적책임 유지는 더욱 필요
- 방송사 간 시청률 경쟁심화 등에 따라 방송에서의 막말이나 선정적·폭력적 방송프로그램이 여전하므로 방송프로그램이 청소년 등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추진 필요
- 스마트 시대 미디어는 지식습득, 문화향유, 관계망 형성, 소통 등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중요성은 증대되나 세대 간, 계층 간 미디어 격차는 심화되는 양상
  -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방송접근권 확대 필요
- 유료방송시장의 가입자 확보경쟁이 심화로 인한 과열 경쟁으로 불공정 행위 및 시청자 이익 침해 가능성 증대
  - 홈쇼핑PP-납품사업자간, 플랫폼 사업자-콘텐츠 사업자간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시정하여 사업자간 거래의 공정성 증진에 기여 필요
- 온라인·모바일 중심의 매체 이용행태 변화에 따른 방송광고시장 침체, 제작비 급증 등으로 고품질 콘텐츠 제작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방송광고 제도개선을 통한 콘텐츠 제작 재원 확충 필요

※ 매체별 광고매출액 : ('10년) 방송광고 3.3조·온라인 1.5조→('16년) 방송광고 3.2조·온라인 4.1조

- '91년 외주제작 의무 편성제도 도입 이래 외주제작시장은 양적, 질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그 이면에는 불충분한 외주제작비 지급, 저작권 등 수익의 자의적 배분, 과도한 노동시간, 인권 침해 등 불공정 관행이 지속

- 지상파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서면계약 관행 확립, 외주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인권선언문 제정 등 방송콘텐츠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
  - 한류 방송콘텐츠는 관련상품 매출증대, 관광 활성화, 국가 이미지 제고 등 유·무형의 가치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 중국시장의 위축 및 방송콘텐츠 관련 법적 분쟁 증가 등 한류콘텐츠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필요성 증대
  - 많은 중소기업들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인지도와 마케팅 능력 부족으로 인해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방송광고가 인지도 제고에 효과적이나 높은 비용으로 인해 중소기업은 방송광고를 활용하지 못하고 방송광고시장은 침체되고 있어 중소기업 성장과 방송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필요
  - 고정형 TV를 통한 실시간 시청 외, 스마트폰, PC를 통한 시청, VOD 방송프로그램 시청 등으로 다변화됨에 따라,
    - 스마트폰 · PC와 VOD 시청이 증가하는 매체이용행태 변화를 반영한 시청점유율 조사방법을 개선하여 시청점유율 조사 결과의 타당성 및 신뢰도 제고 필요

## ◇ 그간의 성과

- 올바른 방송언어 사용을 위한 청소년 언어순화 특집프로그램 및 공익성 스팟 제작·송출 등을 통한 자율규제 강화 유도
- 장애인방송 의무화로 지상파방송 및 유료방송까지 장애인방송 제공을 확대하고 장애인용 TV 보급 등을 통해 방송취약계층의 방송접근권 제고
- 방송 및 방송광고 시장에서 시청자 이익 저해행위 및 사업자간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실태점검, 조사 및 시정을 통해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
-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준수 제고를 위해 방송사업자 대상 법규 설명회 및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방송광고 법규 준수율 증가

\* 방송광고 법규 준수율 : '15년 74.8% → '16년 79.8% → '17년 81.3%

- 광고총량제 시행(방송법 시행령 개정, '15.9월), 협찬고지 시간·횟수 등 형식규제 완화(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16.3월), 가상광고 허용범위 명확화(방송법 시행령 개정, '16.5월)등 방송광고·협찬고지 규제 개선
-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5개 부처 국장급 협의체 운영 및 합동 실태조사 등을 통해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17.12.)'을 마련하여 방송사-외주사간 공정거래 환경 조성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에 기여

구분	제작지원 기업(개사)			매출액 성장률(%)	방송광고 집행액(억원)
	TV광고	라디오광고	계		
2015년	32	78	110	4.3	82.3
2016년	45	40	85	10.7	128.8
2017년	54	42	96	13.1	138.0

## ◇ 중점 추진내용

- 막말, 선정, 폭력 등 저품격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사후심의와 함께 방송심의사례집 제작·배포, 심의책임자 회의 개최, 자체심의 기구운영 실태점검 등을 통해 방송사의 자율규제 기능강화를 유도
- 방송취약계층을 위한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및 장애인용 TV 보급 시행 및 장애인방송 환경 개선으로 정보격차 해소 및 방송 접근권 확대
- 방송 및 방송광고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사례에 대해 점검 또는 조사를 통해 개선함으로서 시청자의 이익을 제고하고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
- 방송사업자 대상 방송광고 법규에 대한 수시교육 등을 실시하여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 동시에 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사후규제 강화를 통해 방송의 공익성과 시청자의 시청권을 보호
- 방송업계 독립창작자 인권선언문 및 방송사-외주사간 제작비·저작권 등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유관부처 협의체 운영 등 외주제작 시장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

- 한류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 확대와 방송협력 강화를 위해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체결(베트남·태국·캐나다 등)을 추진하고, 공동제작 관련 교류 협력강화 및 국내 방송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국제콘퍼런스 개최
- 매체균형발전 및 시청권 보호 등을 고려하여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여부 검토 등 방송광고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광고 제작비를 지원하고, 방송광고에 대한 전문지식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방송광고 활용을 위해 광고교육 및 원스톱 컨설팅 제공
- 스마트미디어 보급 확대로 매체이용행태가 변화함에 따라 고정형 TV 위주의 시청점유율 제도 개선

#### ◇ 전략목표와 임무간의 상관성

-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대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함으로써 시청자 복지증진 및 방송의 공공성 제고
- 방송광고·외주제작시장 제도개선을 통해 상생의 콘텐츠 제작 환경을 조성하여 미디어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다양한 계층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미디어 복지 증진
-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규제를 통해 방송의 여론다양성을 보장하여 미디어 영향력 독과점 방지 및 미디어 다양성을 구현하여 방송의 공공성 제고

##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성과지표체계 >

(단위 : 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2	2	6	7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III-1. 방송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시청자 복지를 제고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시청각장애인 TV 저소득층 누적 보급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향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향상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장애인방송 이용자 만족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③ 방송시장 공정경쟁환경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개선 건수</li> <li>② 방송광고 법규 준수율</li> </ul>
III-2.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방송산업 기반 구축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방송콘텐츠 경쟁력 기반 확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콘텐츠 제작 활성화 기반 조성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용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③ 통합 시청점유율 조사 기반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통합 시청점유율 조사 신뢰성 개선도</li> </ul>

### 성과목표 III-1

### 방송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시청자 복지를 제고한다.

#### (1) 주요 내용

- 방송내용의 선정성, 편파성, 폭력성 등으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하여 시청자 권리 증진 및 방송 품격 제고 추진
- 시·청각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인용 TV 보급과 방송접근 환경개선을 위한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및 장애인 방송 개선 추진
- 유료방송사가 거짓고지·중요사항 미고지 방식으로 시청자에게 방송상품을 판매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계약을 유도하는 행위에 대한 실태점검 및 시정조치
-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및 위반사업자 제재

####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18 목표치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5	'16	'17				
시청각장애인 TV 저소득층 누적 보급률(%)	35.8	45.8	57.7	68.0	최근 3년간 실적치의 평균증가율이 8.6%p임에도 불구하고 '17년 실적 대비 10.0%이상 상승한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 지자체 업무협력 및 맞춤형 홍보 강화를 통해 저소득층 보급 확대 추진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누적 보급대수 /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수) × 100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통계자료, '18년도 시청각장애인 TV 보급 현황자료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 외부환경

- 지나친 시청률 경쟁에 따른 자극적인 방송·막말 방송 등으로 인해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강화에 대한 시청자의 요구 증대
-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방송프로그램의 객관성·공정성 논란 및 종합편성 등 채널 간 시청률 경쟁 심화에 따른 막말·저품격 방송프로그램의 확대 가능성 존재

- 장애인용 방송수신기 보급은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저소득층 누적 보급률은 57%대에 머물고 있으며, 장애인방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 방송광고 시장 침체에 따른 매체 간 경쟁 심화로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법규 위반 가능성 증대

## □ 갈등요인

- 방송사업자는 방송내용의 공정성·공공성 유지와 공적 책임 준수의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한 방송내용 심의의 필요성이 요구되나, 과도한 심의제재는 방송프로그램 수준 제고에 역효과를 유발할 우려
- 장애인방송의 확대 및 질적 수준 제고, 방송접근 개선을 위한 신규서비스 도입에 따른 방송사 추가재원 확보 어려움 및 지원 요구
- 장애인용 방송수신기를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위주로 보급하고 있으나, 저소득층 수요자 발굴 등 보급 절차가 어려움
-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반복 위반에 대한 사업자 과태료 부담 가중 및 모니터링 기준이 다소 불분명한 사항에 대한 사업자 불만 발생 우려

## □ 갈등관리계획

- 저품격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사후심의와 함께 자체 심의기구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방송사의 자율규제 기능 강화 유도
- 저소득 시청각장애인에 방송수신기 보급 확대를 위해 지자체 업무협력 강화, 맞춤형 홍보 및 신청 편의 제공 등 추진
- 장애인방송 의무사업자의 제작여건 등을 고려한 제작비 지원 및 장애인방송 품질 향상 방안 추진
- 방송사업자 채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시교육 강화 및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 추진

##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①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향상(III-1-①)

#### □ 추진배경 (목적)

- 방송사의 오보사례나 방송 출연자에 의한 막말 방송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국회·언론 등에서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 오보 등에 따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제고 추진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건전한 방송문화 조성과 방송 제작인의 사기 진작 및 창작 의욕 고취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과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시상
- 방송사의 오보·막말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엄정 심의
- 방송언어 순화를 위해 '방송언어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 및 방송 제작자·예비 방송인들을 대상으로 방송언어 교육 중점 실시
- 방송사와 협력하여 방송언어 순화 캠페인 전개 및 청소년의 올바른 언어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년 언어 순화 자막고지 실시
- 막말, 선정, 폭력 등 저품격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사후심의와 함께 방송심의사례집 제작·배포, 심의책임자 회의 개최, 자체 심의기구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방송사의 자율규제 기능강화 유도

##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방송심의사례집 발간·배포	3월	
	방송언어 조사자료집 발간·배포	3월	
2/4분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 개최	4월	
	방송언어순화 자막고지 등 캠페인 실시(상반기)	5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바른 방송언어 특별상' 선정(상반기)	6월	
3/4분기	전국 권역별 방송언어 미디어 교육 실시	9월	
4/4분기	방송언어순화 자막고지 등 캠페인 실시(하반기)	10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바른 방송언어 특별상' 선정(하반기)	12월	
	방송언어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	12월	
연중	사후심의 및 제재처분	연중	
	방송언어특별위원회 운영	연중	
	방송심의 책임자 회의 개최	연중	
	방송사 자체 심의기구 운영실태 점검	연중	
	방송프로그램 시청등급제 이행 여부 모니터링(분기별)	연중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자

#### ○ 수혜자

- (방송사업자) 품격 있고 창의적인 방송프로그램 제작환경 조성
- (시청자) 막말·선정성 등이 배제된 고품격 방송프로그램을 시청

#### ○ 이해관계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내용 규제 기관
- (방송사업자) 방송제작 당사자 및 내용규제 대상 기관
-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청소년(시청자) 보호 등 관련 기관

## □ 기대효과

- 방송언어 문화 개선, 방송사 자율규제 유도 및 사후심의·제재 등을 통해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을 향상하고 청소년을 비롯한 시청자의 미디어 복지 구현

##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7	'18
방송기반구축(Ⅱ-2-일반재정④)			
① 미디어 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31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310)</li> </ul> ② 방송콘텐츠 경쟁력 확보(31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분야 시상(301)</li> </ul>	방송통신 발전기금	302.3 2.9	316.8 3.3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5	'16	'17	'18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향상도(점)	61.8 62.6 63.3	63.4	최근 3년간 실적의 평균점이 62.56점임을 감안하여 '18년에 목표점수를 63.4점으로 설정	[ $(\text{방송심의활동 효과} + \text{프로그램 품질 저하 방지 기여도} + \text{규정 위반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수준의 적절성} + \text{방송 관련 민원 처리 과정 및 결과 만족도}) / 7] \times 100$ * 3개 항목 : ① 프로그램 품질 저하 방지 기여도 ② 규정 위반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수준의 적절성 ③ 방송 관련 민원 처리 과정 및 결과 만족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청자, 방송업계, 학계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 ②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확대(Ⅲ-1-②)

### □ 추진배경 (목적)

- 미디어 융합, 신규 서비스의 등장 등 방송환경의 변화에 맞춘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방송접근성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 필요
  - 시·청각장애인 등이 방송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송접근 환경 개선을 통해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이념 구현
-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기금의용도),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 편성 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시·청각장애인의 TV 시청을 돋기 위한 맞춤형 장애인용 TV 보급을 통해 장애인의 방송접근성 향상
  - 광역자치단체와 업무협약 등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소외가 더 심한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위주로 TV 보급을 확대
-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작비 지원, 제공실적 평가, 의무 사업자 지정·공표 등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제고
  - 장애인방송 모니터링 강화,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 운영, 만족도 조사 등 장애인방송 제도 정착 및 품질 향상 추진
- 청각장애인과 일반인 모두의 TV시청 편의를 위해 수어영상의 크기, 위치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스마트 수어방송 시범방송 실시
- 방송서비스(채널,프로그램/VOD정보 등) 및 수신기 메뉴의 내용을 음성으로 제공하는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서비스 시범서비스 실시

##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 협약 체결	2월	
	시청각장애인용 TV 제조 업체 입찰공고 및 선정	2~4월	
	스마트 수어방송 상용화 추진계획(안) 마련	2월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대상 방송사 선정	3월	
	장애인방송 품질 향상을 위한 방송사업자 교육	2~3월	
2/4분기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사업 홍보 및 신청자 접수	5~6월	
	'17년도 장애인방송 제공 실적 평가	3~7월	
	신규 스마트 수어방송 시범방송 및 음성안내 시범서비스 사업자 선정	4~5월	
3/4분기	장애인방송 캠페인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	7~11월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자 선정 및 보급	7~12월	
	스마트 수어방송서비스 시범방송 및 음성안내 시범서비스 실시	9~12월	
4/4분기	'19년도 장애인방송 고시의무사업자 선정	10월	
	시청각장애인용 TV 및 장애인방송 만족도 조사	10~12월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자

#### ○ 수혜자

- (시·청각 장애인) 신체적 여건으로 인해 방송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방송에 대한 접근과 정보이용을 보장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

#### ○ 이해관계자

- (방송사업자) 방송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중 장애인 방송(폐쇄자막·한국수어통역·화면해설) 의무편성 시행

- (장애인 유관단체) 시·청각장애인 입장을 대변하고, 국내 장애인방송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등 수용자 중심의 정책 방향 마련에 기여

## □ 기대효과

- 장애인용 방송수신기(TV) 보급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방송서비스 이용편익을 증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미디어복지 강화
- 장애인방송 의무제도의 안정적 운영,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및 품질향상 등을 통해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대 및 권익 향상
-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서 장애인의 방송접근 환경 개선을 통해 방송시청 편의 제고

##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7	'18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Ⅱ-2-일반재정②)			
① 미디어 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3132) ■ 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308)	방송통신 발전기금	95.26	110.16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5	'16	'17	'18	
장애인방송 이용자 만족도(점)	74.7 75.9 78.1	7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근 3년간('15 ~ '17년) 실적의 평균증가율을 감안하여 적용</li> <li>TV시청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본 지표는 목표치는 매우 적극적</li> </ul> <p>* 지상파 및 종편 평균 시청만족도 72점 ('16년 KISDI KI시청자평가지수 조사)</p>	(자막방송만족도 x 0.87) + (수화방송 만족도 x 0.04) + (화면해설방송만족도 x 0.09)	외부 전문기관의 장애인 방송 시청자 대상 권역별, 장애 등급별 조사결과

### ③ 방송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III-1-③)

#### □ 추진배경

- 종합유선방송의 점유율 하락과 IPTV 점유율 상승 등에 따라 유료방송시장의 가입자 확보경쟁이 심화되면서 가입자 유치 등 과열경쟁으로 불공정행위 및 시청자 이익침해 가능성 증대
- 방송 및 방송광고시장에서 사업자간 불공정행위 및 시청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를 통해 건전하고 공정한 환경조성 필요
  - 홈쇼핑PP-납품사업자간, 플랫폼 사업자-콘텐츠 사업자간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시정하여 사업자간 거래의 공정성 증진에 기여
  - 상품에 대한 거짓고지, 중요사항 미고지 등 시청자 권리보호를 위한 불법 영업행위 근절
- 플랫폼 사업자인 케이블·IPTV 등 유료방송사와 지상파방송사(재송신료), PP(채널계약, 프로그램 사용료) 및 홈쇼핑PP(송출수수료) 간 분쟁발생 시 적극 대응
- 매체 간 경쟁심화에 따른 방송광고 관련법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사업자 계도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규 미숙지 등으로 인한 법규 위반사례가 지속 발생
  - 시청자의 시청권 침해방지 및 보호를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 필요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유료방송사가 거짓고지·중요사항 미고지 방식으로 시청자에게 방송상품을 판매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계약을 유도하는 행위에 대한 실태점검 및 시정조치
-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및 위반사업자 제재
  - 매월 전월 방송분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실시 및 시청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항\*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실시(연 2회 이상)
    - \* 시청자 민원이 많은 사항, 법규 위반 빈도가 높아 집중관리가 필요한 방송사업자 및 광고가 집중되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 등
  - 규제 사각지대인 SO 지역채널에 대한 법규 준수여부 현장 점검 실시
- 유료방송사에 접수되는 민원자료를 취합·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빈발 민원유형을 선별하여 조사
- 방송사업자 간 불공정 거래행위(프로그램 거래, 채널 제공 등) 실태 점검 및 시정조치·개선
- 홈쇼핑방송사업자의 부당한 편성 변경·취소, 납품업자와의 수익 배분 관련 편성불이익 등 방송법 금지행위 조사 및 시정조치
-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협찬고지 관련 자발적인 법규준수 유도 및 규제 예측성·신뢰성 제고
  - 방송사업자 대상 채널별 맞춤형 수시교육 실시 및 법규위반 사례 공개(미디어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법규준수 장려 및 사업자의 규제 예측성 제고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모니터링 전문 검증단' 운영을 강화하여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규제 신뢰성 제고

##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방송광고 · 협찬고지 집중 모니터링(1차)	2월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회계자료 제출 관련 설명회	3월	
	방송분야 불공정행위 전문가 자문반 구성·운영	2~12월	
2/4분기	방송광고 · 협찬고지 주요 위반사례 홈페이지 공개	4월	
	PP사업자의 프로그램 송출망 사용현황 파악	4~6월	
	TV홈쇼핑사 금지행위 실태점검	4~6월	
	유료방송시장 불공정행위 관련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5월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6월	
	방송광고 · 협찬고지 집중 모니터링(2차)	6월	
	티브로드의 방송채널 차단행위 관련 사실조사	3~6월	
3/4분기	프로그램사용료 지급실태 현황 파악	7~10월	
	방송광고판매대행법 개정안 국회 제출	7월	
	홈쇼핑시장 불공정행위 관련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9~11월	
	외주제작시장 불공정행위 관련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9월	
	SO 지역채널 방송광고 · 협찬고지 법규 준수 현장점검	9월	
4/4분기	방송광고시장 불공정행위 관련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10월	
	방송광고 · 협찬고지 주요 위반사례 홈페이지 공개	10월	
	알기쉬운 방송서비스 피해예방책 발간	11월	
	방송광고 · 협찬고지 집중 모니터링(3차)	11월	
	TV홈쇼핑사 금지행위 실태점검	10~12월	
연중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개최(4회)	연중	
	방송사업자 대상 공정경쟁 정책 관련 간담회 개최	연중	
	금지행위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연중	
	시청자 이익 저해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연중	
	방송광고 · 협찬고지 정기 모니터링 실시 및 월별 분석보고서 작성	1~12월	
	방송사업자 대상 방송광고 · 협찬고지 법규 교육	수시	
	'방송광고 · 협찬고지 모니터링 전문 검증단' 운영	수시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자

### ○ 수혜자

- (방송통신 이용자)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편리한 서비스 이용
- (방송사업자 등) 불공정거래 근절, 분쟁조정 등 사업자간 상생 환경 조성을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정부, 학계 및 산업계 등) 재산상황 자료를 통해 정책수립, 사업 계획 및 연구 등에 활용
- (시청자)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준수를 통해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

### ○ 이해관계자

- (방송사업자, IPTV사업자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자 등) 방송법, IPTV법, 미디어렙법상 금지행위 규정을 준수 의무 및 분쟁조정 및 재산상황 제출 대상
- (방송사업자) 방송광고 형식규제로 인해 방송사업자의 제작 자율성을 제한하고 방송광고 시장을 축소시킬 우려

## □ 기대효과

- 방송 및 방송광고시장의 불공정행위 시정,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방송 및 방송광고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시청자 권리보호
- 거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지위 남용 등 불공정행위 차단을 통해 중소·영세 사업자의 피해 예방 및 권리보호
- 불공정행위 시정 및 제도개선을 통해 공정한 방송시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내 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

- 재산상황 자료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공표하여 방송 평가,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등 방송정책 관련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방송시장의 정확한 규모 및 거래현황 파악
-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 제재를 통해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 및 방송사업자의 사전적 예방효과 기대

##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7	'18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조성(Ⅱ-2-일반재정②)		
① 미디어 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3132)	방송통신 발전기금	23.4
■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기반구축(311)		15.6
■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조사지원(312)		7.8
		22.2
		15.6
		6.6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5	'16	'17			
방송시장(광고) 불공정행위 개선건수	신규	4		○ 그간 지속적인 방송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로 인한 방송사업자의 법령 준수노력 및 불공정행위 개선이 필요한 분야 등을 고려하여 불공정행위 개선건수를 4건으로 목표치를 설정	실태점검 이후 제도개선 및 업무절차 개선 등 건수(4건)	공문, 사실조사 보고서 등
방송광고 법규 준수율(%)	신규	81.3	81.8	○ 최근 3년간의 실적치는 78.6%이고, 전년도 실적치는 81.3%이나,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을 위해 전년도 실적치 보다 0.5%p 상향하여 목표치 설정  - '15년 준수율 74.8% - '16년 준수율 79.8% - '17년 준수율 81.3%	방송사업자 305개 채널수 모니터링 결과  {[전체 채널수 - (1회 위반 방송채널수 x 1.0) + (2회 위반 방송채널수 x 1.5) + (3회 이상 9회 이하 위반 방송채널수 x 2.0) + (10회 이상 위반 방송채널수 x 3.0)] / 전체 채널수} x 100	방통위 행정처분 자료,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등

### 성과목표 III-2

###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 (1) 주요 내용

-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체결, 해외 방송콘텐츠 규제·시장 현황조사, 공동제작 국제콘퍼런스 개최 등 방송콘텐츠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해 한류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 '17.7월 독립PD의 사망으로 외주시장 불공정관행과 열악한 제작여건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표준계약서 정착 등을 통한 공정거래 환경 마련과 실효성 있는 정책시행 추진
  -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및 고품질 방송콘텐츠 제작재원 확충을 위한 가상·간접광고 등 방송광고 제도개선 추진
  - 혁신형 중소기업\*에게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성장과 방송광고 시장의 활성화 유도
- \* 벤처 · 이노비즈 · 메인비즈기업, 우수 녹색 경영 · 녹색인증 중소기업, 글로벌IP(지식 재산) 스타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사회적기업, 두뇌역량 우수전문기업 등을 통칭
-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조사·산정하여 방송의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한 규제 및 정책 자료로 활용
  - PC 및 스마트폰의 시청기록 조사방안 개발 및 시범조사를 실시하여 변화하는 방송환경에 맞는 통합시청점유율 도입기반 마련

####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16 '17 '18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목표치	현행				
방송산업 기반 구축율 (%)	신규	85.6	방송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한 관리과제별 성과지표로 구성	(콘텐츠 제작 활성화 기반 조성을 × 0.5) +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용 달성을 × 0.2) + (통합 시청점유율조사 신뢰성 개선도 × 0.3)		외부기관자료 및 사업결과 보고서

###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 외부환경

- 외주제작시장의 열악한 근로 환경과 부족한 제작비 조달, 불리한 수익배분 등 불공정관행 이슈가 부각되면서 공정한 외주제작 환경조성 필요성 증대
- 해외 사업자의 국내 방송콘텐츠 표절 등 사례가 늘어나면서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한류 방송콘텐츠 수출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시장이 한한령 등으로 위축
- 생활패턴의 변화로 매체 이용이 모바일·인터넷 중심으로 이뤄짐에 따라 방송광고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 많은 중소기업들이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낮은 인지도와 마케팅 능력의 부족으로 지속성장에 곤란을 겪고 있으며,
  - 방송광고는 기업의 인지도 제고에 효과적이나 높은 비용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활용 곤란
-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추세 가속, IPTV방송사업자의 성장 등 방송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 미디어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따라 매체 이용행태 급변

#### □ 갈등요인

- 방송사-외주제작사간 상호간 입장차이가 크므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실효성 확보 방안 필요
- 방송광고 제도개선 시 인쇄 등 타매체 광고가 축소될 것이라는 관련 사업자 및 시청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시민단체의 반발 우려

- 벤처 등 인증<sup>\*</sup>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므로 지원 대상이 일부로 제한되며, 중소기업이 방송광고 제작 후 광고 송출비에 대한 부담으로 방송광고 활용에 한계
    - \* 산업부·중기청 내부 기준에 따라 관련 협회 등에서 중소기업으로 인증
  - 일간신문의 방송사업 진출에 따른 여론 독과점 폐해를 예방하고 방송의 여론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시청점유율 제한제도를 도입
- ※ 미디어다양성위원회(방송법 제35조의4) 및 시청점유율 제한(제69조의2)

## □ 갈등관리계획

-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5개 부처 공동, '17.12.19 발표)」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방송 제작인력 인권선언문 제정 및 외주제작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표준계약서 정착 등 후속조치 이행
- 광고제도 개선이 미디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방송사, 신문 등 타매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학계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진행
- 주요 FTA 체결국과 방송 공동제작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해외정부·방송사업자들을 초청하는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하여 소통의장을 마련
  - 아울러 각국의 방송시장 규제·사업자현황 등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 및 사업자들에게 방송포맷 포절 대응매뉴얼을 공유하는 등 현장의 소리를 들으며 실질적인 방송콘텐츠 해외진출 지원방안 마련 추진
- 우수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부담으로 방송광고를 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취지를 적극 홍보하고,
  - 방송광고 관련 교육을 통해 여러 미디어렙의 송출비 할인 제도 등을 소개하여 제작한 방송광고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유도

- 고정형 TV, PC, 스마트폰의 실시간 및 비실시간(VOD) 시청시간을 측정하여 방송매체 이용행태의 변화를 시청점유율 조사에 반영
- '시청점유율조사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VOD, PC · 스마트폰 시청시간 조사에 따른 통합시청점유율 조사방법 및 산정방안 등에 대한 사업자 의견수렴 및 이해관계 조정

#### (4) 기타

##### □ 광고매체시장 환경 변화

- 국내 총광고비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모바일·인터넷으로의 광고시장 이동 등으로 방송광고시장이 침체되고 특히 지상파 광고시장 급감

< 매체광고시장 현황 >

□ 총광고시장	2010년 8.6조원 → 2017년 11.4조원 (+32.6%)
○ 방송광고	2010년 3.3조원 → 2017년 3.5조원 (+6.1%)
- 지상파	2010년 2.2조원 → 2017년 1.4조원 (-36.4%) 2015년 1.9조원 → 2016년 1.6조원(-15.1%) → 2017년 1.4조원(-13.1%)
- 유료방송	2010년 1.1조원 → 2017년 2.1조원 (+90.9%)
○ 온라인·모바일	2010년 1.5조원 → 2017년 4.4조원 (+193.3%)

##### □ 방송광고 규제 현황(방송법 제73조, 시행령 제59조, 제59조의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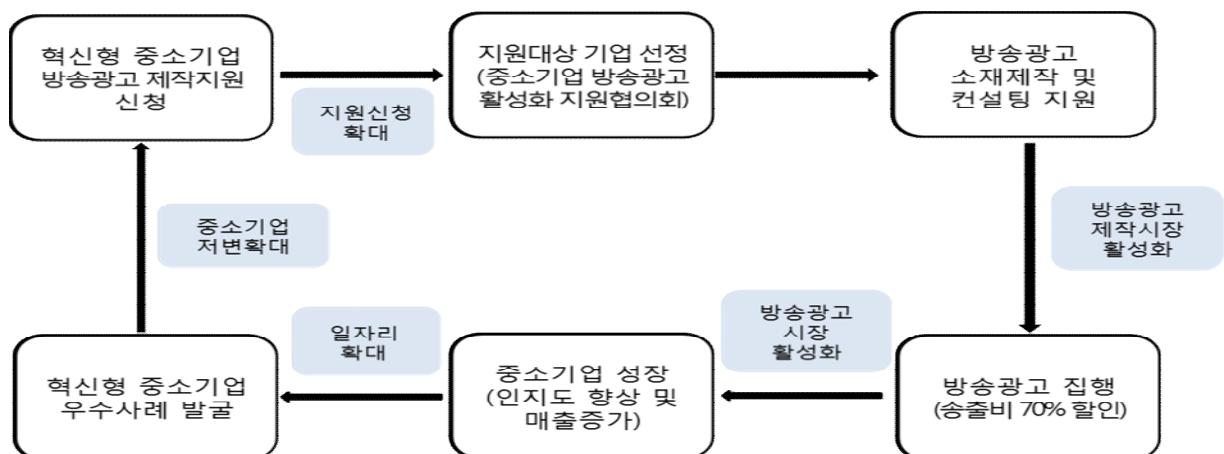
- (개요) 7가지 광고 유형\*으로 분류되고 광고총량제, 중간광고, 가상·간접광고 규제 등이 비대칭적으로 규정
  - \* 프로그램 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중간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로 분류
- (광고총량제)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규제를 적용하되 총량 내에서는 자유로운 광고편성이 가능하도록 규정

※ 프로그램·토막·자막·시보·중간광고 시간은 편성시간별 총량규제에 포함

- (중간광고) 지상파방송은 원칙적으로 금지, 유료방송은 중간광고를 허용하되 프로그램 길이에 따라 횟수에 차이

유형	정의	지상파	유료방송														
광고총량제	광고유형에 관계없이 최대 광고송출시간을 정하는 제도	편성시간당 평균 15/100, 최대 18/100	편성시간당 평균 17/100, 최대 20/100														
방송프로그램광고	방송프로그램의 전후에 편성되는 광고	TV의 경우 편성시간당 최대 15/100	-														
토막광고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에 편성되는 광고	-	-														
자막광고	방송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광고	화면 1/4 이내	화면 1/4 이내														
시보광고	현재시간 고지 시 함께 방송되는 광고	-	-														
중간광고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이 시작한 후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에 그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편성되는 광고 ('73년 오일쇼크 이후 과소비 방지 목적으로 금지)	금지 (단, 운동경기, 문화·예술행사 프로그램은 허용)	프로그램 길이에 따라 허용횟수 다름, 매회 광고시간 1분 이내 <table border="1"><tr><th>프로그램 길이</th><th>허용횟수</th></tr><tr><td>45-60분</td><td>1회 이내</td></tr><tr><td>60-90분</td><td>2회 이내</td></tr><tr><td>90-120분</td><td>3회 이내</td></tr><tr><td>120-150분</td><td>4회 이내</td></tr><tr><td>150-180분</td><td>5회 이내</td></tr><tr><td>180분-</td><td>6회 이내</td></tr></table> ※ 중간광고 시작 전 자막·음성으로 고지	프로그램 길이	허용횟수	45-60분	1회 이내	60-90분	2회 이내	90-120분	3회 이내	120-150분	4회 이내	150-180분	5회 이내	180분-	6회 이내
프로그램 길이	허용횟수																
45-60분	1회 이내																
60-90분	2회 이내																
90-120분	3회 이내																
120-150분	4회 이내																
150-180분	5회 이내																
180분-	6회 이내																
가상광고	방송프로그램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이미지를 삽입하는 형태의 광고 (오락·스포츠중계·스포츠보도 분야에 허용)	해당 프로그램시간의 5/100, 화면 1/4이내  ※프로그램 전에 가상광고 포함여부를 자막 표기하되 크기는 화면 1/16 이상	해당 프로그램시간의 7/100, 화면 1/4이내  ※프로그램 전에 가상광고 포함여부를 자막 표기하되 크기는 화면 1/16 이상														
간접광고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그 상품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 (오락과 교양분야에 허용)	해당 프로그램시간의 5/100, 화면 1/4이내  ※프로그램 전에 간접광고 포함여부를 자막 표기	해당 프로그램시간의 7/100, 화면 1/4이내  ※프로그램 전에 간접광고 포함여부를 자막 표기														

### <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선순환 구조도 >



##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① 방송콘텐츠 경쟁력 기반 확충(III-2-①)

#### □ 추진배경

- '91년 외주제작 의무 편성제도 도입 이래 외주제작시장은 양적, 질적으로 크게 성장 하였으나,
- 외주제작시장의 성장 이면에는 불충분한 외주제작비 지급, 저작권 등 수익의 자의적 배분, 과도한 노동시간, 인권 침해 등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어
- 지상파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서면계약 관행 확립, 외주제작 가이드 라인 마련, 인권선언문 제정 등 방송콘텐츠 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
- 온라인·모바일 중심의 매체 이용행태 변화에 따른 매체광고시장 역전, 제작비 급증 등으로 방송사업자의 제작 여건 악화
- 고품질 콘텐츠 지속 제작 재원확충을 위해 방송광고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

#### < 매체광고 시장현황 >

□ 총광고시장	2010년 8.6조원 → 2017년 11.4조원 (+32.6%)
○ 방송광고	2010년 3.3조원 → 2017년 3.5조원 (+6.1%)
- 지상파	2010년 2.2조원 → 2017년 1.4조원 (-36.4%) 2015년 1.9조원 → 2016년 1.6조원(-15.1%) → 2017년 1.4조원(-13.1%)
- 유료방송	2010년 1.1조원 → 2017년 2.1조원 (+90.9%)
○ 온라인·모바일	2010년 1.5조원 → 2017년 4.4조원 (+193.3%)

- 한류 방송콘텐츠는 관련상품 매출증대, 관광 활성화, 국가 이미지 제고 등 유·무형의 가치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 중국시장의 위축 및 방송콘텐츠 관련 법적분쟁 증가 등 한류콘텐츠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필요성 증대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방송업계 독립창작자 인권선언문 및 방송사·외주사간 제작비·저작권 등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유관부처 협의체 운영 등 외주제작 시장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
- 순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기준(편성고시 제9조의2)<sup>\*</sup>에 따라 외주제작 인정자문위원회를 개최·운영하여 방송사별 외주편성 규제 준수여부 등 점검

###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기준>

- ◆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방송프로그램으로서 아래 두가지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방송프로그램
  - (기준 요건) 외주제작사가 ①작가계약 체결, ②주요 출연자 계약 체결, ③주요 스태프 계약 체결, ④제작재원의 30%이상 조달, ⑤제작비 집행 및 관리 전반을 담당, 중 3가지 이상 만족
  - (선택적 수익배분 요건) ①방송권 수익의 30%이상, ②전송권 수익의 30%이상, ③복제·배포권 수익의 30%이상, ④공연권 수익의 30%이상, ⑤2차적 저작물 작성권 수익의 30%이상 중 3가지 이상을 외주제작사에게 배분

- 계약체결 현황, 노동시간 등 외주제작 근로환경 전반에 대한 범부처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불공정관행 등 방송사·외주제작사간 불공정 거래현황 파악 등을 추진
- 매체균형발전 및 시청권 보호 등을 고려하여 방송광고 제도개선 추진
  - 타매체 등 미디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종편PP 등 유료방송 사업자와의 규제형평성 고려
- 한류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 확대와 방송협력 강화를 위해 FTA로 근거가 마련된 국가(베트남·태국·캐나다 등)와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체결 추진
  - 공동제작협정문 초안 및 양국의 콘텐츠 환경변화와 협정 체결의 유용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 및 협상대상국가의 국장급 공무원을 반장으로 하는 정부간 공동연구반 구성·운영
  - 정부간 공동연구반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동제작협정에 포함할 내용 및 협상 전략 마련을 위해 방송사·제작사 협회·관련 전문가·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국내연구반 운영

- 국내외 방송관계자 간 소통의 장 마련과 공동제작 관련 교류 협력 강화 및 국내 방송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공동제작 국제콘퍼런스 개최
- 한류콘텐츠의 성공가능성이 높은 해외국가의 방송 규제·방송 사업자·공동제작 현황 등을 조사
- 한류 방송콘텐츠 해외진출 계약 시 제작자의 권리와 이익을 담보할 수 있는 계약 및 수익분배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여 국내 사업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해외유통 가이드라인 마련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국내연구반 회의(1차)	2월	
	한·캐 공동제작협정 관련 관계부처 협의	2월	
	국내연구반 회의(2차)	2월	
	외주제작시장 종합대책 점검을 위한 유관부처 협의체 운영	3월	
	국내연구반 회의(3차)	3월	
	국내연구반 회의(4차)	3월	
2/4분기	국내연구반 회의(5차)	4월	
	한·베 공동연구반 5차 회의(예정)	4월	
	방송광고 제도 관련 정책연구 실시	5월	
	외주제작 현황 실태점검 등 관련 정책연구 추진	5월~	
	외주제작 인정자문위원회 운영	5월~	
	방송콘텐츠 해외진출 계약 및 수익분배 관련 정책연구 실시	5월	
	5개국 방송시장 및 규제현황 조사 실시	5월	
	공동제작 국제콘퍼런스 개최	6월	
	외주제작시장 종합대책 점검을 위한 유관부처 협의체 운영	6월	
	민간 자율 '방송업계 독립창작자 인권선언문' 제정	6월~	
3/4분기	외주제작시장 제도 개선에 대한 업계 및 전문가 만족도 조사	6월~	
	국내연구반 회의(6차)	7월	
	콘텐츠 제작산업 발전방안 연구반 운영	7월~	
	5개국 현지조사 설문기관 업체 선정	8월	
	한·태 공동연구반 2차 회의(예정)	9월	
	외주제작시장 종합대책 점검을 위한 유관부처 협의체 운영	9월	
4/4분기	방송광고 제도개선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9월	
	한·베 공동제작협정 체결(예정)	10월	
	외주제작시장 제도 개선에 대한 업계 및 전문가 만족도 조사	10월~	
	방송사-외주사간 저작권·제작비 등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11월~	
	5개국 현지 설문조사 실시	11월	
	해외유통 가이드라인 마련	12월	
	한·캐 공동연구반 1차 회의(예정)	12월	
	방송광고 관련 제도개선	12월	
	외주제작시장 종합대책 점검을 위한 유관부처 협의체 운영	12월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자

### ○ 수혜자

- (외주제작사) 인권선언문 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 불공정관행 개선 등을 통해 방송콘텐츠 제작환경 개선 및 해외진출 확대
- (방송사 및 광고주) 방송광고 제도개선을 통해 광고 효율성을 확보하여 광고효과를 확대할 수 있으며, 콘텐츠 제작재원 확충에 기여
- (방송사 및 제작사) 공동제작협정 체결 시 한류콘텐츠 진출 확대

### ○ 이해관계자

- (외주제작사, 방송사) 방송시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표준계약서 사용, 저작권 및 수익배분 등 계약 당사자간 지속적인 공정성 개선노력이 필요
- (유료방송 등) 방송광고 제도개선 시 매체균형발전을 위해 지상파-유료방송 간 비대칭규제 유지 필요
- (시민단체) 방송광고 제도개선에 따른 시청권 침해가 우려됨에 따라 엄중한 사후규제 병행 추진 필요

## □ 기대효과

- 공정한 외주제작환경 조성과 외주제작인력의 근로여건 개선으로 방송콘텐츠 질 제고
- 방송광고 제도개선을 통해 콘텐츠 제작 재원을 확충하고, 고 품질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시청자 후생을 증진
- 공동제작협정 체결 시 공동제작 프로그램의 국내물 인정을 통한 수출증대, 제작기술과 노하우 공유 및 문화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증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한류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 다변화를 통해 중국 등 해외시장 변동에 따른 리스크 축소 및 지속적인 방송한류 견인
- 해외유통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국내 방송콘텐츠 사업자들의 해외진출 계약 시 발생 가능한 피해 예방 및 대응능력 제고

##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7	'18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조성(Ⅱ-2-일반재정②)			
① 방송통신운영지원(3135)	방송통신 발전기금	28.35	31.35
■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302)		8.35	12.35
- 방송공동제작협력강화		3	5.1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콘텐츠 제작 활성화 기반 조성율(%)	신규	77	방송사-외주제작사간 표준계약서 도입 여부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도입률 80%를 만점으로 환산  - '17년 외주제작사 표준계약서 도입률이 50% 미만이었지만 적극적인 목표치를 설정  외주제작 제도개선 및 방송공동 제작협력 정책에 대한 업계 및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만족도 측정	(표준계약서 도입률* × 0.7) + (만족도** × 0.3)  * 도입률 : 실태점검 대상 방송사업자 및 외주사업자의 표준 계약서 도입률 (80% 이상 시 100점 기준) ** 만족도는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 환산	방송시장 공정 거래 이행실태 점검결과 (하반기 1회)  * 도입률 : 실태점검 대상 방송사업자 및 외주사업자의 표준 계약서 도입률 (80% 이상 시 100점 기준) ** 만족도는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 환산  이해관계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 (서면) 결과 (외주 2회) (공동 제작1회)

## ②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III-2-②)

### □ 추진배경

- 많은 중소기업들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인지도와 마케팅 능력 부족으로 인해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
  - 방송광고가 인지도 제고에 효과적이나 높은 비용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활용하지 못하고, 대기업은 방송광고 외에 모바일·인터넷 광고를 확대함에 따라 방송광고 시장은 점차 축소
  -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고 침체된 방송광고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필요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 지원
  -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마케팅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중 제작 지원을 신청한 기업을 심사하여 TV 51개사, 라디오 40개사 등 총 91개사에 대해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컨설팅 제공
  - 방송광고에 대한 업무 경험과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방송 광고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방송광고 교육 및 맞춤형 원스톱 컨설팅 제공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연간 기본계획 수립	2월	
	지원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	3월	
	선정기업 방송광고 제작 및 컨설팅 제공	3월~	
2/4분기	추가 지원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	6월	
	추가 선정기업 방송광고 제작 및 컨설팅 제공	6월~	
4/4분기	효과평가 계획 수립	12월	'19.2월 실시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자

### ○ 수혜자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기업 및 제품의 인지도 제고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기대
- (광고대행사 및 제작사)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에 따라 광고 제작에 참여하는 대행사 및 제작사의 시장 확대 예상
- (방송사) 중소기업이 제작한 광고를 방영함으로써 안정적 재원 확보로 양질의 콘텐츠 제작 기반 조성

### ○ 이해관계자

- (중소기업) 지원 대상을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제한하여 벤처 등 인증을 받지 못한 일반 중소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기대효과

- 혁신형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지도 제고와 마케팅 능력 강화로 중소기업의 성장에 기여
- 혁신형 중소기업이 새로운 광고주로서 방송광고시장에 진입하게 됨으로써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유도

##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7	'18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I -2-일반재정④)		
①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3134)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315)	방송통신 발전기금 86.02 30	76.58 28.5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5	'16	'17	'18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용도(점)	3.77	3.79	3.98	3.84 '15년, '16년, '17년 3개년 실적의 평균치에 해당하는 목표를 설정	[ (기업인지도 상승(5점 만점) x0.5) + [ 매출증가 기여도(5점 만점) x0.5 ] ]

### ③ 통합 시청점유율 조사 기반구축(Ⅲ-2-③)

#### □ 추진배경

- 방송법 제35조의4(미디어다양성위원회), 제69조의2(시청점유율 제한)에 의거 매년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조사·산정·공표하고,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를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시 심사에 반영  
※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30%를 초과 시 방송사업 소유 제한, 방송 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의 일부 양도 등 제재조치를 명령
- 고정형 TV를 통한 실시간 시청 외, 스마트폰, PC를 통한 시청, VOD(비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시청 등으로 다변화됨에 따라,
  - 스마트폰·PC와 VOD(비실시간) 시청이 증가하는 매체이용행태 변화를 반영하여 시청점유율 조사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시청점유율 조사결과의 타당성 및 신뢰도 제고
- 저연령(20~30대)층의 고정형TV(실시간) 시청시간이 하락하는 반면, 스마트폰·PC와 VOD(비실시간) 시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저연령(20~30대)층의 시청시간 조사 필요
  - 현행 시청기록 조사 기술의 한계로 인해 스마트폰·PC와 VOD(비실시간)의 시청시간 측정결과에 대한 정책 자료 활용 한계
  - 조사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조사지역, 조사인원을 확충하고, 조사기간도 늘려 시청시간 조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 시청점유율 기초조사 시 저연령(20~30대)층, 1인 가구 패널 영입률 확대를 통해 시청점유율 조사의 표본 대표성 확보 필요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시청점유율 기초조사) 국내 전체가구 및 개인의 시청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20,000가구를 대상으로 TV보유·수신환경, 방송콘텐츠 이용현황 등 가구방문 면접 조사(매년 6월~10월)
  - 기존 유선전화RDD(무작위 전화 걸기, Random Digit Dialing) 조사 방식을 '15년부터 가구방문 면접 조사 방식으로 변경

- 유·무선전화RDD는 집전화 없는 가구의 증가로 인해 모집단 포함률이 낮으며, 1~2인 가구와 젊은 층 가구의 접촉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음
- 가구방문 면접 조사 방식은 주소를 기반으로 응답자를 추출하므로 모집단 포함률이 제고되며, 1~2인 가구와 저연령 가구도 접촉이 늘어날 수 있음

- (시청점유율 조사) '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4,000가구의 고정형TV를 대상으로 실시간 방송채널(지상파, IPTV, 케이블, 종편·보도PP 등 550여개) 시청시간 측정
- ('17년도 시청점유율 산정) '17년도 방송채널 시청점유율 조사 결과, 방송사업자 소유구조 현황 분석(특수관계자, 주식 또는 지분 관계, 일간신문 구독률 환산) 등을 통해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시 심사에 반영 및 방송사업 소유 제한, 방송 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의 일부 양도 등 제재조치를 명령

< '16년 시청점유율 조사 결과 >

방송사	지상파			종편				기타		
	KBS	MBC	SBS	TV조선	JTBC	채널A	MBN	CJ E&M	YTN	연합
시청점유율(%)	27.583	14.982	8.669	9.829	7.727	6.624	5.477	10.982	2.160	1.824

- (스마트폰·PC 시청행태 조사) 전국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69세 이하 5,000여명(스마트폰 3,500명 이상, PC 1,500명 이상) 패널을 대상으로 스마트폰·PC를 통한 방송프로그램 시청행태 조사

- (VOD 시청행태 조사) 고정형TV VOD(비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시청이 가능한 3,000가구, 만 4세 이상 8,800여명을 대상으로 고정형TV VOD(비실시간) 시청행태 조사
- (조사 점검 체계 구축) 패널 관리(패널 추가 영입, 패널 교체 등), 월간 점검회의(측정 기술, 시청기록 점검 등)를 통해 시청기록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신뢰도 및 정확성 제고
- (시청점유율 조사 민관협의회 운영) 스마트폰 · PC와 VOD (비실시간) 시청시간 조사에 따른 시청점유율 조사방법 및 산정 방안 등에 대한 사업자 의견수렴 및 이해관계 조정

※ 민관협의회 : 지상파,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사업자, PP 등 방송사업자, 네이버 · 다음 등 포털사업자, 시청률 조사회사, 광고주협회 등 약 30여명으로 구성('14. 7.)

###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18년도 시청점유율 조사 실시	1월	
	2018년도 고정형 시청기록 조사 용역 사전 공고	2월	
	2018년도 N스크린 시청행태 조사 용역 사전 공고	2월	
	2017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자료 접수	3월	
	2018년도 N스크린 시청행태 조사 용역 본공고 및 BMT 실시	3월	
2/4분기	2018년도 N스크린 시청행태 조사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4월	
	2018년도 N스크린 시청행태 조사 실시	4월	
	2018년도 시청점유율 기초조사 실시	6월	
	2017년도 매체교환율 산정결과 도출	6월	
	2017년도 시청점유율 산정결과 도출	6월	
	2018년도 TV·신문 이용행태 조사(1차)	6월	
3/4분기	2017년도 시청점유율 산정결과 발표	7월	
	2018년도 N스크린 시청행태 조사 결과 발표	8월	
4/4분기	2018년도 TV·신문 이용행태 조사(2차)	10월	
	2018년도 시청점유율 기초조사 종료 및 결과 분석	11월	
	2018년도 시청점유율 조사 종료	12월	
	2018년도 N스크린 시청행태 조사 종료	12월	
	2018년도 고정형TV VOD 시청행태 조사 종료	12월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자

### ○ 수혜자

-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규제를 통해 방송의 여론다양성을 증진하여 방송시청자의 방송 선택권을 확대
- (광고주) 성별·연령별 등으로로 스마트폰·PC와 VOD를 통한 방송프로그램 시청현황 파악이 가능하여 효율적인 광고비 집행에 참고자료로 활용

### ○ 이해관계자

- 방송사업자는 시청점유율 조사·산정 결과에 따라 방송사업 소유제한, 방송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 일부양도 등 제한

## □ 기대효과

-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규제를 통해 방송의 여론다양성을 보장하여 미디어 영향력 독과점 방지 및 미디어 다양성 구현
- 스마트폰·PC와 VOD 시청행태 조사를 실시하여 매체이용 행태변화를 시청점유율에 반영함으로써 여론다양성 보장을 위한 시청점유율 규제의 타당성 제고
- 방송콘텐츠 가치 평가를 통해 방송콘텐츠 제작과 유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 미디어산업의 국제경쟁력 발전 도모
- 시청점유율 조사를 통해 방송시청 현실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방송광고와 방송산업 발전에 기여

##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7	'18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				
	1-2. 미디어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3132) ▪ 1-2-1 미디어다양성증진(320-01)	방송통신 발전기금	51.75	49.16
			51.75	49.16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5	'16					
통합 시청점유율 조사 신뢰성 개선도(%)	신규	81	85	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패널 대표성 향상을 위한 저연령(20~30대)층, 1인 가구 패널 영입률은 '15년 30%, '16년 35%, '17년 40%, '18년 45%, '19년 50% 등으로 확대</li> <li>- '17년도 저연령(20~30대)층, 1인 가구 패널 영입률은 목표치 40%를 초과 달성을 하였음</li> <li>- 스마트폰·PC 시청행태 조사 개선사항 이행률</li> <li>- 스마트폰·PC 시청행태 조사 전문가 연구반(월간 점검회의)의 개선 및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이행률을 측정</li> <li>※ '17년도 개선 및 시정권고사항 총 16건에 대해 10건을 이행(62.5%)</li> <li>- '18년도 목표치는 '17년도 실적치(85%) 대비 2%를 상향하여 목표치를 설정함</li> </ul>	<p>&lt;측정방법&gt; (패널 대표성 개선율*0.6) + (N스크린조사 개선사항 이행률*0.4)</p> <p>&lt;측정산식&gt; [(패널 실적치/패널 목표치)×100]×0.6 + [(개선사항이행건수/개선사항도출건수)×100]×0.4</p>	전문 조사기관, 전문가 연구반 (월간 점검회의)

- ▷ 패널대표성 향상을 : 저연령(20~30대)층, 1인 가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패널 영입이 어려운 실정으로 조사 패널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저연령(20~30대)층, 1인 가구의 패널영입률을 장래인구추계 대비 '15년도 30%, '16년도 35%, '17년도 40%, '18년 45%, '19년도 50%로 5%p 상향하고, 50%를 달성하는 것이 최종 목표임
- ▷ 스마트폰·PC 시청행태 조사 개선사항 이행율 : 스마트폰·PC 시청행태 조사 전문가 연구반(월간 점검회의)을 통해 조사의 측정기술 신뢰성, 패널의 운영관리 등 월평균 2건 정도의 개선요구사항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도출된 문제점의 당해연도 개선이행 정도를 측정

## 전략목표 IV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정책성과를 극대화한다.

### 기 본 방 향

####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통신 행정을 구현하고 방통위 정책추진을 지원
- 2018년 정부업무평가 주요내용인 국정과제, 정부혁신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지원과 행정관리역량 강화 등 각종 시책 추진

#### ◇ 그간의 성과

- (행정관리) 기관장 중심의 다양한 행사 개최, 국민 참여와 민관 협업을 통한 정책 거버넌스 구축 및 적극적 성과관리 추진  
\* 2017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1위, 행안부 발표, '18.1)
- (정보보호)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해 위원회 소관 본인 확인기관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고 보호대책을 수립·시행
- (정책소통) 1인방송 제작자 인터뷰, 기관 SNS를 통한 국민의견 수렴 등 참신한 콘텐츠를 발굴·활용해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정책소통 강화
- (국제협력) 방송통신 정책협력 및 한류콘텐츠 해외 진출을 위해 중국·프랑스 등 해외 주요 방송통신 정부기관과 MoU 체결
- (규제개혁) '17년도에 위치정보 규제 합리화 등 11건의 규제개선 추진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향후 3년간 1만5천명의 직간접 고용창출효과) 행정조사 정비 및 중소기업 등 규제부담 경감을 통해 민생안정 지원

## 기 본 방 향

### ◇ 중점 추진내용

- 방통위 주관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상황 관리를 위해 국정과제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점검·평가 등 추진
- 방송통신 정책고객 대표자 회의 개최, 불필요한 일 버리기 등 정부혁신 및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으로 국민 소통과 협업의 가치를 실무행정에 구현
- 분쟁 조정에 대한 기능 강화 등 효율적인 갈등관리를 위하여 갈등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갈등의 사전예방에 주력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수립·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충무계획 작성·시행 및 보안점검 등을 통해 보안 및 비상대비 태세 강화
-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규제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
- 공직의 신뢰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공직가치 및 방송통신분야 전문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유연근무 등 자기 주도적 근무형태를 활성화
- 방송통신 주요정책 내용을 쉽고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하고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확산함으로써 대국민 소통 강화 및 기관 신뢰도 제고
- 방송통신 분야 정부 간 정책교류 및 방송통신 국제기구 활동을 통한 한국의 방송통신 분야 영향력 제고 등 국제협력 강화 추진

### ◇ 전략목표와 임무간의 상관성

- 국정기조에 부응하는 방송통신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인재개발, 정보보안, 규제개선, 직장문화, 법제관련 사항 등을 적극 지원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통신 행정 구현에 기여

##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성과지표체계 >

(단위 : 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2	2	6	10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IV-1. 신뢰받는 방송통신 행정을 구현한다	① 정부업무평가 '보통' 이상
	① 원활한 정책 수행을 위한 행정효율성 증대	① 국정과제 이행상황 점검율 ② 혁신과제 이행률
	② 사이버안전 및 비상대비 관리체계 강화	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 수준율 ② 비상대비 및 보안점검 달성을
	③ 규제개혁 적극 추진	① 규제개혁과제 이행률
	④ 일 잘하는 공직환경 조성	① 연가사용 활성화 ② 초과근무 감축률 ③ 국정과제 교육 활성화
	IV-2.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기관 신뢰도를 제고한다	① 대내외 협력 강화를 통한 기관 신뢰도 제고율
	① 대국민·대언론 정책소통 강화	① 대국민·대언론 정책소통 추진율
	②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① 방송통신 국제협력 향상도

## (1) 주요 내용

 원활한 정책 수행을 위한 행정효율성 증대

- 방통위 주관 국정과제 2개\*에 대한 추진상황 관리를 위해 국정 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점검·평가 등 추진
  - \* 표현의 자유와 언론 독립성 신장,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 정부 내 시스템을 통해 BH·국무조정실·부처관계자들 간 의견 교환 및 실시간 점검·관리·평가 등 국정과제 적극 추진
-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 행정 구현을 위하여 기관내·외 소통과 협업을 활성화하고 정부혁신 및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
  - 정책고객 대표자회의 개최 등을 통한 국민 참여 확대, 불필요한 일 버리기를 통한 업무 간소화 및 공직사회 근무여건 개선 추진
- 효율적인 갈등관리를 위하여 갈등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이해 관계자와의 소통 강화와 현장 중심의 갈등 해소
  - 갈등조정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갈등을 지속 관리하고, 이해 당사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방문 및 간담회 추진

 사이버안전 및 비상대비 관리체계 강화

- 사이버 침해 등 보안위협에 대응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충무계획 수립, 을지연습, 방송시설에 대한 보안관리를 통해 안보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비상대비태세를 확립

## □ 규제개혁 적극 추진

- 방송통신 산업 활성화, 기업 부담 경감,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에 기여
-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 및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성과·질적 지표 중심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연내 성공적 이행 추진

## □ 일 잘하는 공직환경 조성

- 공직자로서 갖춰야할 공직가치 교육, 직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송통신분야 전문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개설·운영
- 관행적 초과근무 근절, 유연근무 등 자기주도적 근무형태 활성화 등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 통해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근무환경 조성

##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16 '17 '18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5	'16				
정부업무평가결과	보통	보통	보통	보통	정부업무평가 결과 '보통' 이상 달성	정부업무평가 결과 국조실 평가발표자료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 외부환경

- 방통위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 독립성 신장' 및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등 2개 국정과제를 추진중이나 상대적으로 조직규모가 작음
  - 또한, 관련정책이 방통위,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긴밀한 협력 필요

- 사이버 공격 수법의 고도화·지능화, 북한을 비롯한 국제 정세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예측 불가능성의 증가 등 보안위협 증대
- 일반 국민들이 방송·통신 관련정책을 이해하기 다소 어려운 점이 있어 국민의 실생활과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상황

## □ 갈등요인

- 기관내외 소통 활성화 추진 결과, 국민 편익증진과 내부 업무개선이 이루어져 성과가 나고 있지만 구성원의 업무부담도 증가하는 상황
- 방송통신 분야 특성상 이해당사자가 불특정 다수인 전 국민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의견 통일이 어렵고,
  - 이해당사자가 특정인으로 한정되더라도 추구하는 이익의 크기가 정해져 있거나 의견 차이가 커 이해당사자간 조정이 쉽지 않음
- 최근 사이버 침해사례 증가 및 국제정세 변화로 인한 보안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보안·정보보호, 비상대비 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저조
- 방송통신 산업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소관 기술변화와 시장 상황을 적기에 관리하지 못할 경우 행정규제가 민간의 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 가능
- '눈치 보기' 등으로 관행적 초과근무, 연가사용 부담 등에 의한 일과 생활의 불균형 발생으로 공직생산성 저하 우려
- 역량개발을 위한 전 직원 대상 집합식 교육은 업무의 공백 및 부담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공직가치 분야 교육은 업무처리와 직접 관련이 없어 관심이 부족한 상황

## □ 갈등관리계획

- 업무 DB를 활용하여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업무를 개선하는 등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해 구성원들의 업무 부담 경감에 노력
- 이해당사자가 한정된 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수렴 및 소통을 통해 주요 이해당사자별 입장을 파악하고 갈등 발생의 사전 차단에 주력
- 외부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 충무계획 및 보안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이행 점검을 철저히 하여 위원회와 산하·유관기관의 관심도 제고
-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소통 활성화를 통해 법령정비 및 규제개혁의 추진동력 확보
- 기관장, 부서장 등이 의지를 가지고 구성원들로부터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자기주도적 근무형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유도
- 공직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목표와 연계한 직무교육을 활성화하고 각종 교육훈련기관의 동영상·이러닝·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등을 활용
  - 공직가치 분야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개인별 목표수립 및 이수 여부 지원 · 관리

## (4) 기타

## □ 참고자료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련)
- 2017년도 규제개혁 실적보고서

##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① 원활한 정책 수행을 위한 행정효율성 증대(IV-1-①)

#### □ 추진배경

- 국정과제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정부혁신과 일하는 방식 혁신을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창출하는 데 핵심역량을 집중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방통위 주관 국정과제 2개\*에 대한 추진상황 관리를 위해 매월 이행 상황 점검회의 개최 및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점검·평가 등 추진
  - \* 표현의 자유와 언론 독립성 신장,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 매월 국정과제 점검 회의(상임위원 주재)를 실시하여 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등 소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수행 추진
    - 정부 내 시스템을 통해 BH·국무조정실·부처관계자들 간 의견 교환 및 실시간 점검·관리·평가 등 국정과제 적극 추진
- 정부혁신을 통해 정부 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여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여 낮은 업무관행 제거
  - 정책고객 대표자 회의 개최 등을 통해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수요가 높은 공공자원 개방률을 제고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 구현
  - 불필요한 야근을 극복하고 혁신공간을 마련하는 등 공직사회 근무여건 개선 추진을 통한 업무 간소화 및 창의적 조직문화 확산
- 분쟁조정 기능 강화 등 효율적인 갈등관리를 위한 체계 개선 및 이해 관계자 참여기회 확대 등 소통 강화와 현장 중심의 갈등해소 노력

- 각 과제별로 주요 이해관계자·전문가·방통위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갈등조정협의체를 운영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진행
- 이해관계자 면담 등 갈등과제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위원장, 상임위원 및 담당자 현장방문 추진

###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18년도 정부혁신 실행계획 수립	2월	
	2018년도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3월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계획 수립	3월	
2/4분기	2018년 상반기 정책고객 대표자 회의 개최 2018년 상반기 창의역량 교육 실시	5월	
	공공갈등관리 직원교육 실시	6월	
	국정과제 점검회의	9월	
4/4분기	2018년 하반기 정책고객 대표자 회의 개최 2018년 하반기 창의역량 교육 실시	11월	
	국정과제 점검회의	12월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자

- (수혜자) 방송통신 사업자 및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 노령층, 시청각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정보취약 계층
- 산·학·연 직능별 대표성과 소비자·노인·장애인 등 분야별 대표성을 고려한 정책고객대표자 회의 등을 통한 의견 수렴으로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 편의 제고
- (이해관계자) 방송통신사업자 및 시민단체, 지자체 등
- 이해당사자가 불특정 다수인 전 국민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고 당사자별 추구하는 이익의 크기도 커서 의견 조정이 어려워 의견대립이 존재

## □ 기대효과

- 사회적 가치 확산을 통해 국민 중심의 국정운영을 정착시키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 행정’ 구현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5	'16	'17	'18			
국정과제 이행상황 점검율(%)	-	-	100	100	방통위 소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18년 추진계획 수립 시점인 3월부터 매월 이행상황 점검(10회)	국정과제 대상 과제 추진실적 점검회의, 국정과제 시스템 운영 및 개선실적을 정성평가	내부자료, 국정과제 시스템 관리 실적
혁신과제 이행률(%)	-	-	신규	90	○ 방통위 정부혁신 실행계획상 혁신과제에 대한 이행실적 측정  - 정부혁신 실행계획은 신정부 출범에 따라 2018년에 처음 수립되는 계획이라는 점과 지표 자체가 신규지표임을 감안하여 이행목표 90%로 설정	(이행과제 건수/과제 건수) × 100	정부혁신평가 결과보고서

## ② 사이버안전 및 비상대비 관리체계 강화(IV-1-②)

### □ 추진배경

- 사이버 테러 증가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정보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제거 및 보호대책 강화
- 국가 위기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을지연습 수행 및 보안시설로 지정된 방송시설에 대한 보안관리 철저
- 비상대비태세 구축을 위한 충무계획 수립과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한 정확한 자원조사 실시
  - \* 근거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35조
    - 통합방위법 제21조,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8조, 제10조, 제14조, 보안업무규정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5조, 제6조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방통위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분석·평가 및 보호대책 수립 강화
- 재난 관계기관 및 주요방송사업자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한 충무계획 작성·시행 및 실시계획 승인
- 비상대비분야 확인평가 및 중점관리대상업체(동원지정업체) 자원 조사 실시로 비상대비 관련 문제점 개선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이버 침해에 대한 예방·대응 체계를 확립하여 정보보안 인식제고

##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동원자원조사 실시	2월	
	2018년도 보안업무추진계획 수립	2월	
2/4분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수립 지침 작성	5월	
	총무집행계획 수립 및 검토·승인	5~11월	
	2018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5월	
	2018년도 상반기 보안감사 실시	6월	
3/4분기	2018년도 을지연습 실시	8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 이행 점검	9~10월	
4/4분기	비상대비 확인 점검	10~11월	
	2018년도 하반기 보안감사 실시	11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추진실적 및 익년도 계획 보고	11~12월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자

#### ○ 수혜자

- (국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이버 침해사고 대비와 주요 방송사의 재난 및 전시 대비 태세를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 이해관계자

- (사이버안전) 정부·공공기관(과기정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본인확인서비스, 민간아이핀 제공기관)
- (비상대비) 주요 방송사를 포함한 동원지정업체 및 비밀특례기관

## □ 기대효과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정보보호 수준향상을 통한 침해사고 대응능력 강화 및 정보시스템의 사전 취약점 제거를 통한 정보 보호 조치의 효율성 제고
- 현실성 있는 위기상황을 고려한 충무계획 수립, 을지연습,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등으로 위기상황 대응능력 향상 및 재난 안전 관리체계 확립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 충무계획, 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 및 철저한 이행 점검을 통한 정보보호·비상대비 및 보안 인식 제고

##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7	'18
사이버안전 및 비상대비 관리체계 강화(IV-1-일반재정③)		
① 행정사무정보화(7131, 308) ■ 정보보호 수준 강화(7131, 308)	일반회계 1.0 1.0	1.0 1.0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18 목표치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5	'16				
주요정보통신기반 시설 정보보호 수준율(%)	신규	75.4	76.7	77.8 '17년 실적대비 1.1% 향상 된 목표 설정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본인확인기관 : 6개 -위치정보사업자 : 3개	AL(%)=(T/5)×100 ※ AL:수준율, T:전체 기관의 수준평가 점수 평균 (5점 만점)	기관별 결과보고서 등
비상대비 및 보안점검 달성을률(%)	신규	100	100	100 목표대비 실적지표로 매년 100% 달성을필요 <'18년도 목표> -자원조사 대상업체수:46개 -보안점검 목표 : 14개	{[(자원조사실시업체 / 자원조사대상업체)×0.5]+[(보안점검 기관수/보안점검 목표 기관수)×0.5]}×100	점검 결과보고서

### ③ 규제개혁 적극 추진(IV-1-③)

#### □ 추진배경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개선을 통해 국민편의 증진 및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제4기 방통위 정책방향에서 밝힌 '네거티브 규제' 및 '차별없는 규제'를 위한 총괄적인 규제 합리화 추진
  - 네거티브 규제전환 연구용역 및 세미나, 외부단체 견의사항 수렴, 국민공모, 부서별 자체발굴 등을 통해 규제개혁 과제발굴 추진
- 규제심사 및 규제개선 절차 충실화를 위한 내부 규제업무 프로세스 혁신 및 직원 규제개혁 역량강화 도모
  - 규제업무운영규정 마련, 규제신속확인제 도입, 규제혁신평가 실시 및 인센티브 제공, 규제업무 편람 발간 및 규제개혁 직원 교육확대 등 추진

####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18년 규제정비계획 수립	2월	
2/4분기	방송통신규제업무 운영 규정 신설 방송통신 규제심사위원회 개편	4월	
	규제개혁 아이디어 국민공모 실시	5월	
	규제 신속확인제 도입, 신속확인창구 개설	6월	
3/4분기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안 세미나 개최	8월	
	규제업무 편람 발간	9월	
4/4분기	규제 분야별 네거티브화 방안 마련	11월	
	2018년도 자체규제혁신 평가 실시	12월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자

### ○ 수혜자

- (방송통신사업자 및 서비스 이용자) 방송통신 분야 규제개혁을 통해 사업자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

### ○ 이해관계자

- (방송통신사업자, 관계부처) 규제개혁과제 추진 과정에서 방송통신사업자 및 관계 부처 간 의견 대립 존재

## □ 기대효과

- (외적측면)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개선을 통해 국민편의 증진 및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
- 사업자의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투자 촉진 및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이용자 등 국민 불편 해소
- (내적측면) 자체 규제개혁 역량향상을 통해 규제개혁 우수기관으로의 도약 및 대외평가 향상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치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5	'16	'17	'18			
규제개혁과제 이행률(%)	70	80	90	92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개선계획 대비 실적 측정<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양적 과제 발굴 방식을 지양하고 성과·질적지표 중심으로 규제개혁과제 9 개(단위과제 11개)를 선정</li><li>- 방송통신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임에도 '17년도 이행 목표치 90%보다 2% 상승한 92%로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li></ul></li></ul>	$\text{이행률(%)} = \frac{\sum(\text{과제별 이행단위과제 건수}/\text{과제별 단위과제 건수})}{\text{규제개혁 과제 건수}} \times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이행여부 판단기준:<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법률 제개정 사항은 국회 제출까지를 이행으로 판단하고 시행령이하 법령의 경우 실제 제개정 여부로 판단</li><li>- 법령 제개정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규제개선 관리 카드상 기재된 개선내용을 보고 이행여부 판단</li></ul></li></ul>	규제정보화시스템 및 내부자료

## ④ 일 잘하는 공직환경 조성(IV-2-②)

### □ 추진배경

- 강의, 워크숍, 이러닝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하여 바람직한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
- 근무시간 중 업무 집중도를 높여 공직 생산성을 제고하고 일·생활의 균형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등 근무혁신 필요
- 일·생활 균형을 공무원의 권리로 인식하고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근무환경 조성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소양교육, 조직문제 해결과 가치실현을 위한 교육, 직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송통신분야 전문교육,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외국어교육 등을 통한 인재개발
- 4차 산업혁명, 사회적 가치 등 국정과제 교육을 추진하여 바람직한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민생체험, 봉사활동을 통한 실천하는 공직자 상 수립
- 방송통신분야 전문가 초빙강의 및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여 방송통신 관련 직무 전문성 제고
-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 외국어 위탁교육, 자기주도 외국어 교육 실시 및 주제별 외국어 스터디 운영
- 신규 채용자, 전입자를 위한 직무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기본 소양·역량과 방송통신 업무에 필요한 기초역량 배양

- 개인별로 부여된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일과 휴식이 양립하는 균형 잡힌 근무환경 조성
  - 부서장 월간 연가사용 현황점검 등을 통해 간부직부터 솔선 수범하여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추진
  - 계절별 여행주간과 연계한 하계휴가, 동계휴가 등을 장려하여 연가사용을 통해 재충전의 기회로 활용
- 자기 주도적으로 근무시간을 관리하여 조직 내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는 등 업무 생산성 제고
  - '가족 사랑의 날'을 주2회(수·금)로 확대하여 일·생활 균형 지원
  - 매월 초과근무시간을 집계하여 초과근무시간이 많은 직원에 대해 직무분석 등을 통한 부서장 개별면담을 실시
  -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정하고 집단 유연근무제를 실시하여 2시간 조기 퇴근하도록 근무시간 조정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전년도 복무관리 종합계획 결과 보고	1월	
	자체 외국어 위탁교육	1월	
	공무원 복무제도 교육	3월	
2/4분기	성희롱·성폭력등 예방교육	4월	
	리더십 교육	4월	
	독서통신 교육	4~5월	
	복무관리 종합계획 수립	4~5월	
3/4분기	신규자·전입자 교육	9월	
4/4분기	복무제도 만족도 조사	12월	
	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	10월	
매 월	부서장 연가이용실적 점검	연중	
매 월	초과근무 실적 집계 및 부서장 면담 실시	연중	
매 분기	초과근무 실적 분석	연중	
연 중	복무점검 등 근무기강 확립	연중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자

### ○ 수혜자

- (직원) 직원들의 필요역량을 고려한 교육,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자기개발과 사기양양 실현
- (국민) 공무원의 공직역량 개발과 효율적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공직 생산성 및 조직 효과성을 제고하여 대국민 신뢰도와 만족도를 향상

### ○ 이해관계자

- (행정기관장) 유연근무 실시자의 균무성적평정, 전보,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관리
- (부서장 및 동료) 연가 및 집단유연근무 실시에 따른 업무공백이 없도록 관련업무에 대한 인수인계 등 필요
- (교육기관) 전문성이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적합한 교육 과정과 강사가 필요

## □ 기대효과

- 공직가치 확립 및 방송통신분야 역량제고를 통한 공직인재 양성
- 유연한 근무여건 조성으로 효율적·생산적 근무시스템을 구축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업무 만족도 제고 및 업무시간 이후의 자기개발 기회 확대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5	'16	'17	'18			
연가사용 활성화(일)	-	-	신규	14	전년도 위원회 평균연가사용 일수(13.5일) 및 권장연가일 수(14일)를 고려하여 설정  ※ '17년도 중앙부처 평균 연 가사용일수 : 10.9일	위원회 직원의 연가사용 일수의 평균 (연가사용 일수의 합/ 위원회 근무직원 수)	표준인사시스템 통계 자료
초과근무 감축률(%)	-	-	신규	10	'17년 위원회 평균 초과근무 시간(12.7시간) 대비 10% 감축  ※ 행정관리역량 지표 반영	(('17년도 1인당 월 초과근무 실적-'18년도 1인당 월 초과근무 실적) / ('17년도 1인당 월 초과근무 실적)×100	표준인사시스템 통계 자료
국정과제 교육 활성화(시간)	-	신규	14.5	15	전년도 1인당 평균 국정과제 교육 이수시간(14.5시간) 대비 3.5% 증가 추진을 통해, 평균 국정과제 교육 이수시간이 15 시간 수준으로 될 수 있도록 목표치를 적극 설정	전년 대비 1인당 평균 국정과제 교육 이수시간 증가율(%) = 3.5%	국정과제 교육 이수 실적

## 성과목표 IV-2

## 대내외 협력 강화를 통한 기관 신뢰도 제고

### (1) 주요 내용

#### □ 대국민·대언론 정책 소통 강화

- 방통위 추진 주요 정책에 대한 다양한 소통활동을 전개하여 대국민·대언론 정책 이해도 제고 및 신뢰도 증대
  - 주요 정책 내용을 쉽고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확산하여 온·오프라인, 모바일 등을 통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추진

#### □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 방송통신 관련 외국 정부, 국제기구와의 지속적인 교류·협력 추진 및 방송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한 방송통신 국제 협력 강화
  - 고위급 면담, MoU 체결 등을 통한 방송통신 교류협력 추진 및 국내 방송사의 해외진출을 위한 방송사간 교류협력 지원

###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5	'16	'17	'18			
대내외 협력 강화를 통한 기관 신뢰도 제고율(%)	-	-	신규	85	방송통신 정책 관련 대국민·대언론 소통 및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기관 신뢰도 제고율을 성과 목표로 설정	(대국민·대언론 정책소통 추진율×0.5)+(방송통신 국제협력 향상도×0.5)	방송통신 정책 수용자 설문조사 및 SNS콘텐츠 게재·협상 경과 등 실적자료

###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 외부환경

- 정책 수립 및 실행에 있어 소통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매체 이용 행태의 변화로 TV·신문 등 전통적인 매체 외에 온라인·모바일 등을 통한 대국민 소통 필요성이 증대
- ICT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글로벌 방송통신 서비스의 활성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한류 방송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이 필요

#### □ 갈등요인

- 방송통신 규제 정책의 내용이 전문적이고, 국민이 직접 수혜자가 되는 경우도 제한적이어서 국민들의 정책 관심도 및 이해도 제고가 필요한 상황
- 방송통신 서비스의 기술 발전과 글로벌화 추세에 따라 정부간 규제협력 및 한류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 지원 등이 필요한 상황

#### □ 갈등관리계획

- 국민과 직접 연결된 정책을 선정하고,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발굴하여 온라인·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맞춤형 소통활동 전개
- 정부 간 협력, 국제기구 활동 참여 및 국제회의 개최 등 방송통신분야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국내 방송사의 해외진출을 위한 방송사간 MoU 체결 등 교류·협력 지원

###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③ 대국민·대언론 정책 소통 강화(IV-2-①)

#### □ 추진배경

- '18년도 주요정책 내용 및 사업 성과에 대한 온·오프라인 소통 강화를 통해 대국민 정책 인지도 및 이해도 제고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온라인·모바일 적극 활용) 방통위 주요정책 홍보 콘텐츠 제작·확산, 1인방송 제작자 기획 인터뷰, 블로그 기자단 운영 내실화 등 온라인·모바일 소통 강화
- (기획홍보 강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월별 중점 홍보 과제로 선정·소개하여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소통활동 전개
- (기관장 소통활동 강화) 기관장의 방송출연 및 기고, 강연회·설명회·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다양한 대외 활동을 통한 방통위 정책 소개 및 현장 의견 청취
- (취재 지원 및 언론홍보 내실화) 보도자료 및 홍보계획 배포, 주요이슈 관련 언론브리핑 실시, 언론간담회 추진 등 언론과의 소통 확대 및 취재지원 활동 강화
- (직원 소통역량 강화) 방통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소통기법 및 보도자료 작성 요령 등 교육 실시, 연간 우수 보도 자료 선정·시상 등

##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방통위 업무계획 홍보 '17년도 부서별 홍보실적 평가	1월 2월	
2/4분기	직원 소통교육 실시	5월	
3/4분기	법부처 정책기자단 대상 정책설명회	9월	
4/4분기	우수 보도자료 시상	12월	
연중	보도·해명 자료 배포 및 브리핑 지원	수시	
	출입기자 간담회 실시		
	온라인홍보 이벤트 개최		
	신문·방송·인터넷 등 언론모니터링		
	SNS(블로그, 페이스북) 운영		
	주간 정책홍보 계획 작성		
	주요정책 기획홍보		
	위원장 연설문·기고문 작성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자

- (수혜자)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 방송·신문 및 언론사 등
- (이해관계자) 방송통신사업자 및 시민단체 등

### □ 기대효과

- 주요정책 관련 홍보 콘텐츠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고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확산함으로써 대국민 소통 강화 및 기관 신뢰도 제고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16 '17 '18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대국민·대언론 정책소통 추진율 (%)	-	-	신규	85  '18년 목표치는 전년도 만족도 조사 결과(69점) 및 SNS 콘텐츠 수(280건)를 고려하고, 객관적 성과 측정을 위해 정량수치인 콘텐츠 개체 실적을 신규 지표로 추가  ※ 만족도 조사 : 69점→71점 SNS 콘텐츠 : 280건→300건	[(대국민·대언론 정책 소통 만족도×0.5+(방송통신 온라인 소통 실적 건수/목표)×0.5]×100	방통위 SNS 방문자·출입기자단 대상 설문조사 및 방통위 블로그 콘텐츠 게재 실적

## ④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IV-2-②)

### □ 추진배경 (목적)

- 방송통신 규제 관련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강화 및 국제적 현안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교류 협력 활동 지원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3조(방송통신 국제협력)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정부간 협력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
  - 지역별 주요국가와의 고위급 면담 및 MOU 체결 등을 위한 방송통신 교류협력 활동 지원
  - 국제회의를 통한 협력의제 발굴, 방송통신 규제 분야 현안의 신속한 검토, 효과적 대응전략 수립

###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글로벌 방송통신 시장동향 파악 및 방송통신 정책 협력 - I	1월	
	스페인, 영국 등 주요국과의 방송통신 교류 협력 기반 마련	2월	
2/4분기	유럽 주요국과 방송통신 정책 교류 및 규제분야 협력 추진	4월	
	글로벌 방송통신 기술동향 파악 및 방송통신 정책 협력 - II	4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방송통신 정책 교류, 협력 추진	6월	
3/4분기	주요국과의 방송통신 정책 협력 및 교류 강화	9월	
4/4분기	남북 방송통신 국제 컨퍼런스 개최	12월	
	'18년 성과정리 및 '19년 계획 수립	12월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자

### ○ 수혜자

- (전 국민·언론사) 방통위 정책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국민들에게 유용한 방송통신 정보를 제공하며, 정책 관련 보도·해명자료 배포 등으로 언론사의 취재활동 지원

### ○ 이해관계자

- (방송통신사업자·시민단체 등) 방통위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자, 시민단체의 경우 방송통신 정책 발표 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 원활한 소통이 필요

## □ 기대효과

- 방송통신 규제 분야 정부 간 정책교류 및 주요 국제기구 의제 관련 활동을 통해 한국의 방송통신분야 영향력을 제고하고 국제 협력 강화에 기여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5	'16	'17	'18		
방송통신 국제협력 향상도(%)	-	75	75	85	'16, '17년 실적을 바탕으로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 ※ 국제협력 추진 : 18건→20건 만족도 : 50점→70점	[((방송통신 국제협력 추진실적/계획)×0.5)+(방송통신 국제협력 만족도) ×0.5]×100

# IV

## 기관대표 성과지표

1.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률
2. 통신·인터넷 이용자보호 제고율
3. 미디어시장 상생발전율



## 기관대표 성과지표 1

###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률

#### (1) 개요

-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시 부가된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 관련 조건에 대한 철저한 이행실적 점검을 통해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신장하고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도모’
  - 지상파와 종편PP에 부가된 주요 조건 이행률을 대표지표로 설정
  - 사회적 영향력이 큰 주요 방송사업자의 방송 공적책임 제고를 위한 정책 이행도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미디어의 균형발전 및 국민 미디어 복지 향상도 평가 가능
- \* 전략목표 :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신장하고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한다.

#### (2) 기관대표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7	'18	'19	'20	'21	'22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률(%)	(신규)	75	80	85	90	95

※ '17년은 관련 조건부가 여부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실적 측정

#### □ 목표치 산출근거

- '17년에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엄격한 재허가·재승인 조건을 부가한 점 고려
- '17년에 MBC 등 지상파 3사와 TV조선 등이 기준점수인 650점을 미달함에 따라 재허가·재승인 조건의 엄정한 이행을 전제로 재허가·재승인을 받은 바 있음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조건

- 지상파방송 : 경영의 독립성, 편성위원회 운영 활성화, 직원 징계제도 개선 등
- 종편PP : 방송의 품격제고 계획 준수, 오보·막말·편파 사유 방송심의위 법정 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 심의제재 방지를 위한 검증기구 운영, 법정제재시 출연정지 조치 등

□ 측정방법

-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지상파 재허가 조건 이행 건수 /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지상파 재허가 조건 수) × 0.5 +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종편PP 재승인 조건 이행 건수 /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종편PP 재승인 조건 수) × 0.5

□ 자료수집 방법

- 방송사업자 이행실적 제출자료 검증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해 점검

(3) 주요 내용

- '17년 주요 지상파방송사의 재허가와 종편PP 재승인 심사 시 부가된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 관련 조건에 대한 철저한 이행실적 점검 실시
- 지역방송사(지역민방, MBC 계열사)의 중앙방송사(SBS, MBC본사)로부터의 경영의 독립성, 편성위원회 운영 활성화, 직원 징계제도 개선, 방송의 품격제고 계획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
- 단순한 실적 확인 차원의 점검이 아니라 점검 과정에서 방송 사업자가 주요 정책을 이행토록 적극 유도함으로써 방송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 및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도모

## 기관대표 성과지표 2

### 통신 · 인터넷 이용자보호 제고율

#### (1) 개요

- 방송통신분야 사업자의 법규 준수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식률 향상과 안전한 인터넷환경조성을 위한 참여도를 향상시켜 이용자 주권 강화에 기여
- \* 전략목표 : 방송통신 이용자의 주권을 강화한다.

#### (2) 기관대표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7	'18	'19	'20	'21	'22
통신·인터넷 이용자보호 제고율(%) (산구)	67.4	67.8	68.2	68.6	69.0	

#### □ 목표치 산출근거

- (통신시장 법규 준수율) '17년(①단말기유통법, ②유선경품) 대비 신규 모니터링 준수율(③허위과장광고)이 '18년부터 추가된 것을 고려하여, '19년부터 상향 조정
-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조치 적정성) 일반 인터넷이용자 대상 조사임을 감안하여 '17년 수준을 매년 유지하도록 설정
-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 학교와 가정이 함께하는 사이버 안심존 운영학교 수를 점진적으로 확대

#### □ 측정방법

- (통신시장 법규 준수율 × 0.6) + (개인정보보호 조치 적정성 인식률 × 0.2) + (사이버안심존 운영학교 비율 × 0.2)

- 통신시장 법규 준수율 : 법 준수율 =  $\frac{[(\text{이동전화 불공정행위 현장 모니터링 준수 건수}/\text{이동전화 불공정행위 현장 모니터링 총 건수}) \times 100] + (\text{유선시장 경품 가이드 현장 모니터링 준수율} + \text{허위과장 광고 가이드 현장 모니터링 준수율})/2}{2}$
-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조치 적정성 : 2,000여명의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충분히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보통” 이상 답변을 합산
-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노력 : 사이버안심존 운영학교수/전국 초중학교수

## □ 자료수집 방법

- 통신분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보고서, 사이버안심존 운영 결과 관련 보고서 등을 통해 결과 수집

### (3) 주요 내용

- 유·무선 통신시장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방지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법령 위반행위를 방지
  - ※ 주요 모니터링 사항 :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판매시 제공되는 경품 제공 수준 조사, 허위과장 광고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조사, 요금제 및 단말기별 지원금 수준 조사 등
- 사업자·이용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법규 교육 및 홍보, 상담 및 컨설팅 등을 통하여 실시하여 개인정보 관리 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중요성 인식을 제고시키고,
  - 정책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변화에 대응한 개인정보 정책개발, 비식별조치 등을 지원하여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환경 조성
-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사이버안심존을 시·도 교육청과 MoU를 체결하여 전국으로 확대하고,
  - 학부모·교원 대상 교육, 보행 중 스마트폰 이용 차단 등 기능개선을 통해 사이버안심존 운영효과를 제고

## (1) 개요

- 외주제작시장은 외주제작 의무 편성제도 도입 아래 양적, 질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그 이면에는 불충분한 외주제작비 지급, 저작권 등 수익의 자의적 배분, 과도한 노동시간, 인권 침해 등 불공정 관행이 지속
- 또한 매체 간 경쟁 심화에 따른 방송광고 관련 법규 미숙지 등으로 인한 법규 위반 사례가 지속 발생하여 시청자의 시청권 침해
- 지상파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서면계약 관행 확립, 외주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인권선언문 제정 등 방송사-외주제작사간 불공정행위 개선을 통한 미디어시장 상생환경을 조성
- 또한, 방송광고 법규 준수율을 지표에 포함하여 시청권 보호 및 공정경쟁질서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을 통해 시청자의 미디어 복지 제고

※ 전략목표 : 방송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 복지를 제고한다.

## (2) 기관대표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7	'18	'19	'20	'21	'22
미디어시장 상생발전율(%)	(신규)	80	81	82	83	84	

 목표치 산출근거

- (표준계약서) '17년 외주제작사 표준계약서 도입률'이 50% 미만 이었지만 적극적인 목표치(60% 이상~80% 미만)를 설정
- (방송광고 법규준수 상승률) 직전 3년간 법규준수율 평균대비 법규 준수율 100% 이상 상승을 목표치로 설정
- (만족도) 외주제작 제도개선에 대한 업계 및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만족도 측정 시 만족(5점 척도시 4점 이상)을 목표치로 설정

## □ 측정방법

- (표준계약서 도입률\* $\times$ 0.4)+(방송광고 법규준수 상승률\*\* $\times$ 0.3)+(만족도\*\*\* $\times$ 0.3)

\* 표준계약서 도입률 : 실태점검 대상 방송사업자 및 외주사업자의 표준계약서 도입률  
(60%이상시 80점 / 80% 이상 시 100점 기준)

\*\* 방송광고 법규 준수 상승률 : (당해연도 법규준수율 / 직전 3년간 법규준수율 평균)  $\times$  100  
(100% 이상 상승시 80점 / 120% 이상 상승시 100점 기준)

\*\*\* 외주제작 분야 제도개선·정책 등에 대한 정책수혜자들의 만족도 측정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 환산)

## □ 자료수집 방법

- 방송시장 공정 거래 이행실태 점검결과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서면) 결과, 방통위 행정처분 자료,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등

### (3) 주요 내용

- '방송업계 독립창작자 인권선언문' 제정, 방송사-외주사간 제작비·저작권 등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유관 부처 협의체 운영 등 외주제작 시장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
  - 계약체결 현황, 노동시간 등 외주제작 근로환경 전반에 대한 범부처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표준계약서 여부 등 방송사·외주제작사간 불공정 관행 파악 등을 추진
- 방송사업자 대상 방송광고 법규에 대한 수시교육 등을 실시하여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 동시에 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사후규제 강화를 통해 방송의 공익성과 시청자의 시청권을 보호
  -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및 시청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항\*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연 2회 이상)하여 위반사업자 제재

\* 시청자 민원이 많은 사항, 법규 위반 빈도가 높아 집중관리가 필요한 방송사업자 및 광고가 집중되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 등

# V

## 환류 등 관련계획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2. 평가결과 환류체계
3. 변화관리 계획
4. 현장의견의 정책반영 계획



##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방송정책, 이용자정책, 행정관리 분야별 전문가 13인으로 구성('16.7월)
-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로 운영하되, 소위원회는 관리과제 분야별로 구성
- 성과관리 시행계획, 자체평가 시행계획 등의 심의와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자체평가 실시결과 심의
- 성과관리에 관한 절차, 환류 등 성과관리의 전반적 사항을 자문하는 역할 수행

### □ 평가지원조직 구성

- 효율적인 평가업무 관리와 체계적인 평가 추진체계 확립을 위해 평가업무를 총괄하는 총괄팀과 자체평가위원회 분과별로 평가활동을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평가지원팀 구성 · 운영
  - 자체평가 기본방향, 분야별 평가계획 등 기획 및 종합 · 조정 업무 수행
  - 반기별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총괄, 평가 분야별 점검결과 보고서 및 평가보고서 작성
  -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 보고자료 작성 및 평가분야 정책에 대한 업무 설명회, 현장방문, 간담회 실시 등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지원

## □ 평가(점검)의 시행

- 매년 상반기 세부과제별로 일정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연이 예상되는 사업은 원인 분석과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
- 연간 추진실적 평가 시, 평가지원팀은 각 소관별 자체평가 계획에서 제시된 분야별 평가지표의 측정기준에 따라 추진 실적 및 증빙자료를 소위원회에 제출
  -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평정 후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및 심의·의결
- 자체평가결과 미흡과제는 원인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여 향후 정책수립 시 반영
  - 인력(업무량)·조직(구조) 차원 등의 종합적 심층진단도 병행



## □ 주요 일정

2018년 2/4분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li><li>○ 자체평가 시행계획 수립</li></ul>
2018년 3/4분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상반기 이행상황 점검 실시</li><li>○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정</li></ul>
2018년 4/4분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자체평가 정책설명회 실시</li><li>○ 하반기 자체평가 실시</li></ul>
2019년 1/4분기 (1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최종평가 실시</li></ul>

## 2. 평가결과 환류체계

### □ 성과관리의 주요 환류체계

- 성과관리 관리과제별 자체평가(7등급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과제별 개선보완사항은 다음 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반영하는 등 정책개선에 활용
-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 삭감을 검토하고 성과가 미흡하지 않으나 성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 증액을 지양
- 성과관리 자체평가 결과는 부서성과평가 점수에 반영하여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평가 시 활용

### □ 정책개선 및 정책품질 제고에 활용

- 자체평가 수행과정에서 평가위원 등이 발굴 또는 제시한 개선사항 등을 검토하여 추진계획 수립 시 반영
  - 평가결과 우수·미흡사례 등은 각 국에 전파·공유하여 성과관리 제고  
- 평가결과 개선·보완사항은 다음 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반영하고 향후 평가 시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행사항 점검·관리
- ※ 전년도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여부를 자체평가 시 반영

### □ 조직 및 정원관리에 활용

- 효율적 조직 관리를 위해 전년도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소요정원 및 중기 인력운영계획 수립
- 평가 및 직무분석을 통해 인력조정·재배치, 부서기능 재조정 등 탄력적인 조직 운영  
- 특히, 미흡과제에 대해서는 인력(업무량)·조직(구조) 차원에서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하여 조직운영에 활용

## □ 예산편성에 활용

- 관리과제 평가결과는 차년도 예산 편성시 소관 부서의 재정 사업에 반영하여 자체평가와 재정사업 간의 인센티브·패널티 체계 운영
  - 관리과제 중 '우수' 평가를 받은 부서의 재정사업에 대하여 증액, '미흡' 평가를 받은 부서의 재정사업은 감액 추진

## □ 승진·전보 등 인사운영에 활용

- 복수직 4급 이상 개인성과평가 결과, 5급 이하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인사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승진·인사 심사 및 전보·파견 등 보직관리에 활용
  - 업무실적이 탁월한 우수인력은 주요보직 전보 및 부외파견 시 해당직원의 희망사항을 우선 배려
- 국내외 장·단기 교육훈련 대상자 선정 시 업무실적이 우수한 직원을 우선 배려

## □ 성과급 지급

- 성과관리과제별 자체평가 결과를 개인성과에 반영하는 등 통합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별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 4급 이상 : 성과관리시행계획을 기준으로 연초에 체결한 '성과 계약과제'에 대한 목표달성을(업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부서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 5급 이하 : 근무성적평가, 부서성과평가, 성과급심사위원회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성과연봉(5급) 및 성과상여금(6급 이하) 지급등급 결정

※ 부서성과평가에 자체평가결과와 국정과제 등 특정과제 수행실적을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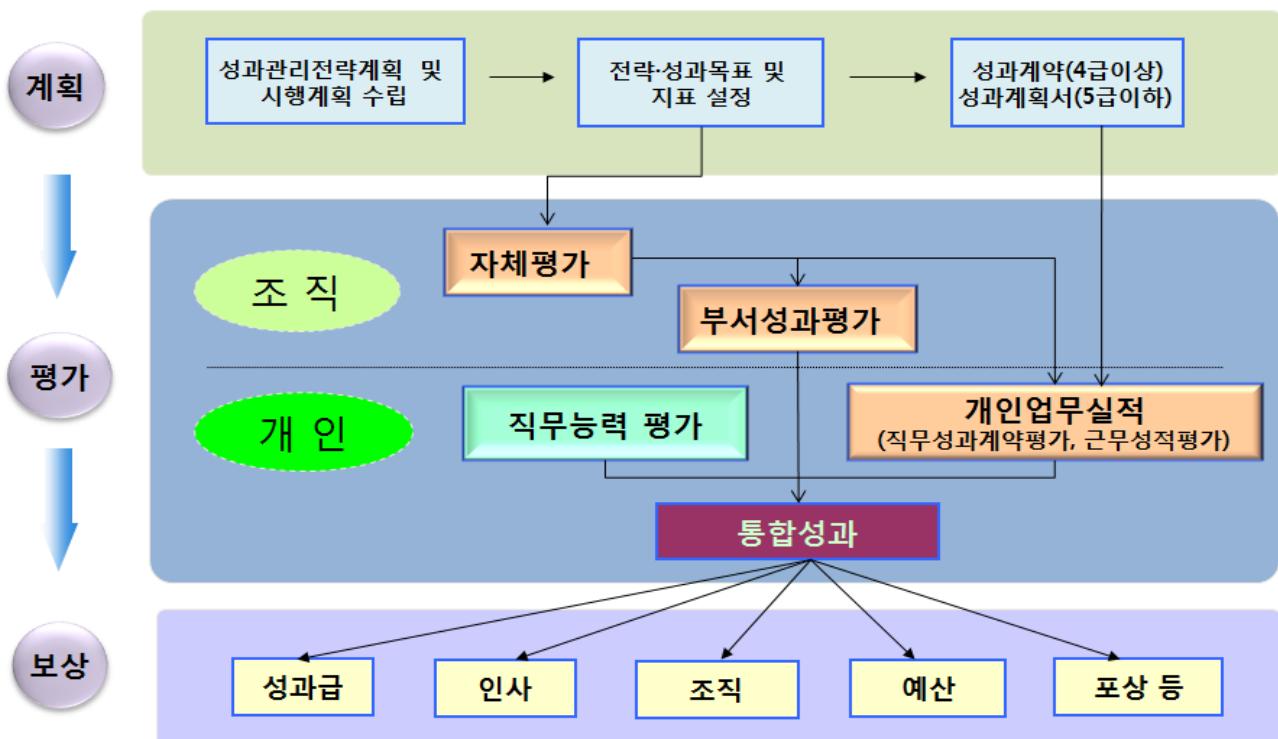
#### <성과급 지급 등급결정 평가항목>

구 분	대 상	등급결정 기준
성과연봉	4급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성과계약(50%), <b>부서성과평가(40%)</b>* , 직무수행능력평가(10%)            * <b>자체평가(80%)</b>+행정관리평가(20%)            →자체평가의 개인평가 반영비율은 32% 수준임</li> </ul>
성과연봉	5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무실적평가(60%), <b>부서성과평가(40%)</b>* , 성과급심사위원회평가(10%)            * <b>자체평가(80%)</b>+행정관리평가(20%)            →자체평가의 개인평가 반영비율은 32% 수준임</li> </ul>
성과상여금	6급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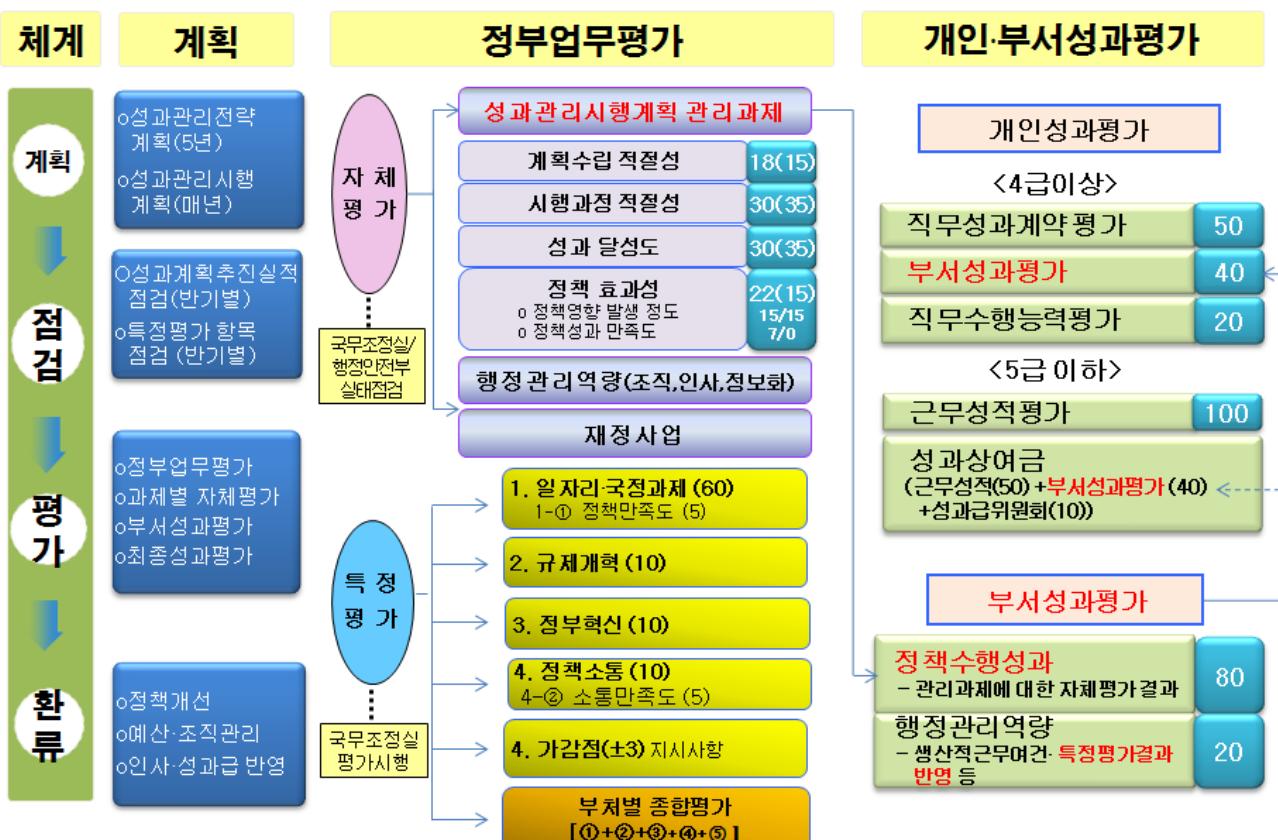
#### □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과제 포상(금) 지급

- 2018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우수과제로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적극적인 과제수행 동기 부여
- 포상대상 : 자체평가 결과 1등급 ~ 3등급 과제
- 포상규모 : 1등급 80만원, 2등급 50만원, 3등급 30만원

## < 평가결과 환류체계도 >



## < 방통위 세부 평가체계 >



### 3. 변화관리 계획

#### 3-1. 업무프로세스 개선

##### □ 집중근무시간 운영

- 위원회 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하루 중 업무효율이 가장 높은 시간을 핵심근무시간(Core Time)으로 정하여, 그 시간에는 업무에 몰입
- 집중근무시간에는 전화, 인터넷, 티타임 등 사적인 용무와 휴식을 금지하고, 회의, 대면결재 대기 등 업무 집중을 저해시키는 행위 자제
- 초과근무를 유발하는 퇴근 직전 업무지시, 업무회의 개최 등을 지양하고, 퇴근 후 업무연락(전화, 문자, 단체카톡 등)도 자제
- 주어진 업무시간 안에 일을 끝낼 수 있도록 업무지시는 가능한 오전에 실시하고, 바로톡을 통해 업무시간 내에서 단체대화 활용

##### □ 근무시간 자율설계

- 개인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근무시간을 자율적·효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여 기관·부서 차원의 생산성 제고
- 자기개발, 자녀 돌봄 등으로 근무시간 선택제 등을 희망하는 직원이 신청할 수 있도록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신청방법 안내
- 필요에 따라 점심시간(12~13시) 앞 또는 뒤 1시간을 자율적으로 붙여 사용하는 점심시간 연계 유연근무제 적극 활용
- 부서장은 부서원의 유연근무를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허가하고, 유연근무자의 승진 및 근무평가 등에 불이익 금지

### 3-2. 조직문화 개선

#### □ '가족 사랑의 날' 확대

- '가족 사랑의 날'을 주2회로 확대하여 자기계발 및 여가생활 충족을 통해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
  - 매주 수요일·금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지정하여 정시퇴근 유도
  - '가족 사랑의 날'은 원칙적으로 시간외수당을 미지급하고 국회, 예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
  - 정시퇴근 유도를 위해 구내방송으로 '가족 사랑의 날'을 공지하고 부서별로 순회하여 정시퇴근 독려

#### □ 기관·부서 단위의 집단 유연근무제 활용

- 업무특성 등을 고려한 기관전체·부서별 집단 유연근무제를 활성화
  -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선정하고 기관전체 집단 유연근무제를 시행하여 2시간 조기퇴근
  - 문화행사, 워크숍 등 국 단위 행사시 집단유연근무제 사용 권장
  - 유연근무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비상연락체계를 마련

#### □ 연가사용계획 수립

- 개인별 부여된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공직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
  - '18년 권장연가 일수(14일)를 반영하여 개인별 연간 연가사용 계획을 수립하고 부서장은 특정시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 계획을 조정
  - 간부직 공무원의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해 과·팀장 이상 부서장은 매월 연가사용계획 수립·실시

## □ 권장연가제 및 연가저축제 운영

-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해 당해 최소 사용해야 할 연가일수를 공지하고 권장연가일수를 제외한 잔여 연가 중 일부를 저축
  - 권장연가일수 대비 미사용 연가일수는 연가보상비 지급일수에 제외
  - 연가사용 활성화 차원에서 연가보상 작업시 1~2일을 저축연가로 전환

### 3-3. 직원교육 강화

## □ 다양한 시책교육을 통한 주요 국정과제 공유·확산

- 국정철학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 직원 대상으로 외부강사 초빙 교육 및 자체 직장교육 실시
- 연간 교육훈련 시간의 30% 이상을 공직가치, 국정철학과 연계한 부처지정학습 이수를 의무화
- 공직가치 내재화를 위해 사이버 교육을 통한 반부패, 청렴교육 이수를 독려

## □ 공통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외국어 청취과정 및 전화외국어 과정을 운영
-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 직원의 연중 다양한 청렴 활동에 대해 청렴마일리지를 부여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방안을 마련

## □ 성과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관리 강화

- 상시학습제도 정착을 통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무원의 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제고
- 직원이 조직목표와 연계한 자기개발계획서 수립 시 개인의 부족역량을 제시하고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을 추천하는 코칭 실시

## 3-4. 효율적 예산집행 등을 통한 방송통신정책 추진 지원

- 예산집행심의회를 구성·개최하여 집행과정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예산 조기집행 달성을 위한 점검 추진
- 보조사업자 선정에 대한 공모절차 도입을 통해 사업자간 경쟁 체제를 도입하여 예산집행 및 정책의 품질 제고
- 방통위 예산 및 기금 사업관리지침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의 사업수행계획서 양식, 부속서류 등을 일원화하여 불필요한 서류요청 관행 개선

## 3-5. 성과지표 관리방법 개선

### □ 성과지표 관리방법

- '16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성과관리과제 성과지표 대표성 연구 결과로 도출된 과제별 예비성과지표 발굴 및 관리(지표 POOL)
  - 방통위 성과목표 과제별 성과지표 관리를 통해 '18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 과제의 성과지표 선정에 참고자료로 활용
- ※ '18년도에 성과지표 개발 등을 위한 연구과제 추진 예정

- 성과관리 수준제고를 위해 각 국 총괄담당 등으로 성과관리 T/F를 구성·운영
  - 성과관리과제 및 성과지표 설정을 위한 회의, 워크숍 등 개최 추진
- 성과관리 제도개선 및 위원회 내 성과주의 확산방안 마련을 위한 타 부처 우수사례 벤치마킹 실시
- 사후규제 업무 위주인 방통위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정책소통을 강화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
  - 정책토론, 공청회,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업무 유형별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 진행
- 자체평가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성과지표 선정, 관리에 대한 자문을 충분히 반영하여 성과지표의 합리성 확보

## □ 성과지표의 정책대표성 제고

- 전략목표 수준의 기관대표 성과지표를 발굴하여 총체적인 업무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
- 성과지표는 성과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 지표' 위주로 설정하고, 가급적 구체적인 양적수치로 측정 가능한 정량지표(계량지표)를 사용
  - 성과지표의 구체성·명확성이 떨어지는 복합지표는 과제를 대표할 수 있는 단일지표로 개발 노력

## □ 성과지표의 변별력 강화

- 성과지표 목표수준을 보다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평가 시 과제 간 변별력을 확보하고 정책개선 효과증진 노력
  - 목표치의 적극성을 고려한 성과지표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도전적인 성과지표 설정을 유도

#### 4. 현장의견의 정책반영 계획

##### □ 정책대상별 유형별 의견수렴 절차 강화

- 현장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자체평가 평가지표 중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점수 상향조정(10점→15점)
  - 정책추진단계별(수립-집행-환류)로 이해관계자, 정책고객 및 국민 등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설명회, 공청회 등으로 정책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얻고자 하는 노력도를 평가에 반영
  - 정부 운영에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혁신활동 노력도를 평가에 반영
    - \*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시민참여를 통한 국민주권 국가 실현을 위한 정부 운영방식 개선, 참여기회 확보, 참여수준 심화 등
    - \*\*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 '18년도 관리대상 과제 및 의견수렴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대상과제 : '18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관리과제 oo개</li><li>○ 의견수렴 방법 : 과제별 특성에 따라 국민, 정책고객집단,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정책토론·이슈토론·간담회·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렴</li><li>○ 전담부서 : 과제담당부서</li><li>○ 관리체계 : 과제별 의견수렴 결과 및 정책반영도를 자체평가 시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관리</li></ul>



##### □ 방송통신정책과정에 국민참여제도 도입

-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숙의제 도입
  - 영향력이 큰 주요방송통신정책을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토론 또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논의절차 마련

- 주요정책의 수립·집행·환류 전 단계에 걸쳐 국민과 전문가가 참여하여 정책을 재설계하는 국민정책참여단 운영
-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담부서(혁신기획 담당관)를 지정하여 과제 발굴 및 관리

## □ 정책참여 활성화

- 성과관리시행계획 관리과제별 현장의견수렴 외 ‘방통위 홈페이지’를 활용(온라인, 모바일)하여 방통위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의견 청취
  - 주요 국정과제 및 정책, 국민 관심이슈 등에 대해 의견제시, 찬반토론, 설문조사, 공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
  - 안전관리 담당자(행정법무담당관 제안담당)를 지정하여 등록안전, 안전 검토, 진행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 각 부서별로 국민제안 안건 발굴 및 참여 실적을 ‘행정관리 역량평가’에 반영하여 활성화 유도

<국민제안 의견수렴 방법>

구 분	주요내용	진행방식
전자공청회	입법안, 입법예고 등 정형화된 사안에 대한 의견수렴	자유토론
대화 (국민생각함)	「국민생각함」을 활용한 정부 주요정책, 국민생활 밀접 과제 등에 대한 자유로운 형식의 의견수렴	자유토론
투표·설문	「국민생각함」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온라인 찬반 투표 및 설문조사 실시	투표 및 설문조사
아이디어 공모	방송통신 정책 및 규제 개선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정책 반영 및 우수제안 포상	공모

## □ ‘정책고객대표자 회의’ 운영

- 방송통신 주요정책 관련 정책고객 대표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통과 협력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 산·학·연 직능별 대표성과 소비자·노인·장애인 등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학계, 법조계, 연구계, 소비자, 시청자, 여성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참여 (22명)
- 연 2회(상·하반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추가로 개최하며, 방송통신 현안관련 국별 주요정책 설명 및 의견수렴 방식으로 진행

## [불 임]

1. 성과지표 현황
2.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 현황



## 불임1

## 성과지표 현황

### 1. 총괄현황

(단위: 개)

전략 목표	구분	성과지표						정량지표	
		소계	지표성격						
			투입	과정	산출	결과			
4	성과목표	8	8	0 (0%)	0 (0%)	6 (75%)	2 (25%)	8 (100%)	
	관리과제	26	36	0 (0%)	1 (2.8%)	19 (52.8%)	16 (44.4%)	36 (100%)	

### 2.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8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b>I .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신장하고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한다</b>						
1.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한다	①방송의 공공성 제고율(%)	$[(재허가 \cdot 재승인 조건 이행률 목표달성도) \times 0.2] +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만족도 목표달성도) \times 0.2] + [(지역 \cdot 중소방송 제작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목표달성도) \times 0.2] + [(방송재난 대비 중요 방송시설 안전 점검율 목표달성도) \times 0.2] + [(재허가 \cdot 재승인 제도 개선 추진율) \times 0.2]$	100%	정량	산출	
2. 신규방송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한다.	①신규방송서비스 활성화율	$[(지상파 UHD 방송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 이행도 \times 0.5) + (EBS 2TV 프로그램 만족도 및 채널 인지도 목표달성을 \times 0.5)] \times 100$	100%	정량	산출	
<b>II . 방송통신 이용자의 주권을 강화한다.</b>						
1.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및 권익증진에 기여한다.	①통신시장 불공정 행위 개선 건수	실태점검 및 시정조치를 통한 개선실적	8건	정량	결과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8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2.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조성한다.	①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위반 사항 시정조치 건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의 시정조치 건수	74건	정량	산출	
<b>III. 방송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 복지를 제고한다.</b>						
1. 방송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시청자 복지를 제고한다.	① 시청각장애인 TV 저소득층 누적 보급률(%)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누적 보급대수 /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수) × 100	68%	정량	산출	
2.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① 방송산업 기반 구축율	(콘텐츠 제작 활성화 기반 조성을 × 0.5) + (중소기업 방송 광고 활용 달성을 × 0.2) + (통합시청점유율조사 신뢰성 개선도 × 0.3)	85.6%	정량	산출	
<b>IV.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정책성과를 극대화한다.</b>						
1. 신뢰받는 방송통신 행정을 구현한다.	① 정부업무평가결과	정부업무평가 결과 '보통' 이상 달성	보통	정량	결과	
2.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기관 신뢰도를 제고한다.	① 대내외 협력 강화를 통한 기관 신뢰도 제고율	(대국민·대언론 정책소통 추진율×0.5)+(방송통신 국제협력 협상도×0.5)	85%	정량	산출	

### 3.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8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b>I.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신장하고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한다.</b>												
<b>1.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한다.</b>												
	①방송의 독립성과 제작·편성 자율성 확보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률(%)	$[(\text{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지상파 재허가 조건 이행 건수} / \text{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종편PP 재승인 조건 수}) \times 0.5] + [(\text{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종편PP 재승인 조건 수}) \times 0.5]$	75%	정량	산출						
	②전 국민 대상 미디어 교육 강화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수(만명)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수 합계	54만명	정량	산출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만족도(점)	5점 리커트 척도 (100점 만점 환산)	91.8점	정량	결과						
	③지역방송 및 중소방송 활성화	지역·중소방송 제작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리커트 척도를 이용한 시청자만족도 조사(100점 만점 환산)	86.3점	정량	결과						
		지역방송 교육 이수율	교육 이수인원/교육 등록인원×100 (80% 이상 교육시간 참석 시 이수 인정)	90%	정량	산출						
		지역방송 교육과정 만족도	(정규 맞춤교육 만족도×42%)+(방문 특강 만족도×42%)+(멘토링 만족도 ×16%) (교육과정별 사업예산 비율 고려)	90점	정량	결과						
	④신속·정확한 재난방송 관리체계 강화	방송재난 대비 중요 방송 시설 안전 점검율(%)	[('18년도 안전점검 시설수 / 안전점검 대상 총 시설수(104개소)] × 100	80%	정량	산출						
	⑤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 추진율(%)	(재허가·재승인 기본계획 초안 마련×0.3) + (재허가·재승인 기본계획 의결×0.4) + (재허가·재승인 기본계획 이해관계자 만족도(65점) 달성을 × 0.3)	100%	정량	과정						
<b>2. 신규 방송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한다.</b>												
	①지상파 UHD 방송 확산	지상파 UHD 방송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 이행도(%)	(18년 UHD 프로그램 편성 실적 / 18년 UHD 프로그램 편성 목표) × 100	90%	정량	산출						
	②지상파 다채널방송 기반 마련	EBS 2TV 프로그램 만족도 및 채널 인지도(%)	(EBS 2TV 시범서비스 프로그램 만족도×0.5) + (EBS 2TV 채널 인지도×0.5)	76점	정량	결과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8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b>II. 방송통신 이용자와의 주권을 강화한다.</b>												
<b>1.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및 권익증진에 기여한다.</b>												
①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환경 조성	이용자정책 제도 개선건수	제도개선 전의 외부공표 결과물로 실적 산정	3건	정량	산출							
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유선시장 현장 모니터링 준수율	(유선시장 경품 가이드 현장 모니터링 준수율+허위과장 광고 가이드 현장 모니터링 준수율)/2	82%	정량	산출							
③이동통신 유통질서 확립	단말기 유통시장 개선율	[제도개선 실적/제도개선 계획 (목표: 2건) × 0.5] + [단말기 유통법 세부항목별 평균 준수율 (%) × 0.5]	98%	정량	산출							
④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취약계층 통신 서비스 피해예방 교육 역량 향상율(%)	[(계층별 교육 후 역량 향상 접수 - 교육 전 역량 접수)/교육전 역량접수] × 100	15%	정량	결과							
<b>2.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조성한다.</b>												
①온라인상 안전한 개인 (위치)정보보호 및 활용 지원	개인정보 관련 제도 개선 건수	외부로 공표된 개인정보 관련 제도 개선 결과물 건수를 실적으로 산정	4건	정량	산출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만족도	(우수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 지원 만족도 × 0.5) +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수요자(경찰청 국민안전처) 만족도 × 0.5)	82.5점	정량	결과							
②온라인상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강화	개인정보(8종) 노출· 불법유통 탐지 삭제율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게시물 삭제건수 / 탐지건수)×100	90%	정량	산출							
③자유롭고 깨끗한 인터넷 이용환경 구축	인터넷윤리교육 만족도 (점)	교육 종료 후 만족도 조사 (100점 만점)	87.2점	정량	결과							
	휴대전화, 이메일 스팸수신량 (하향지표) (통)	휴대전화 · 이메일 이용자 각각 1,500명 대상 1인 월 평균 수신량 측정	20통	정량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8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b>III. 방송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 복지를 제고한다.</b>												
<b>1. 방송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시청자 복지를 제고한다.</b>												
	①방송프로그램의 품격 향상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향상도	[(방송심의활동 효과 만족도 3개 항목 각 7점척도 평균 점수)/7] × 100	63.4%	정량	결과						
	②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확대	장애인방송 이용자 만족도(점)	(자막방송만족도 × 0.87) + (수화방송만족도 × 0.04) + (화면해설방송만족도×0.09)	79.3점	정량	결과						
	③방송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송 시장(광고) 불공정행위 개선 건수	실태점검 이후 제도개선 및 업무 절차 개선 등 건수	4건	정량	산출						
		방송광고 법규 준수율	{[전체 채널수 - (1회 위반 방송채널수 × 1.0) + (2회 위반 방송채널수 × 1.5) + (3회 이상 9회 이하 위반 방송채널수×20)+(10회 이상 위반 방송채널수×3.0)] / 전체 채널수} × 100	81.8%	정량	산출						
<b>2.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b>												
	①방송콘텐츠 경쟁력 기반 확충	콘텐츠 제작 활성화 기반 조성을	(표준계약서 도입률 × 0.7) + (만족도 × 0.3)	77%	정량	결과						
	②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용도	[기업인지도 상승(5점 만점)x0.5]+ [매출증가 기여도(5점 만점)x0.5]	3.84점	정량	결과						
	③통합시청점유율 조사 기반 구축	통합 시청점유율 조사 신뢰성 개선도	[ ( 폐널 실적치 / 폐널 목표치 ) ×100]×0.6 + [(개선사항이행건수/ 개선사항도출건수) ×100]×0.4	87%	정량	결과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8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 IV.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정책성과를 극대화한다.

##### 1. 신뢰받는 방송통신 행정을 구현한다.

① 원활한 정책 수행을 위한 행정효율성 증대	국정과제 이행상황 점검율	국정과제 대상 과제 추진실적 점검 회의, 국정과제 시스템 운영 및 개선 실적을 정성평가	100%	정량	산출	
	혁신과제 이행율	(이행과제 건수/과제 건수)×100	90%	정량	산출	
② 사이버안전 및 비상대비 관리체계 강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 수준율	AL(%)=(T/5)×100 ※ AL:수준율, T:전체 기관의 수준평가 점수 평균(5점 만점)	77.8%	정량	결과	
	비상대비 및 보안 점검 달성을률	{[(자원조사실시업체 / 자원조사대상업체)×0.5]+[(보안점검 기관수 / 보안점검 목표 기관수)×0.5]}×100	100%	정량	산출	
③ 규제개혁 적극 추진	규제개혁과제 이행률	$\sum(\text{과제별 이행단위과제 건수}/\text{과제별 단위과제 건수})/\text{규제개혁 과제 건수} \times 100$	92%	정량	산출	
④ 일 잘하는 공직환경 조성	연가사용 활성화	위원회 직원의 연가사용 일수의 평균 (연가사용 일수의 합/위원회 근무직원 수)	14일	정량	산출	
	초과근무 감축률	[("17년도 1인당 월 초과근무 실적-'18년도 1인당 월 초과근무 실적)/("17년도 1인당 월 초과근무 실적)]×100	10%	정량	산출	
	국정과제 교육 활성화	전년 대비 1인당 평균 국정과제 교육 이수시간 증가율(%)	15시간 (3.5% 증가)	정량	산출	

##### 2.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기관 신뢰도를 제고한다.

① 대국민·대언론 정책소통 강화	대국민·대언론 정책소통 추진율	[(대국민·대언론 정책소통 만족도 ×0.5)+(방송통신 온라인 소통실적 건수/목표)×0.5]×100	85%	정량	결과	
	방송통신 국제협력 향상도	[(방송통신 국제협력 추진실적/계획) ×0.5 +(방송통신 국제협력 만족도) ×0.5]×100	85%	정량	결과	

**불임2****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b>I.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신장하고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한다.</b>		
<b>1.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한다.</b>		
	① 방송의 독립성과 제작·편성 자율성 확보	언론의 독립과 공정성 회복 (국정 4-1) 방송 제작·편성 자율성 확보 및 해직자 명예 회복(국정 4-2)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강화 (업무 1-1)
	② 전 국민 대상 미디어교육 강화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복지 구현 (국정 70-1) 이용자의 미디어 역량 강화 및 참여 확대 (업무 2-4)
	③ 지역방송 및 중소방송 활성화	지역방송활성화로 균형발전의 디딤돌 역할 실현 (국정 70-2) 미디어의 다양성 및 지역성 증진 (업무 1-2)
	④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관리체계 강화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복지 구현 (국정 70-1)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강화 (업무 1-1)
	⑤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	방송 제작·편성 자율성 확보 및 해직자 명예 회복(국정 4-2)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강화 (업무 1-1)
<b>2. 신규방송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한다.</b>		
	① 지상파 UHD 방송 도입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복지 구현 (국정 70-1) 신규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제도 정비 (업무 4-9)
	② 지상파 다채널방송 기반 마련	신규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제도 정비 (업무 4-9)
<b>II. 방송통신 이용자의 주권을 강화한다.</b>		
<b>1.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한다.</b>		
	①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환경조성	ICT 성장에 따른 이용자 보호대책 강화 (국정 33-9) 지능정보사회의 이용자 보호강화 (업무 2-5)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②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통신시장 투명성 확대를 통한 이용자 후생 증진 (국정 31-6) 불공정한 갑을관계 청산 및 상생환경 조성 (업무 3-6)
	③ 이동통신 유통질서 확립	통신시장 투명성 확대를 통한 이용자 후생 증진 (국정 31-6) 지능정보사회의 이용자 보호강화 (업무 2-5)
	④ 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ICT 성장에 따른 이용자 보호대책 강화 (국정 33-9) 지능정보사회의 이용자 보호강화 (업무 2-5)

## 2.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조성한다.

	① 온라인상 안전한 개인(위치)정보 보호 및 활용지원	ICT 성장에 따른 이용자 보호대책 강화 (국정 33-9)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의 조화 (업무 4-10)
	② 온라인상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강화	ICT 성장에 따른 이용자 보호대책 강화 (국정 33-9)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의 조화 (업무 4-10)
	③ 자유롭고 깨끗한 인터넷 이용환경 구축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 및 제도 개선 (국정 4-3)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국정 70-5)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신장 및 역기능 대응 강화 (업무 1-3)

## III. 방송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 복지를 제고한다.

### 1. 방송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시청자 복지를 제고한다.

	①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향상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강화 (업무 1-1)
	②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확대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 (국정 70-1) 이용자의 미디어 역량 강화 및 참여 확대 (업무 2-4)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③ 방송시장 공정경쟁 환경조성	미디어 상생환경 조성 및 방송광고시장 합리화 (국정 70-4) 불공정한 갑을관계 청산 및 상생환경 조성 (업무 3-6)

## 2.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① 방송콘텐츠 경쟁력 기반 확충	미디어 상생환경 조성 및 방송광고시장 합리화 (국정 70-4) 방송한류 확산을 위한 고품질 콘텐츠 제작 기반 마련 (업무 3-7)
	②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④ 통합시청점유율 조사 기반 구축	미디어의 다양성 및 지역성 증진 (업무 1-2)

## IV.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정책성과를 극대화한다.

	1. 신뢰받는 방송통신 행정을 구현한다.	
	① 원활한 정책 수행을 위한 행정효율성 증대	
	② 사이버안전 및 비상대비 관리체계 강화	
	③ 규제개혁 적극 추진	
	④ 일 잘하는 공직환경 조성	
	2.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기관 신뢰도를 제고한다	
	① 대국민·대언론 정책소통 강화	
	②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